

건축사

大韓建築士協會誌

圖

197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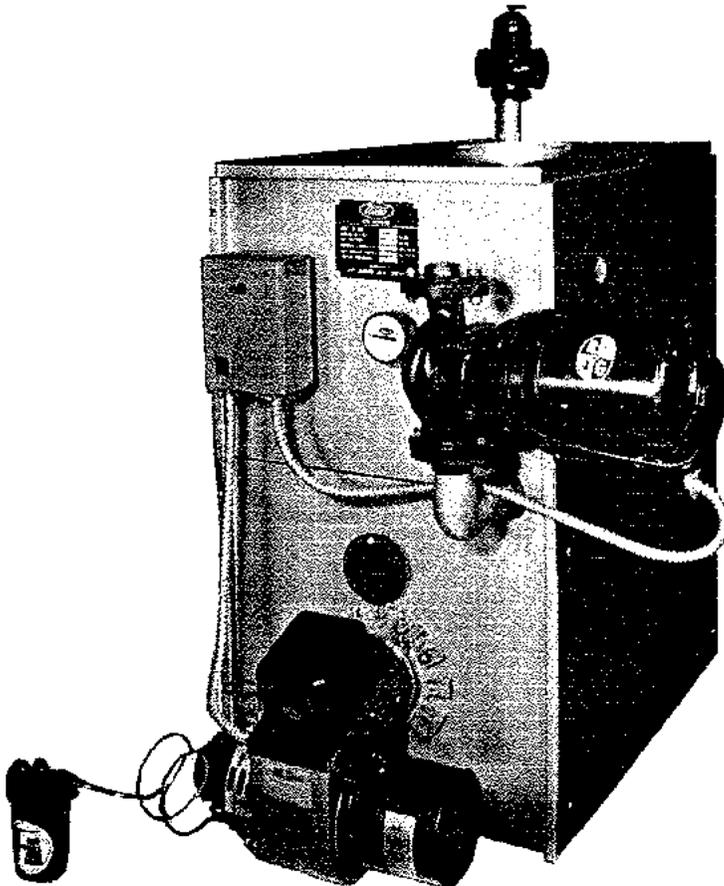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 난방 / 급탕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
품



제조공급원



三成設備工業社

서울特別市 城東區 華陽洞 167~24號

☎ 55-1194·5519



부 로 베 스투 트

(Asbestos Spray)

韓國의 元祖

韓一石綿工業株式會社만이 Asbestos Spray를 朝日石綿工業株式會社로부터 伝修받았고 独特한 施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特性

目的	吸音用	断熱用	耐火用
比重	0.2	0.25	0.35
熱傳導率 (kcal/m°C)	0.028+0.0001θ	0.03+0.0001θ	0.04+0.0001θ
附着力 (gr/cm ²)	50이상	70이상	120이상



吸音性：騒音公害地域(工場：보이락室, 기계실), 體育館, 보링場, 강당, 집회장, 教會 연주장, 호텔, 도서실, 放送局, 시청각교실, 극장, 학원, 교환실, 병원, 부부 침실, 기타 고급주택.

結露防止：목욕탕, 사우나, 터키탕, 식품제조가열실, 지하실, 옥상스라브.

耐火性：鉄骨, 鉄筋, 鉄板, 콘크리트, 木材, 耐火被覆.

断熱性：工場기관室, 선박, 주택, 벨딩 보이락室, 냉난방 보온.

耐震性：各種工場, 其他 震動이 심한 処所의 美裝

韓一石綿工業株式會社

서울特別市 中区 乙支路6街18-131
(乙支會館 601号)

TEL. 54-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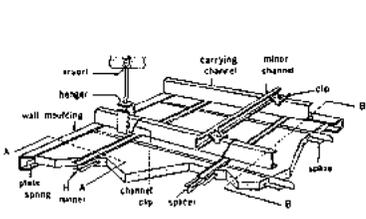


待望裡에 드디어 建築界에 登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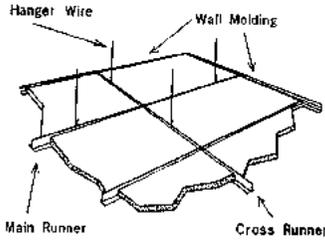
H-BAR式
T-BAR式
M-BAR式

輕量鉄骨天井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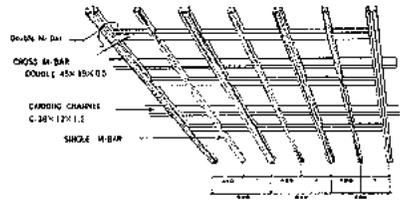
資材를 選擇할 權한은 여러분들께 주어졌읍니다.
建築物을 火災로부터 解放시켜 주십시오!



H-BAR式



T-BAR式



M-BAR式

用途 빌딩·學校·病院·劇場
體育館·호텔·住宅·庁舎
講堂·其他

特徵

- ① 不燃材料이므로 火災의 위험이 없다.
- ② 溫度·濕度의 變化에도 變形이 없다.
- ③ 重量은 木材틀에 比하여 約 2/3 에 불과하다.
- ④ 組立式이므로 工期가 短縮된다.
- ⑤ 完全亞鉛鍍金이므로 腐蝕의 우려가 없다.
- ⑥ 堅固精密하며 壽命이 永久的이다.
- ⑦ 天井内外에 부수되는 모든 關聯工事의 施工 에 便利하다.

主要施工處

- 3·1로 빌딩
- 정 부 종합 청사
- 대한 전자 부평 공장
- 외환은행 부산 지점
- 오산공군기지 막사
- 국립중앙 박물관
- 중앙 큐 호 텔
- 한 양 식 품 공장
- 조 선 일 보 사
- 남 산 맨션
- 센 타 빌 딩
- 삼 기 물 산 공 사
- 대 구 동 산 병 원
- 세 브 란 스 빌 딩
- 신탁은행 광화문지점
- 아 카 데 미 회 관
- O. B. 맥주 공장
- 무 역 회 관
- 남 산 외인아파트
- 강원도청 ○○ 시설소
- 팔달수려발소관
- 경북대학체육관
- 원 호 회 관
- 마 산 문 화 방 송 관
- 한 국 조 폐 공 사
- 대 연 각 호 텔
- 전 매 청 중 부 지



(본사가 시공한 "남산맨션아파트")

日本昭和造機KK와 技術提携 韓寶建設株式會社

本社 및 工場: 서울特別市 麻浦区 望遠洞五七番地
中央私書函5182号

☎ · 32-8288 · 34-1442

建築士

'73

1

通卷第51號

U. D. C. 69/72 (054-2) : 0612 (519)
1973년 1월 31일 발행

編纂委員會

委員	長	安 瑛 培
委	員	金 萬 盛
		安 仁 模
		元 正 洙
		劉 熙 俊
		尹 太 鉉
		李 丞 雨
		李 昌 敏
		李 興 秀
		韓 鼎 燮

新年辭	會長 姜 大 雄	(2)
防火診斷	洪 鵬 義	(3)
現代獨逸建築思潮	宋 啟 求	(7)
歐美紀行 ③	崔 昌 奎	(30)
農村住宅에서의 作業空間	池 淳	(38)
電氣溫突의 設計와 工事 ②	朴 錫 偉	(42)

(會員隨想)

懸賞有感	俞 景 哲	(15)
------	-------	------

第9回 建築士資格試驗問題(2級)	建設部 建築課 提供	(46)
-------------------	------------	------

改正 建築法(全文)		(72)
------------	--	------

(會員作品)

年金·아스팍會館	李 丞 雨	(16)
淑明女子大學校(西館)	金 仁 錫	(20)
濟州教育大學	金 漢 涉	(24)
東洋高速버스터미널	金 奉 勲	(26)
住宅	金 萬 盛	(28)

(海外作品)

Benjamin Thompson과 그의 作品		(55)
--------------------------	--	------

協會記事		(52)
------	--	------

建築界動靜		(70)
-------	--	------

新年辭



親愛하는 全國建築士 여러분!

癸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家庭과 業體에 繁榮과, 平和와 幸福이 充溢하시기를 眞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癸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번 우리들의 職責과 使命이 얼마나 所重한 것임을 自省 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어느때 보다도 國家와 民族에 대한 義務와 責任과 誠實을 要求하는 때는 없었을 줄 압니다.

특히 올해에는 建築文化의 發展에 보다 적 극적인 意味를 느껴 실천하는 姿勢가 절실히 요구하는 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1973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國民에게 生活의 安息處를 마련해주며 福祉社會建設의 優位的인 位置에 서서 존경을 받으며 우리러 볼 수 있는 高邁한 人格向上으로 5千年歷史의 흐름 속에서 가장 슬기로운 1972년 10월의 維新을 받들며, 새로운 價値觀의 確立으로 累積되어 온 우리들의 機能을 總集中하여 維新理念의 새질서 속에서 우리는 더욱 團結하여 協同과 能率과 生産을 위해 우리들의 創意力을 더욱 과시하는 癸丑年 새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建築士는 조국의 번영을 위해 더 많은 情熱의 땅과 優秀한 作品의 創作에 全力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한나라의 文明尺度의 評價는 建築文化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使命과 義務를 總力으로 維新的인 대열에 참여 함으로서 우리들의 보람과 자랑과 희망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위하여 우리 建築士의 位置는 더욱 중요하며 슬기로우려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 建築士는 農漁村近代化와 「새마을 운동」의 指導者가 되어 後進性脫皮에 先驅的인 역할을 담당해야겠으며 都市와 農村의 격차 없는 建築文化 發展에 우리들의 技術과, 創意力을 기우려 祖國의 維新課業에 길이 빛낼 수 있는 自覺과 矜持로서 새해의 設計를 해 주실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建築士 會員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뒤 질수 없는 實力과 能力과, 技術과, 創造力으로 第四共和國 탄생의 선구적인 일꾼이 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세계를 향해 자랑할 수 있는 偉大한 建築의 遺産을 남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大韓民國의 建築士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의 퇴폐 풍조의 건축을 지양하고 維新課業의 참된 수행만이 祖國의 繁榮이요, 民族의 자랑일 것이며, 後孫들에게 榮光을 길이 남길 수 있도록 全力하십시오.

수출목표 100억불과 국민소득 천불의 대과업을 수행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노력하는 기쁨의 새해가 되십시오.

1973. 1. 1.

會長 姜 大 雄



防火診斷

洪 鵬 羲

漢陽工大 教授 工博

1) 防火診斷의 意義

人体에서 不意의 大患을 防止하고 健康을 維持하기 爲하여는 事전에 專門醫師에게 健康 診斷을 받아 予防措置를 取하는 것이 賢明한 方法이라고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自己所有의 建築物의 安全을 爲하여는 亦是 專門技術者의 防火診斷도 切實히 必要함은 再論의 余地가 없는데 意外에도 大部分의 市民이 이에 無關心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나.

最近 數年內에 都市의 大火災가 頻發하여 每年 數百名의 人命犧牲과 數十億의 財産被害를 내고 있는 事實들을 他山之石인 양 방관만 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와같은 實情을 勘案하여 防火診斷을 專門家의 손을 빌지 않고라도 現行關係法規를 根據로 하고 建築學會發行的 防火建築 案内書등을 參考로 自家診斷도 可能할 것으로 보아 몇가지의 指針을 提示하는 바이다. 建築主로서의 一般市民이나 設計, 施工 및 監理者로서의 建築技術者 또는 建築行政 當局者들까지도 自發的인 防火意識을 높이어 重大한 未備點들을 發見함과 同時에 遲滯없이 그 改修補完作業을 斷行하여 目前의 不幸을 未然에 防止함에 도움이 되기를 企待하는 바이다.

現在 서울市內의 高層特殊建築物 中에는 大多數가 防火施設의 虛點이 많음을 自他가 公知의 事實인데 그中에서는 이미 消防當局에 依해 防火設備 改修命令을 받고도 微溫的인 걸치케 손질 程度로 放置되거나 더우기 當局의 指示가 없는 建築物中에도 大半이 未備建築物인데도 建築主自身이 自進 防火診斷을 하거나 未備個所의 改修들은 念頭에도 없이 一觸即發의 火災危險을 內包한 채로 放置하였다가 大禍를 自招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兇事가 적지 않다.

(2) 火災의 原因

建物에서 火災가 發生하는 過程은

첫째로 火源이 所定位置에서 移動되었을 때에 發生할 수 있다. 例를 들면 火源(촛불, 暖爐, 담배불등)이 그 位置에서 轉倒, 脫落, 爆發되어 周圍에 있는 可燃性物體에 延燒될 때 火災로 變한다.

둘째로는 비록 火源이 若干移動되었다 할지라도 그 火源이 接觸된 部位가 不燃性材나 耐火 構造部로 되어 있다면 無防할 것이나 그곳이 곧 可燃性部가 될 때는 延燒現象으로 變하여 火災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生活에서 火源自体를 忌避할 必要는 없고 그 火氣를 耐火性 器具나 設備로 잘 保管利用하여 不規則한 移動을 防止할 수 있도록 만할 것이며 万若 不意의 火源移動이 생겼다 할지라도 周圍를 不燃性部分으로 둘러싸아 延燒防止를 할 수 있게만 하면 安心할 수 있다.

以上の 火源移動으로 火災誘發의 몇가지 경우를 例示한다면 다음과 같다.

a) 放火의 경우

이것은 人爲的으로 火源을 移動시켜 可燃物을 直接延燒시키는 方法으로 가장 正確한 火災原因이 될 것이다. 이 方法을 予防하기 爲한 建築關係法은 없고 刑事法으로 規制한 것이 있을 뿐이다.

放火의 動機로서는 證據湮滅을 爲한 放火나 個人的인 원한이나 政治的인 目的 등으로 放火狂的인 所行이나 無知, 또는 麻藥이나 알콜中毒者, 變態性慾者 등의 病的인 放火後의 火災觀覽狂 또는 피해상상의인 快感을 즐기는 放火狂 등의 所行이다.

b) 失火의 경우

火源이 不知中에 移動되어 延燒의 原因이 되는 것인데 建築關係法規中에서 失火의 憂慮가 있는 하자의 發生을 防止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例컨대 煙道나 加熱爐 등에 龜裂로 火氣가 放出되던가 老朽된 電線에서 漏電이 되는 등은 施工時에 嚴密한 監理가 必要하며 또한 隨時로 點檢하여 補完을 要한다.

c) 自然發火의 경우

物質의 燃燒는 酸化熱이나 分解熱 등이 漸次增加되면 化學作用도 上昇되어 一定한 溫度에 到達되면 爆發的으로 發火가 된다. 各種物質의 發火點은 木材(450°C), 紙物(410°C), 木綿(400°C), 고무(430°C), 세룰로이드(180°C), H₂가스(580°C), CO

스(650°C) 등이다. 또 各物質의 一定質量이 酸化作用(燃燒)으로 發生하는 熱量은 다음과 같다. 木材(4500°C), 木綿(3980°C), 紙(4350°C) 磷化水素(100°C), 木炭(7190°C), 揮發油(11,450°C), 重油(16,300°C) 黃磷(50°C) 등인데 이와같은 物質에 이에 該當하는 熱量以上이 供給되면 自然發火된다.

이것은 各種物質이 徐徐히 酸化發熱된 熱量이 蓄積되거나 그 周圍의 空氣溫度가 上昇되어 그 物質을 發火시키는 경우 등이 있으며 特히 自然發火가 잘되는 物質은 植物性油, 動物性油, 鉍物性油類 등의 順으로 發火性이 높으며 2~6週間 堆積된 乾草의 發酵熱의 蓄積, 生石灰의 水和發熱, 過酸化水素의 金屬酸化物과의 接觸發熱, 金屬粉末,

小麥粉 등의 粉塵에 電氣스파크 接近으로 爆發性 發火등이 있다.

器등이 不燃化規定 등은 未備되어 있으므로 早速한 補完을 要한다.

(3) 診斷內容

a) 發火原因의 除去策

위에서 列挙한 여러가지 경우의 發火 原因을 建築法, 消防法 등의 關係法規內容을 檢討하여 違法 또는 하자部分이 없는 가를 찾아내어 補修할 것이다. 即 消防法 第2章의 火災의 予防規定, 同法 第3章의 火災危險物의 取扱 및 貯藏規定 등을 基本으로 하여 火災發生의 憂慮가 있는 施設物, 設備, 器具 등을 嚴格히 点檢補修할 것을 要望한다. 例를 들자면 스토브, 콘로, 보일러, 乾燥爐, 炊事爐, 變, 發電設備, 照明, 電熱器具, 吸煙, 葬火化學實驗器具, 캐스나 電氣熔接機 등 모든 火源取扱場所나 設備 등의 構造, 管理 및 取扱規定을 嚴守하여야 한다.

b) 火災早期發見 및 通報策

可燃性 內裝材의 室內에서는 火源에서 內壁에 着火하는 時間은 不過 5~10分程度이며 內壁着火後 15秒~2分程度면 天障에 延燒되나 屋內의 遠隔位置나 屋外에 있는 사람의 視覺, 聽覺, 嗅覺 등을 통해 火災感知하려면 相當한 時間이 經過된 後 이므로 火災는 이미 相當히 擴大되어 있어 避難, 消火作業에 큰 支障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 火災發見이나 通報方法을 機械裝置로 할 수 있게 技術的發達이 이루어져서 煙感知, 熱感知 등의 火災探知設備와 火災自動警報機가 利用되는데 隨時로 이와 같은 設備의 点檢補修가 要望된다.

c) 延燒防止策

火源發生과 그 移動接觸등이 發生했다 할지라도 建築物의 内外裝材의 不燃化 및 構造材料의 耐火度를 높인다면 延燒現象은 없을 것이며 또 不幸히도 建物이나 施設의 一部에 着火되어 火災가 發生하였다 해도 그 火災를 最少限度의 範圍에서 停止시키기 爲하여 防火區劃規定 등이 設定되어 있다. 即, 建築法에서는 防火地區 內의 建築制限 建築物의 外壁, 지붕, 窓戶 등의 不燃措置 및 防火區劃規定, 防火 및 耐火構造에 關한 規定 등이 있고 消防에서는 火災에 憂慮가 있는 部分의 耐火構造規定 등이 設定되어 있으나 高層建物の 內裝材, 什

d) 避難, 待避策

火災時에 火煙의 拡散速度는 水平方向이 0.8 ~ 1.0m/sec, 垂直方向이 2~3m/sec인데 人間の 步速은 1.5m/sec程度이므로 延燒나 爆發등으로 屋內가 火焰에 사이기 前에 人間の 避難이 可能하도록 複道, 階段, 出口 등이 確保되어야 한다.

万若 이와 같은 施設이 不備한 建物內에서 火災가 發生하면 火熱溫度上昇은 勿論, 濃煙에 待避路가 遮斷되어 窒息死傷이나 燒死傷 등의 人命被害와 圧死傷, 墜落死傷 등 間接被害 등을 誘發케 된다. 建築法에서는 避難路, 複道, 避難階段 및 屋外 出口 등의 規定이 있고 消防法에는 避難器具, 避難誘導燈 및 標識基準, 排煙設備, 臨時待避 및 脱出設備 등의 規定이 있다.

以上과 같은 避難을 爲한 諸設備의 常時 利用이 可能도록 管理者의 綿密한 点檢과 補修 및 管理業務가 必要하다. 實例로 火災時에 管理不良으로 避難階段의 利用이 不可能하거나 非常口가 遮斷되어 있는 등의 不詳事를 招來하기도 했다.

e) 消火策

建築의 高層化에 따라 消防署의 消火作業이 不可能한 곳이 생긴다. 現用消防裝備로서는 十一層 以上の 鎮火나 人命救出作業 등은 困難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屋內에 自動消火裝置가 要請된다. 火災時에는 早期火災警報裝置와 同時에 屋內管理者와 取容者 등에 依한 消火作業用으로 屋內消火栓設置는 勿論이고, 場所에 따라서는 스프링클러 나 Gas 消火裝置의 自動消火設備을 할 必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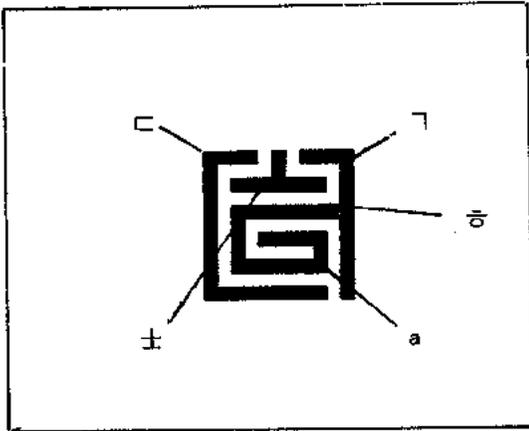
이 裝置들은 實溫上昇으로 消火物質이, 噴出口(Head)의 自動開放으로 噴出되어 消火作業을 하는 것인데 經費의 過多와 誤動作의 憂慮 등으로 設置場所를 嚴選하여 局限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屋內消火栓은 操作이 簡單하고 訓練이 잘 되어있어 야만 實效를 거들 수 있다. 建築法에 消火設備規定과 消防法에 消火活動, 消防施設 및 器具 등의 技術基準 등이 있다. 이와 같은 裝備 등이 隨時 檢査와 訓練등으로 有事時에 即刻有效하게 利用되도록 管理者나 建築主 및 行政當局의 適切한 措置가

要望된다.

f) 復旧策

不幸히도 建築物의 一部 또는 全部가 火災로 燒盡되었을 때는 수사当局, 保險会社, 建築主 등의 事後收拾作業에 多少의 支障이 있다. 하여도 技術的인 調査를 許容하여 火因調査나 防火資料를 얻을 수 있는 機會를 주기 바란다. 이와같은 資料는

우리나라의 防火對策에 貴重한 參考資料로 利用될 수 있을 것이며 建築消防設備改善의 基礎資料가 되며 技術向上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一部復旧는 勿論 全体復旧일 때라도 充分한 技術的인 鑑定을 바탕으로 充實한 對策을 樹立하여 不幸을 自招하는 火災나 構造的인 安全을 第一主義로 復旧工事に 臨할 것을 要望한다.



本協會 “마크” 에 對한 解說

本協會誌에 掲載되는 協會 「마크」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지, 궁금히 여기는 會員에게 그 뜻을 說明합니다.

表紙에 掲載된 協會 마크는 서울大學校 美術大學 閔哲泓 教授의 著作으로서 c, g, 士로서 大韓建築士協會의 略稱이며, 英字의 a는 architect의 첫字입니다.

全般的인 Image는 固有한-韓國의 壁面 裝飾의 완자 무늬를 象徴하며 建築的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建築家 Speer와 A. Hitler

独逸 現代建築 思潮

宋 旼 求

(會員·前韓國建築家協會會長)

지난 해 9月号 11月号를 거쳐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独逸의 現代建築의 思潮를 더듬어 보았다. 물론 全般에 걸쳐서 正確하게 記述하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局限된 部分을 粗忽히 다루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筆者의 念願은 創作하는 作家 여러분의 内面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世界觀, 人生觀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며는 바로 그것이 筆者의 바라는 바이다.

이번호에는 Nazis의 政策과 二次大戰後의 일들을 簡略하게 간추려 보았다. 글을 쓰다가 보니까 새삼 느껴지는 것이 萬一에 Nazis의 藝術的 創造性的의 抑圧이 없었더라면 또 猶太人의 迫害가 없었더라면 世界的으로 有名한 많은 建築家들 Walter Gropius, Mies van der Rohe, Ludwig Hilberseimer, Martin Wagner, Marcel Breuer, Erich Mendelsohn, Ernst May, Taut兄弟들이 그대로 國內에 머물어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現代建築은 独逸에서 어떻게 成長하였을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때 참으로 無常하다는 말이 이럴때 쓰여지는 것만 같게 생각된다.

끝으로 CIAM과 New Brutalism에 관해서는 다음 機會에 詳述하겠으며 讀者 여러분의 새해 多福함을 빌면서 이 原稿을 보낸다.

× × × ×

1928年 独逸에서는 CIAM(現代建築國際會議=Congrè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에 Hugo Höring이 Berlin에서 Ernst May가 Frankfurt에서 Hannes Meyer가 Swiss人이지만은 Dessau의 Bau-haus에서 參加하여 La Sarraz宣言에 署名을 하였다.

그러나 CIAM의 對社会的인 面만을 表面에 내세우는 態度와는 달리 Hugo Höring은 正面으로 Le Corbusier와 意見의 對立을 보았고 Ernst May, Hannes Meyer의 思想과는 全혀 相反되는 狀態에서 第3 회까지의 會議은 獨逸勢力과 Le Corbusier가 中心이 되어 活動이 이루어졌다.

한편 獨逸의 國內의 政治情勢는 1930年代 初頭로부터 크게 變化하여 1932년에는 Nazis로 인하여 Bauhaus는 Berlin으로 부득이 移轉하지 않으면 안되었으 1933年 第4 회 CIAM이 開催되기에 앞서서 Bauhaus는 「文化面에 있어서의 Bolshevism의 温床」이라 捺印적하고 閉鎖되며 獨逸의 現代建築의 움직임은 中斷되고 만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Walter Gropius, Ludwig Hilberseimer, Marcel Breuer, Martin Wagner, Mies van der Rohe, Erich Mendelsohn, Ernst May, Hannes Meyer, Taut兄弟등 大部分의 建築家들이 國外로 移住하고 동시에 工業的인 建物を 除外한 여하한 現代建築도 國內에서는 容納이 되지 않았다. 한편 Adolf Hitler는 1938年 Nazis 黨大會文化會議에서 그의 民族社會主義와 Nazis 文化의 理想에 대해서 一場의 演說을 행하였다.

그중에 建築에 관한 그의 所信이 相當한 部分을 차지하였는데 그 一部를 簡略하게 간추려 보았다. 그 까닭은 縮막한 이 글 속에서도 Adolf Hitler가 품고 있었던 생각과 그에 따라서 Albert Speer 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Nazis의 新古典主義의 形態가 역력히 隱혀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우리들은 獨逸의 藝術과 文化를 國際猶太主義者들의 口味에 맞도록 努力할 必要는 없다.

만일 우리들의 이 獨逸aryan의 文化에 대하여 內面的 姿勢를 밝혀낸다면 또는 將來에 밝혀낼 猶太人이 있다며는 그것은 永劫漂泊의 猶太人의 系統중에 우연히 또는 不幸으로 인하여 다른 의미 한 방울이 스며들어 그것이 猶太人 自身에 反抗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뜻으로 돌릴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생각컨대 民族文化의 깊은 蒼空에 흐르는 銀河水와도 같은 것이며 幽玄한 無數의 별중에서 유독 太陽만이 赫赫하게 빛나고 있다. 그러나 遊星이고 太陽이고 모두가 한個의 實體로서 이루어졌으며 同一한 法則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民族의 文化活動의 全体도 한個의 受任에 따를뿐 아니라 “하나”의 精神에 있어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天才라는 것도 異常한 것은 아니며 단지 卓越한 例外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그의 作品은 그들의 特有的 또 他人이 겨룰 수 없는 卓越性에 의하여 빛은 더한층 빛남으로서 다른 같은 種類의 業績이 이 光影에 의하여 빛을 잃고 말며 그렇게 되므로서 健全한 國民大衆도 忽然히 이 빛속에 감싸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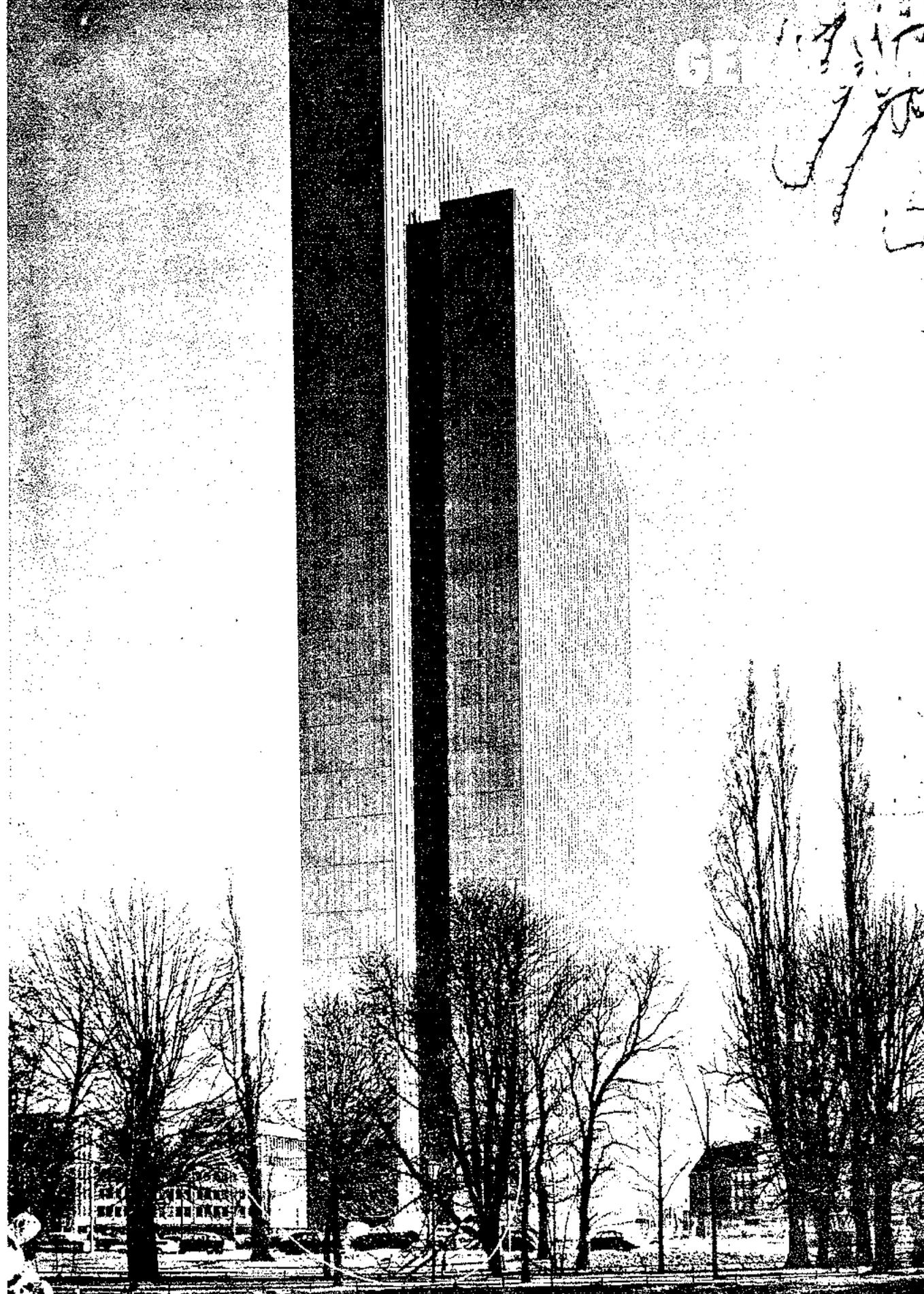
그런고로 國家도 社會도 個人도 全部 藝術作品에 受任者로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으며 現代에 있어서 民族을 支配하고 있는 精神姿勢, 生活態度 全体의 認識과 認識方法이 藝術作品에 一般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 現實에 있어서 受任이 무엇인가 그 意圖하는 바를 決定하고 藝術家는 이의 內面的 意圖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그 作品은 그에게 課해진 任務의 單純한 外形의 實現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며 마치 作品의 本質이 元來 그러한 것 같이 受任의 精神 즉 時代의 意志 및 目標의 內容을 受任者도 作家도 兩어께 짊어지고 또 造形하는 要素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作家도 그속에 包攝되는 時代의 全的意志를 그의 作品에 表現한다는 것은 언제나 참된 藝術家의 素質을 나타내는 証左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을 아무에게나 가장 많이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은 아마도 建築藝術作品이 그러할 것이다.

建築藝術에 있어서는 受任 그 自体가 이미 藝術的解決이 이루어져 있어도 그의 內面的姿勢와 外面

6700
14
11



的形式에 얼마나 顯著한 制約이 加해져 있는가를 즉시 알 수가 있다. 基督教의 中世의 宗教的인 면서 內面的인 神秘한 世界는 그러한 世界에서만 可能한 또 有用한 表現形式을 찾아내었던 것이다.

즉 Gothic의 競技場이라는 것은 Romanesque의 停車場이라던가 Byzanzin의 市場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듯이 그러한 것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中世라든가 近世初期의 藝術家가 受任받은 當時의 建築物에 대해서 藝術的 解決을 이루어 놓은 그 方法은 참으로 適切하며 驚嘆하여 마지 않는다. 그것은 그 當時의 生活內容 그 自体의 絶對的인 잘 잘못을 証明하려는 것이 아니고 當時의 있는 그대로의 精神狀態를 藝術作品에 올바르게 再現한 것을 立証하였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그러한 世界가 한층더 永續됨을 試圖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며는 그 藝術的 解決이 그러한 試圖에 도움이 될 思想을 探究한다든가 發見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宗教的領域으로 問題를 돌리면 지금까지도 基督教가 世界觀으로서도 모든 要求를 滿足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던 時代의 表現形式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當장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反對이나 人種的制約이 있는 새로운 世界觀의 表現도 지금 바로 精神과 意志와 認識의 오늘날과 같은 自由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過去의 領界에 물론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歐羅巴의 國家理念의 顯現은 異國의 一例를 들어 東洋의 一無意味한 文化에 의하여 行하여지지 않았으며 古代의 強大한 帝政의 權力에의 確認과 追憶에 의하여 몇千倍고 印象지워졌던 것이다.

帝政의 強權은 現實로서는 1500年前 死滅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非現實的인 힘으로서 意識속에 길이 길이 生動하며 作用을 繼續하고 있다.

그럼으로 近代國家가 古代強國의 帝政理想에 가까이함에 따라 그 文化的全体印象이 近代에 있어서 樣式形成面에서 나타날 것이다. 例를 들어 Napoleon의 世界國家建設이 試圖된 時代는 바로 그제가 帝政時代였던 것이다.

고로 우리들은 民族社會主義的時代의 產物이며 特徵이라야 할 建築物이 오늘날의 時代의 本質的인 姿勢가 아닌, 또는 目標가 아닌 것의 現象으로부터 受任을 받든지 혹은 이것을 實現할 機會를 찾는 것은 承認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그 受任을 供與하는 方法에 따라 獨自의 時代精神을 偽構으로 이끌어 감으로서 獨自의 世界觀의 存在의 根本을 疑心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時代의 公共的 受任者는 重大한 使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獨裁者의 “하나”의 精神으로서 Nazis의 新古典主義는 이루어졌으며 1945年 獨逸은 또 다시 敗戰과 더불어 廢墟속에서 國土는 東西兩陣營으로 分斷되고야 한다. 그리하여 戰後의 獨逸國民에게 주어진 것은 歷史上 그렇게까지도 徹底하게 破壞된 적이 없는 焦土에서 貧窮과 饑饉과 建物の 殘骸만이 남겨져 있었을 뿐이었었다고 한다.

Köln의 경우 除去하여야 할 建物の 殘骸가 3千萬立方미터였었다고 하며 5年이라는 긴 歲月을 主要道路와 交通路線만에서 벽들과 돌, 흙더미를 겨우 除去하였을 따름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1948年 여름 通貨가 安定되기 시작함으로써 本格的인 建築活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全体主義體制가 全面崩壞된 이상에는 建築에 있어서 創造的인 思想의 이름은 역시 1933年 이전 즉 Nazis 이전으로 連結이 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으며 바로 이것이 獨逸再建의 底力이 된 것이고 純粹理性에 依支하였던 지난날의 思想의 底辺에서 한걸음 前進하여 人間이 渴求하는 人間的인 것로서의 建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된 것이다.

따라서 獨逸에서는 두가지 側面을 엿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戰後 Poelzig, Gropius, Rohe 등의



↑ Berlin의 Hansa 지역의 아파트

가르침을 받은 많은 建築家들이 그들의 國土의 再建을 論議함은 물론 그들의 스승이 國外에 있다 할 지라도 스승의 思想이 繼承되어 그것을 發展시킨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 아닐 수 없다.

또 우리들은 Hermann Muthesius의 思想을 記憶하고 있다. 그의 思想에 따르는 Deutsche Werkbund의 規格化와 多量生産의 追求,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젊은 藝術家들의 끊임없는 prefabrication과 mass-production의 探求라는 한 傾向은 다른 한 側面을 말하는 것이며 元來가 獨逸民族이 思辯의이며 哲學的인 思索을 追究하는 다른 한 傾向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特性이요 자랑이며 앞에서도 言及한 思想的인 面에서의 한 側面이다.

Stuttgart에서 더 南쪽에 位置하는 Ulm 造形大學에서도 역시 過去의 Bauhaus 못지 않은 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의 일들을 雄辯하여 주는 것이며 이 나라 사람들의 強靱한 精神力은 우리들을 驚歎케 할뿐이라 하겠다.

한편 荒野와 같은 廢墟를 눈앞에서 보는 國民의 마음에는 錯雜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겠으나 그중에서도 回顧의이며 浪漫的인 생각이 깃든다는 것은 人間의 常情이라 하겠으며 그러함을 생각할 때 1945년으로부터 10年間に 대한 J. M. Richards의 再建된 歐羅巴에 대한 見解는 우리들로 하여금 共感을 느끼게 한다.

즉 그는 1920年代로부터 30年代의 急速한 變革이 戰後의 復興에 큰 刺戟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期待한 事態는 일어나지 않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根本的인 原因의 첫째는 大衆의 本能 또는 直覺力은 以前에 있었던 것을 되찾는 方向을 取하였다는 것, 특히 이 傾向은 新生國에서 nationalism의 感情이 建築에 대하여 民族的의 傳統的인 懷古의 形態를 要求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第一의 理由이고, 다음의 第二의 理由는 高度로 發達된 現代建築은 機械化된 建設産業이 必要한데도 그 體制가 確立되지 않았다는 것, 第三의 理由는 再建事業의 大半이 戰前부터 各方面에서 活動하던 老練한 建築家들에게만 맡겨졌다는 것, 第四의 마지막 理由는 個個의 建築이 合理的인 都市像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作品 그 自体로서 取扱되었다는 다시 말하여 現代建築이 完全히 確立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데 그 原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西獨과 伊太利만은 만드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獨逸의 경우는 建築에 관해서는 가장 進取的인 國家이며 傳統的인 慣例에 대하여는 英國, 佛蘭西와 같이 逆行하는 일은 없었으며 오직 質的 또는 創造力에 대한 싸움뿐이지 近代性을 擁護하는 싸움의 싸움은 지났다는 것이다.

특히 工場建築에 있어서는 歐羅巴 어느 나라도 獨逸과 比肩할 나라는 없으며 印象的이며 뛰어난 技術的試圖라든가 아름다운 design의 美學的奔放함은 獨逸建築全般의 水準을 다른 나라와 比할마 없는 데까지 높여 놓았으나 유독 住宅建築단은 感傷的인 傳統主義에 支配된 것은 理解하기가 困難하다는 것이다.

어떻든간에 現實은 너무나도 엄청난 課題가 그들 앞을 가로 막았으며 1948년에 不足한 住宅戶數만 하더라도 700萬戶였다고 하며 12年이라는 歲月을 要하여 非常한 努力을 傾注하여 建設은 하였으나 새로운 都市構造를 가지지 못한 채 都市가 復旧되었으므로 解決하여야 할 都市問題는 그대로 內包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로 特記하여야 할 일은 1957년에 있었던 "Interbau Berlin 1957"에 관한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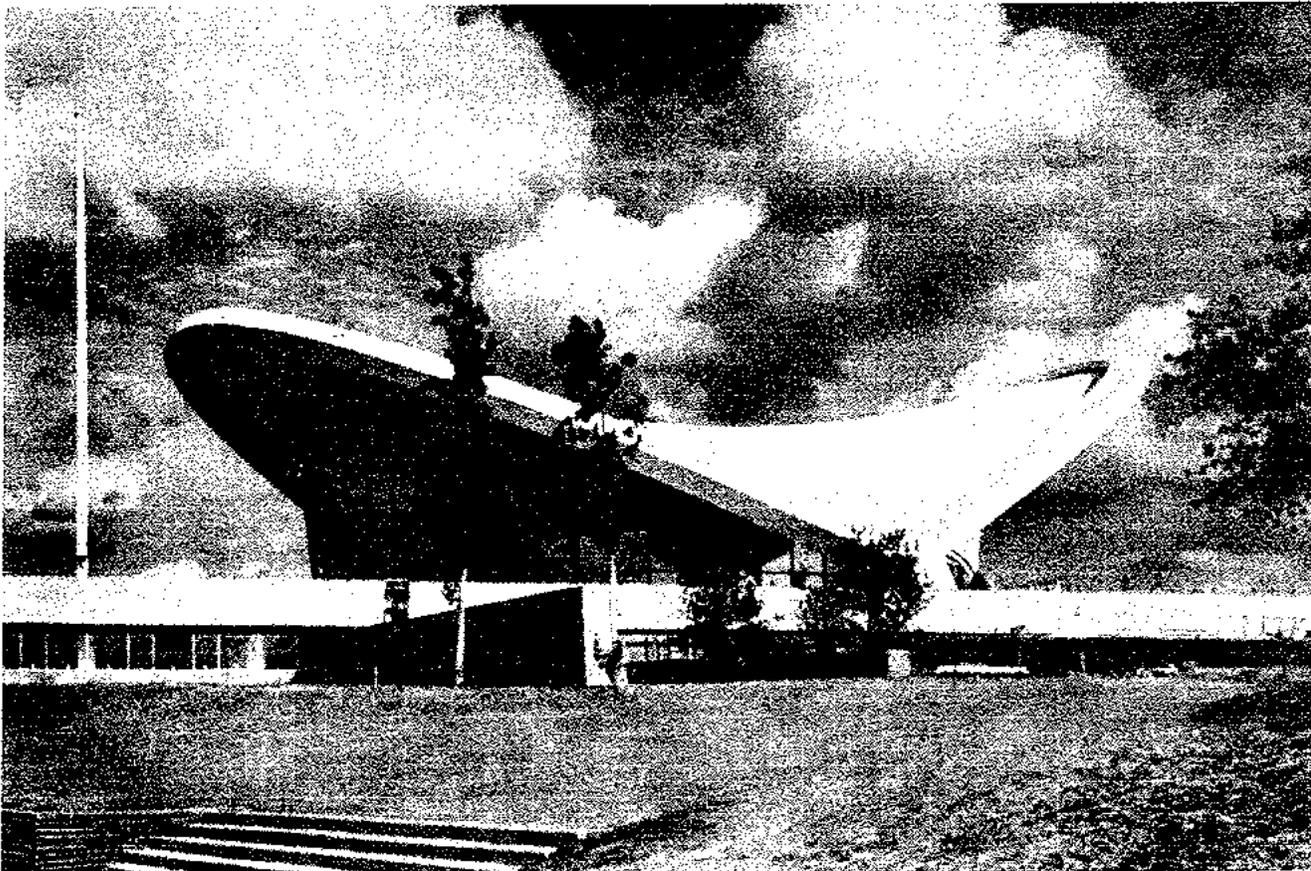
30年前 Stuttgart에서 Weizenhofsiedlung이 建設되었을 때는 Le Corbusier, W. Gropius, M. Rohe

등 現代建築運動의 先驅者였던 여러사람들의 손으로 計劃이 이루어졌으며 現代建築도 싹뻗었고 現代建築初創期의 歷史의 한時期를 副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30年後인 1957年 다시 現代建築運動의 意慾이 많은 障礙와 苦難을 더디고 獨逸에서 二次大戰의 破壞속에서 다시 그의 確固한 巨步를 Berlin의 Hansa 地区에서 내디디게 된다.

Interbau Berlin 1957에도 많은 有名한 建築家들이 參加하게 된다. 즉 Le Corbusier가 Unité d' Habitation "Typ Berlin"을 Berlin Olympic競技場附近에다가 建設하고 Walter Gropius 및 TAC Goop가 67世帯가 들어갈 9層建物 apart를 그리고 Pierre Vago가 Interbau 展示建築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作品을 建設하였고 Oscar Niemeyer가 7層 建物의 apart를 南美의 特異한 居住樣式을 導入하여 建設하였으며 美國의 建築家 Hugh Stubbing이 span 78.06m의 hyperbolic paraboloid의 suspension construction의 大會議場을 建設하였다.

이렇듯 Interbau Berlin 1957은 많은 巨匠들의 競作으로 이루어진 展示場으로서 構成美라든가 居住環境등의 処理는 그야말로 現代建築運動의 總決算 같기도 하였으며 다시 한 번 獨逸에서 30年前 Weizenhof에서와같이 現代建築運動의 꽃이 필 것을 期待하였으나 配置計劃이 都市計劃의 一定한 理論下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批判의 對象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公교롭게도 獨逸이 1918年 第一次大戰에 敗하고 9년이 지난 1927年 Weizenhofsiedlung 이 이루어졌으며 다음해 1928年 CIAM 이 創立되는데 이와는 反對로 1945年 第二次大戰에서 獨逸이 다시 敗하자 그로부터 12年後인 1957年 Weizenhofsiedlung을 想起시키게 하는 Interbau Berlin 1957 이



↑ Hugh Stubbing의 作品

建設되고 그로부터 2年後인 1959年 CIAM은 解体되고 만다.

이와 동시에 같은 해 F. L. Wright의 죽음, 또 잇달아 1965年 Le Corbusier의 不意의 事故로 인한 最後, 또 1969年 W. Gropius와 M. Rohe 등 巨匠들의 죽음은 Jurgen Joedicke의 말과 같이 世界는 第一世代의 時代는 지나고 第二世代 즉, Aalto, Jacobsen, Niemyer, Breuer 등이 世界의 建築界를 領導하는 동안 第三世代의 建築家들이 成長하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獨逸도 역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Hugo Höring의 思想을 徹底히 追求하는 Hans Scharoun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当代의 名指揮者 Herbert von Karajan의 強力한 支持로서 이루어진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Hall이 1963年 完工되므로써 世界의 現代建築의 珠玉같은 傑作이 또 하나 남게 되었고 이와는 對照의인 Egon Eiermann은 文化的 地理的背景의 評價까지도 包含한 넓은 意味의 機能을 分析하여 design을 展開하므로써 構造와 機能이 그대로 表現되어 그 明快함과 整然함은 比할 바가 없다는 H. Scharoun과 雙璧을 이룬다는 大藝術家를 獨逸은 가지고 있다.

또 有名한 Düssenhaus의 設計로서 이름난 Hentrich와 Petschnigg 또 天幕지붕으로서 世界的인 名聲을 차지하고 있는 Frei Otto 그리고 또 New Brutalism에 同調하였던 Reinhard Gieselmann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第三世代의 建築家들이 創作에 余念이 없다고 한다.

Gieselmann은 이렇게 絶叫하고 있다.

「創造의 藝術은 傳統과 精神의 對決을 배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既存의 形式을 破壞하고 自身의 時代의 純粹한 表現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建築도 또한 모든 藝術과 마찬가지로 精神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그 時代를 表現하고 그것에 의하여 生에 넘친 發展의 흐름을 維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建築은 局部的인 創造이다. 그러나 創造의인 事象은 모두 藝術이며 그것은 精神的으로 最高의 位置에 該當하는 것이다.

한편 技術은 知識과 經驗의 適用이며 技術과 構造는 實現을 위한 補助手段인 것이다. 技術은 藝術이 아니다」라고.



← Hans Scharoun

懸賞有感

〈바늘과 낙타〉

俞 景 哲

자고로 best seller 넘버 1 이라는 성격에 “천국을 바늘구멍으로 財物을 낙타”로 비유한 구절이 있는 것으로 기억 된다.

지난 연말, 某과 敎會에서 오랜동안 甲論乙駁해 오던 잡동사니 商가를 겸한 “復讐에배당”의 透視 圖 현상설계라는 廣告로 많은 응모자의 이맛살을 찌프리게 하더니만 작품 마감일 까지 주책없이 計 剛性을 露呈해 가며 법석이었다.

그후 版에 박힌 “當選作 없음!”이라는 白謔(?)으로 그치는가 했더니, 다음엔 무슨 別名인양 5, 000명 이상의 아리송한 條件이 붙은 市支部의 실 적확인을 貰해 한런더 어리둥절케 하고는 그래도 미흡한지 장관지 모르듯 原因 check에 敎會側 某氏의 말을 빌리면 輿情所까지 동원하여 指名원인의 股疵를 들추어 助款을 구걸 했다는데는 불쾌하고 不笑못기 까지하다. 그렇게도 못들어우면 계약 (宏績) 사본 한장 만으로도 士協創立 이전것 까지 도 確認은 필법도 했을텐데, 도시 건축인을 갖은 굴욕과 회생으로 우롱해주는 風土라고 白謔하기前에 “姦女 막달라 마리아불 들로질” 그네들의 위인 됨을 용서 받고 싶어진다.

기왕 건물을 지으려거든 作品을 놓고 우열을 가리든지 그렇지도못해 “도토리 키 재기”格 이라면 애써 駁選 피가나가겠든 이들로 하여금, 剛性을 갖고 再현상 乃至 合作이라도 動해볼 일이지 자기네의 愚를 糊塗해 보려 애매한 學閥이나 協會를 들먹거리려는 처사는 내 내 삼가해야 할줄로 안다.

하기야 교인 証明을 요하는 교직자들이 그래도 미심적어 信仰의 정도를 심전機에 넣어 봐야만 직성이 풀릴 지경으로 資格심사가 없으리라는 法도 한 없으렸다.

結果 탈락이라도 된다면 그 교회와 발급자는 僞嚴을 잃고 타락했다고 새삼스레 忠誠스러운 羊메도 생겨나 비통 분개 마저 할 것이다.

참말 우울한 일들의 連續이다. 하물며 낙타(商街) 등에 바늘(敎會)을 세웠다는 것은 寡聞한 탓인지 듣도 보도 못했으며, 설사 기막힌 재주로 꿩아 놓았다 한들, 누가 그 희한한 덩치를 바늘—구멍으로 알고 찾아 들어가 줄 것인가?

아니 우리 建築人들은 이런것 말고도 같은 時期에 울며 겨자 먹기로 某放送局 현상설계의 무지한 욕구를 배아리 없는 외침과 다시는 바늘—구멍 처럼 좁게 만든 閥이며 “佳作 없음!”이라는 낙타만큼이나 어색한 덩치로 鈍化시켜 놓지 말어주기를 서로가 祈願하며 해를 넘겨왔다.

이제 또 무슨 해괴한 競技設計들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찰떡 달겨 들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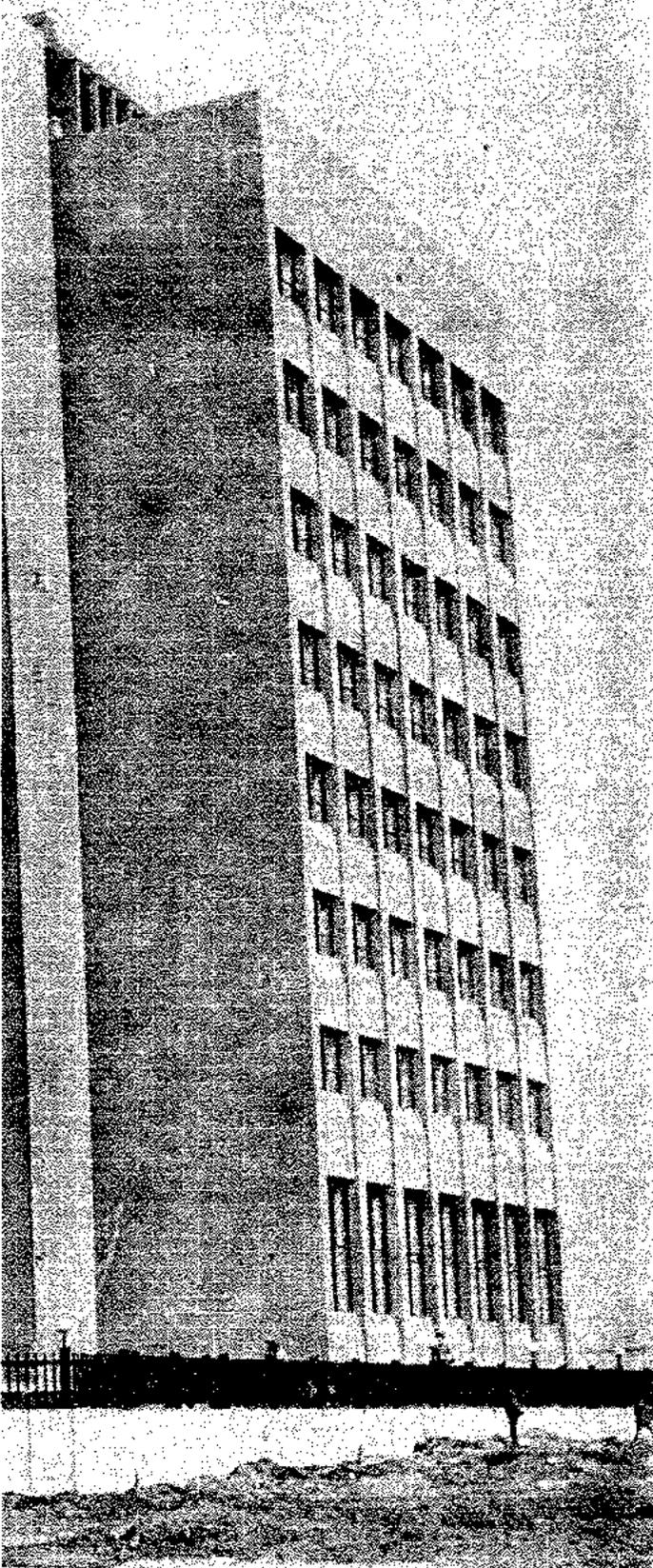
정녕 姦臣의 열륙소들이 이런 낙타와 망둥이 族들을 그 우직스러운 불과 힘으로 한 바탕 維新했으면…… 그리고 뒤 늦게나마 “소금 뿌린 벽”이란 冷水나즘 들 마셔가며 옛말로 들릴줄 아는 멋이야 쉬운 때이다. (會員)



年金·아스팍 會館

設計：綜合建築設計事務所（代表 李丞雨）

1. 設計指導：李丞雨, 李廷德
計劃及設計：尹錫祐, 金東賢
構造担当：馬春景
機械担当：李再錫
電氣担当：文信鉉
2. 施行處：總務處, 監理：總務處 政府綜合庁舍管理事務所 建築課 강창근
3. 名稱：年金·아스팍會館
主要用途：事務室, 會議場
所在地：서울



5. 構造

主体構造: 鉄筋콘크리트造
 基礎: 鋼管파일, 鉄筋콘크리트
 基礎

6. 設備

電氣. 受電施設: 22KV 受電. 特高変圧器
 2台(1,000KVA×2)

変電施設: 変圧器 4 台(400KVA×
 4)

エレベータ: 客用 5 台, 荷物用 1 台

通信. 電話: 400回線

放送: 스피카 161個

火災警報: 感知器 298個, 警報器
 27個

機械. 空氣調和: 空氣調和器 5 台

冷房: 冷凍機 1台(420RT),
 冷却塔 1台

暖房: 高圧보일러 2台
 (3 ton×2)

給水: 貯水槽 216M³
 (1日分/2,500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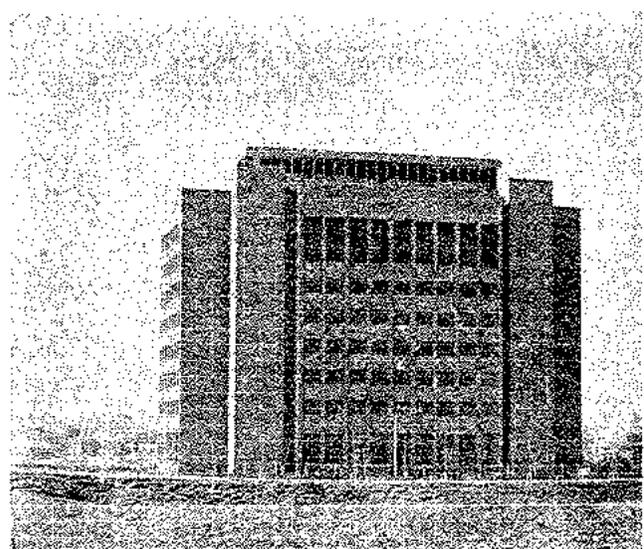
給湯 및 消防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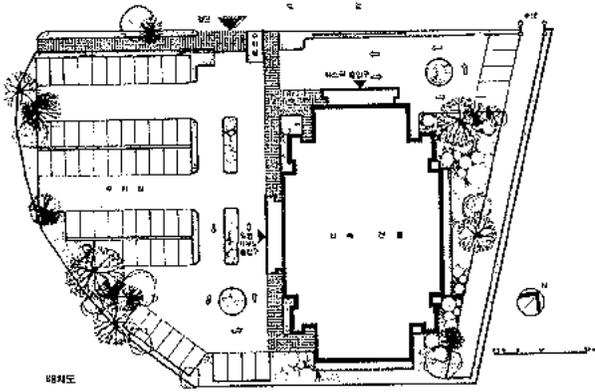
特徴

- 1) 効率の平面處理—
 可用面積 最大活用の 事務室配置
 有効空間利用에 便利한 移動式 칸막이
- 2) 完全한 防火 及 避難施設—
 耐火材料 使用
 外氣에 接하며 前室이 있는非常階段
 屋上에 HELI-PORT 施設
- 3) 多目的 用途의 國際會議場—
 同時演說실 施設
 吹寫施設
- 4) 施工材 一切 國產資材 使用
- 5) 長 SPAN構造에 依한 事務室內에의
 기둥除去
- 6) 國際會議場으로서의 紀念的(Monumental)인 外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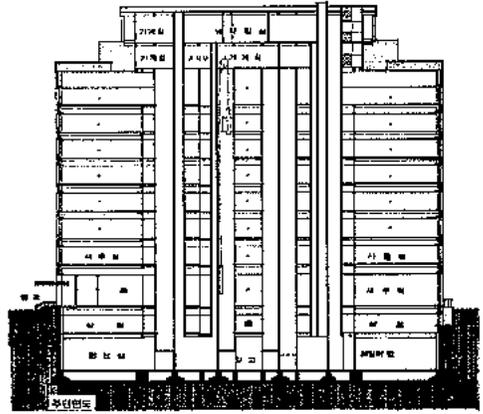
4. 規模:

層數: 地下2층, 地上8층. 建築面積: 1,690.8M² (512.4坪)
 屋上2층 基準層바닥면적: 1,690.8M² (512.4坪)
 駐車施設: 屋外 64台 延面積: 16,948.5M² (5,135.87坪)
 基地面積: 2,170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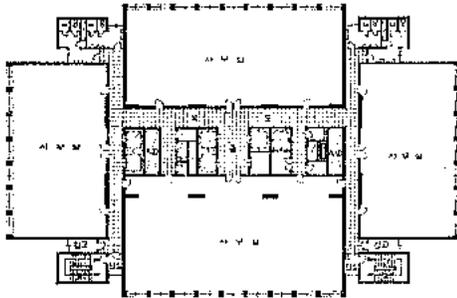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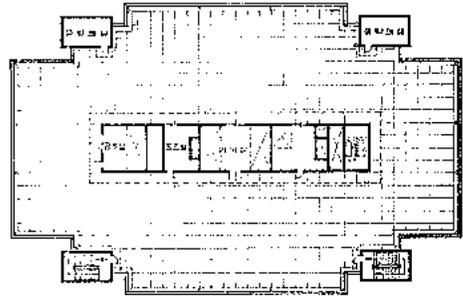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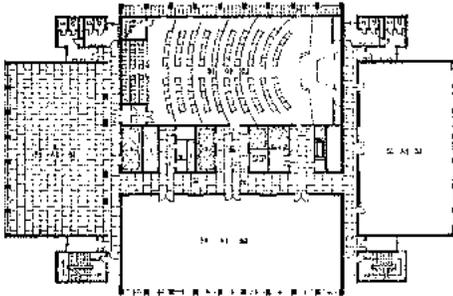
외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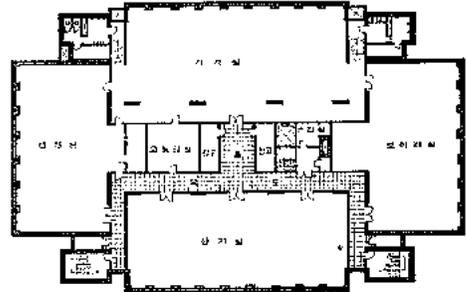
가운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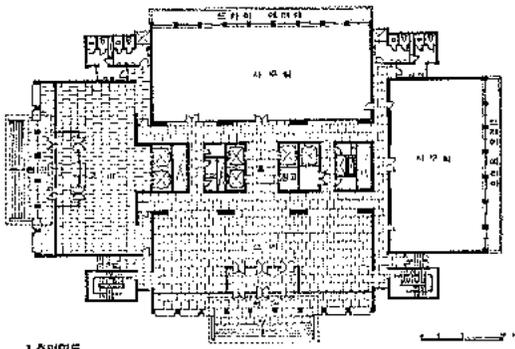
P.H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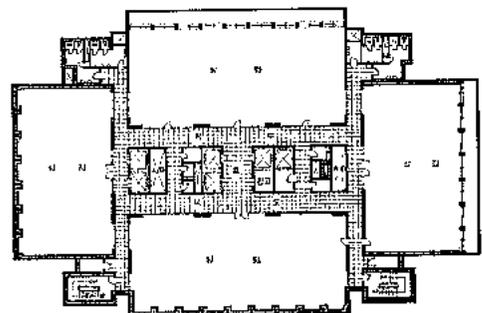
7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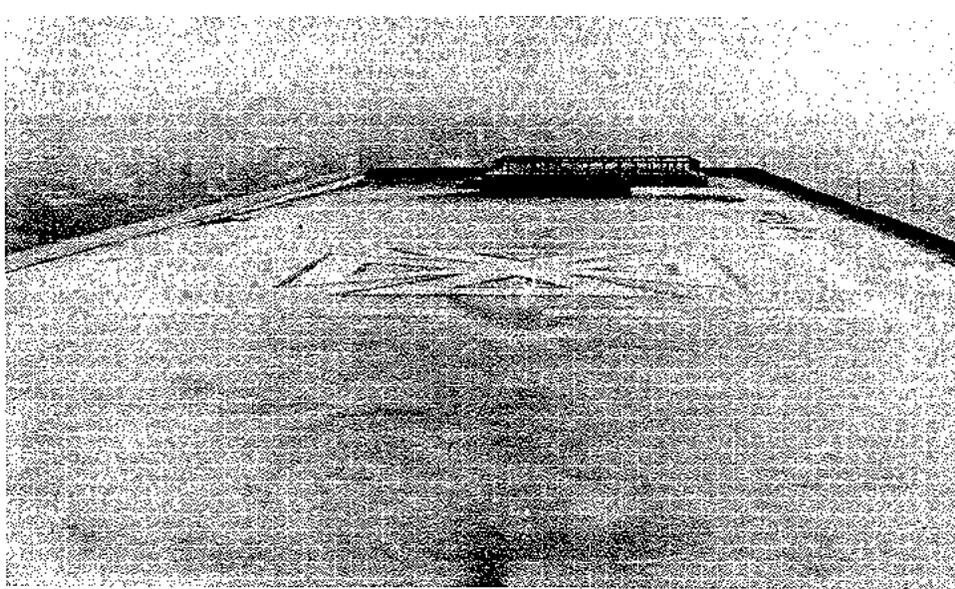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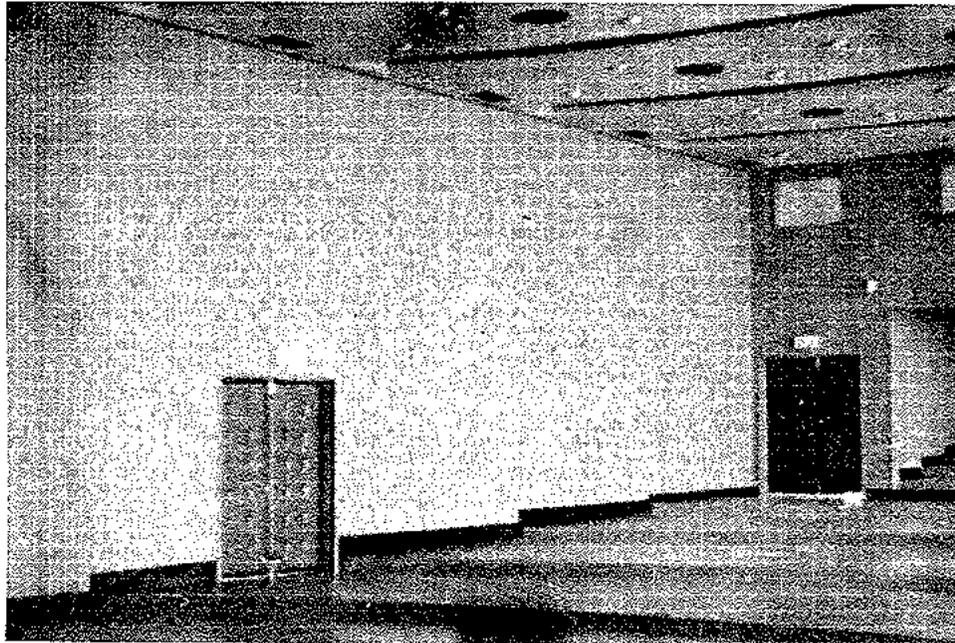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헬리 포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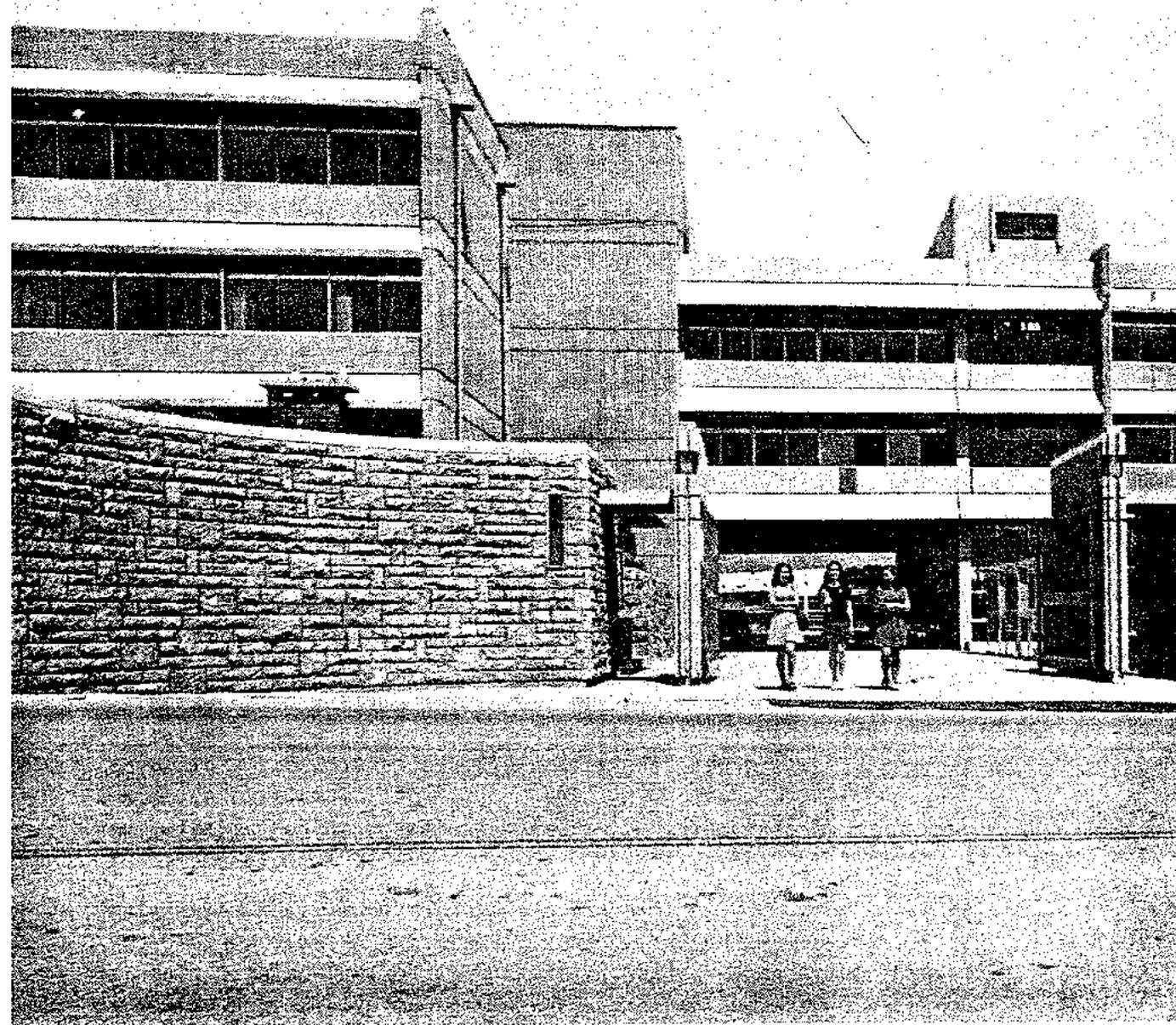


국제회의장 내부



제131호 객실





淑明女子大学校 西館

設計：又新建築研究所(代表 金仁錫)

위 치: 용산구 청파동 53~12

설계 및 감리: 又新建築研究所

계획 및 설계: 金仁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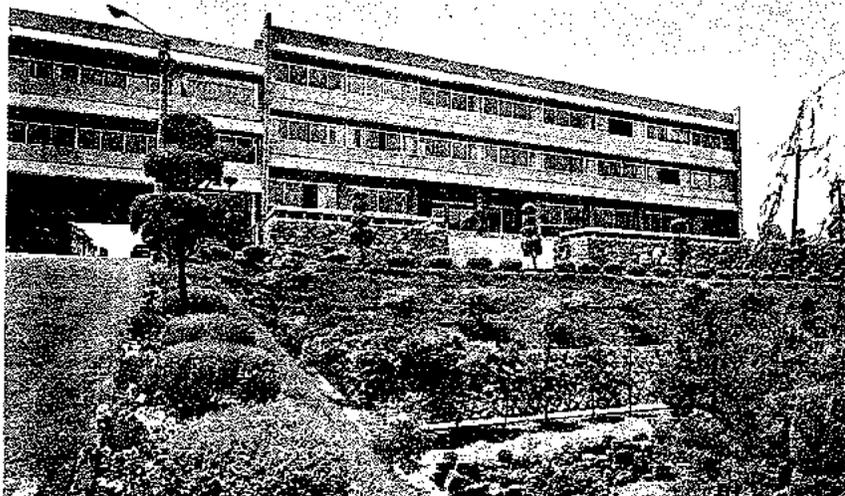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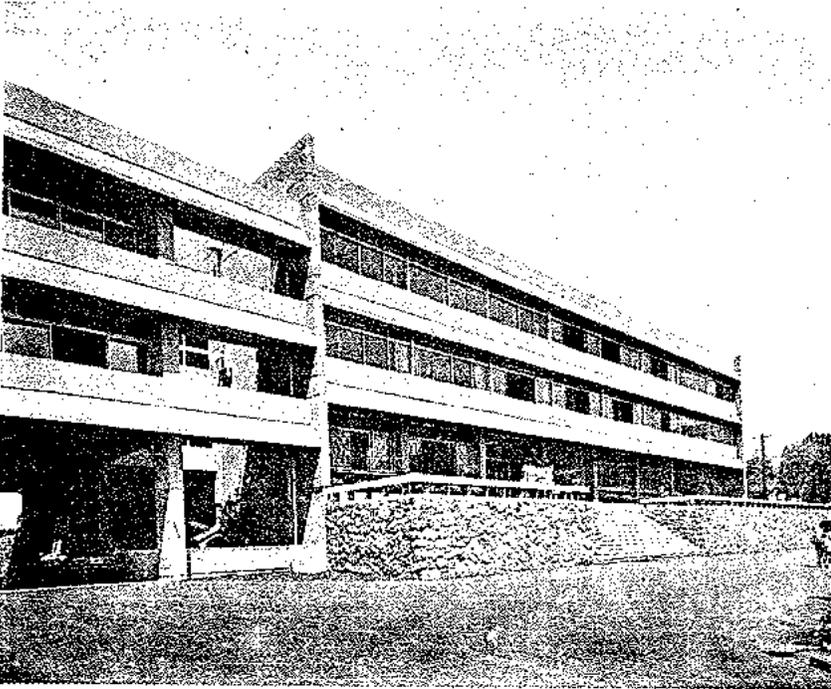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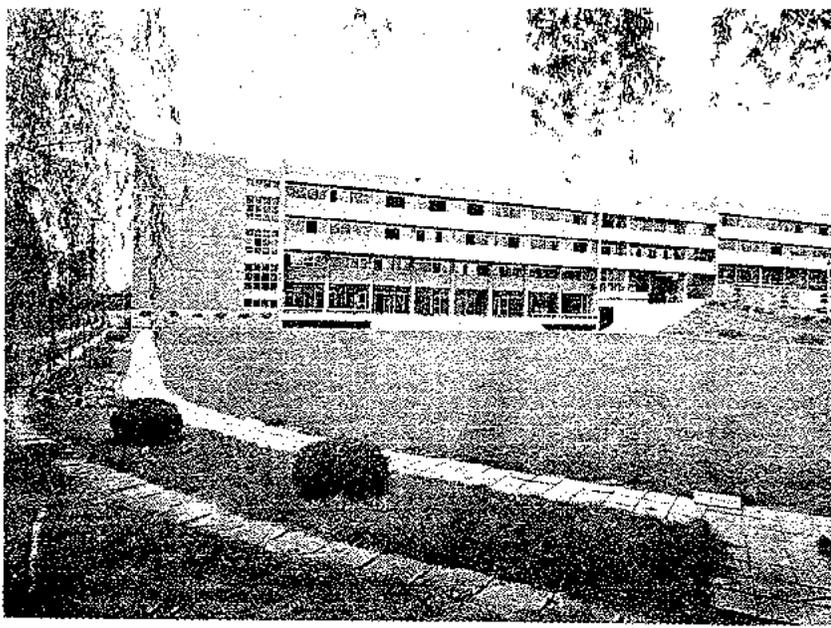
최영진

조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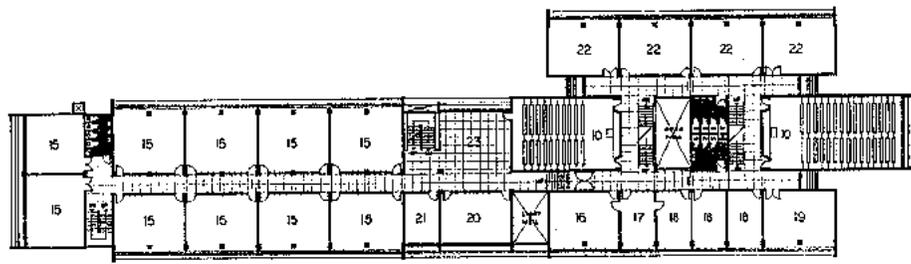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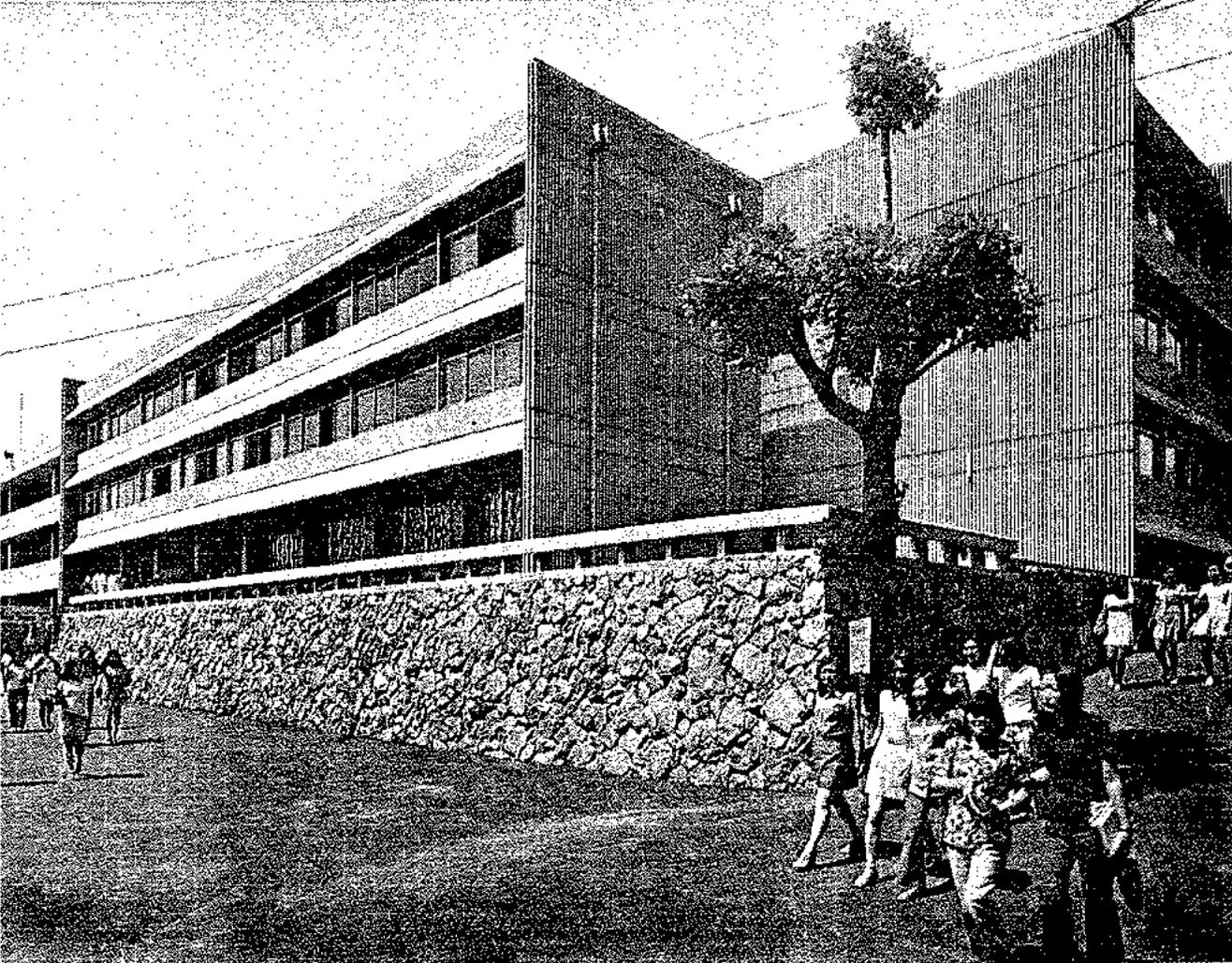
이경재

구조 담당: 마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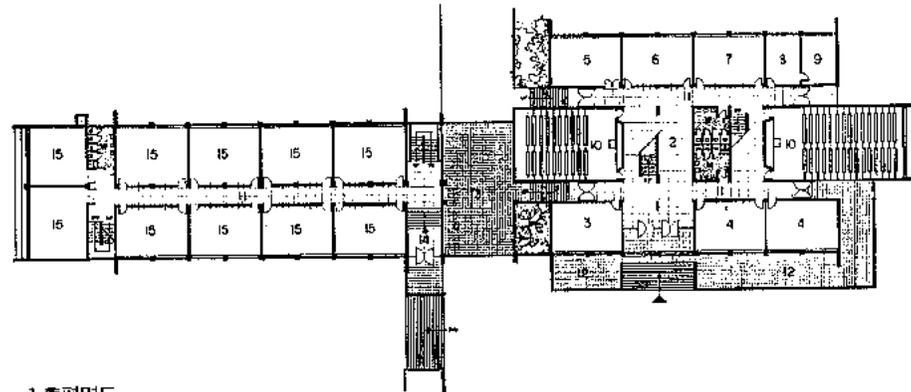
전기 설계: 이영수



설비설계: 이흥규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면적: 지층—849.75M²
 1층—951.00M²
 2층—1893.75M²
 3층—2208.75M²
 4층—2208.75M²
 옥상층—74.25M²
 계=8,186.2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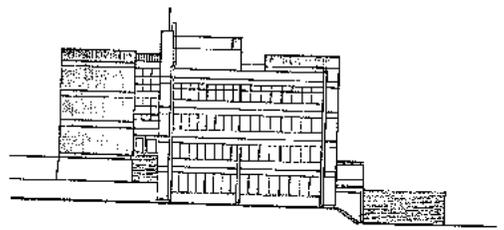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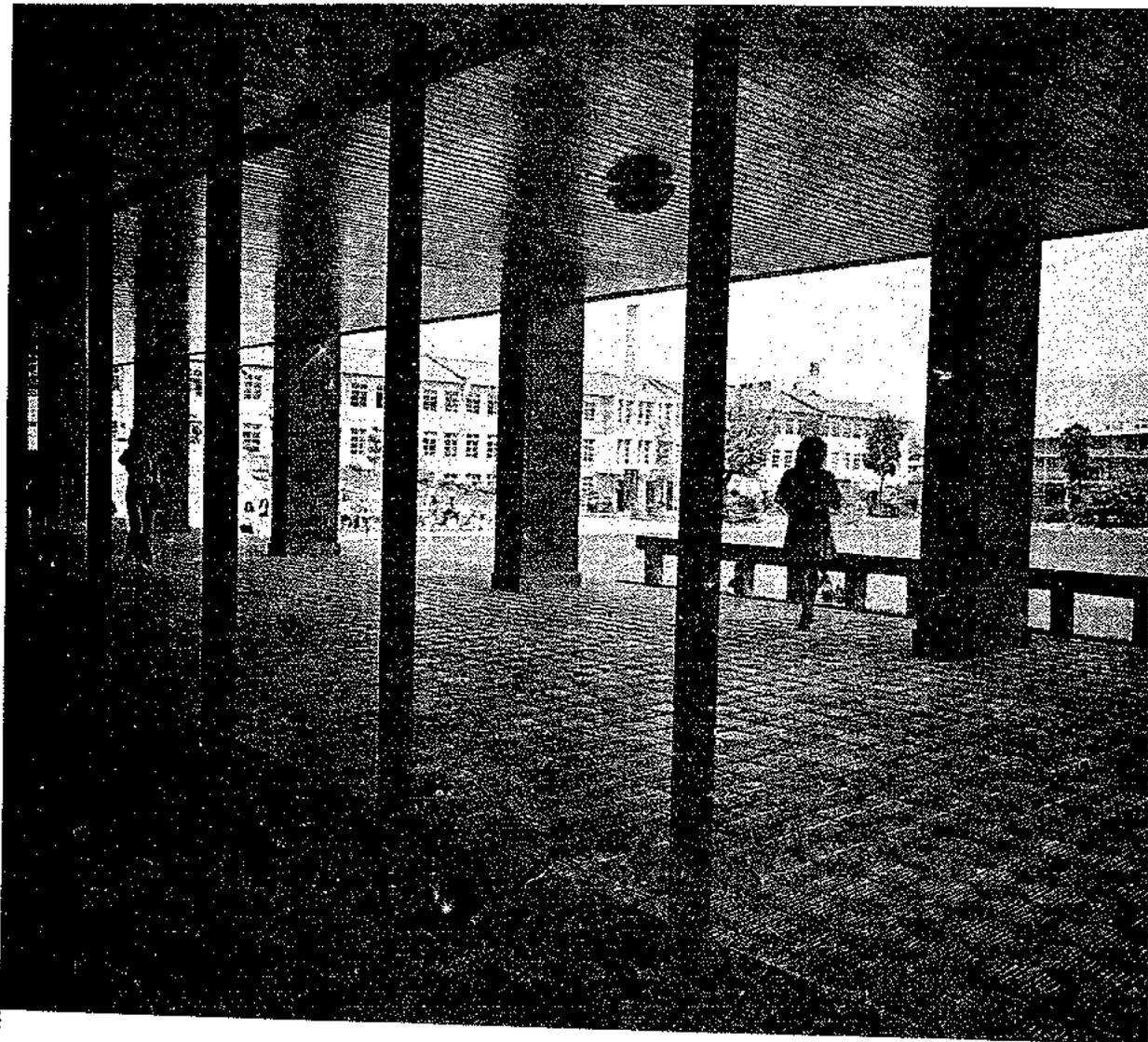


3, 4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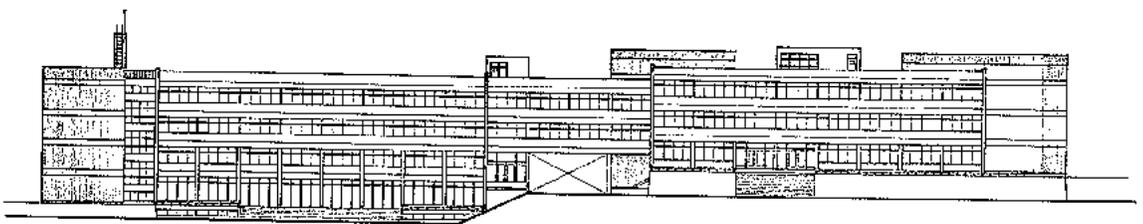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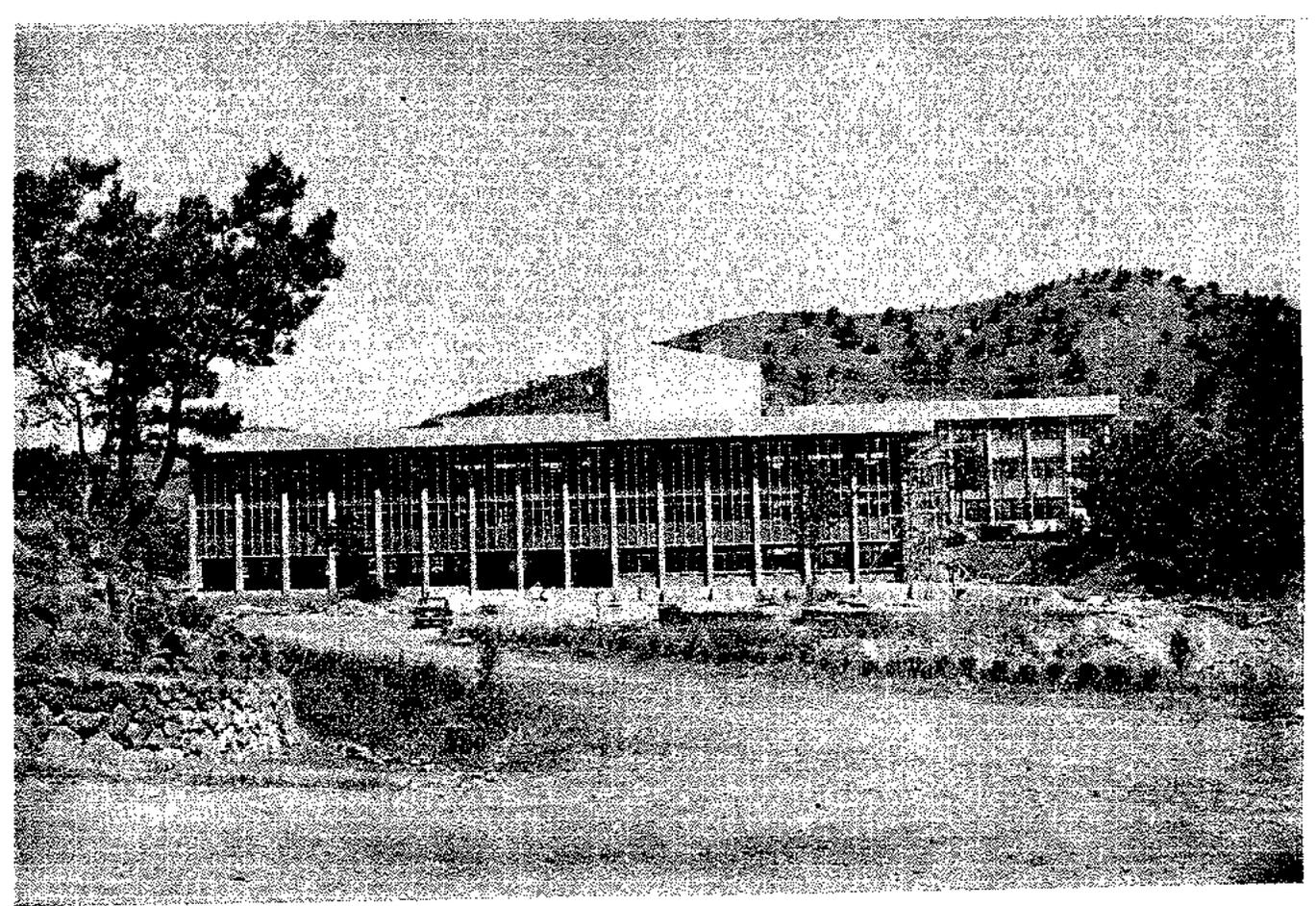
1. 천관
2. 홀
3. 학생과
4. 교무과
5. 관리과
6. 경리과
7. 총무과
8. 숙직실
9. 전화 교환실
10. 계단 강의실
11. 복도
12. 테라스
13. 통로
14. 천관
15. 강의실
16. 총장실
17. 미서실
18. 저장실
19. 회의실
20. 교수 휴게실
21. 준비실
22. 연구소
23. 홀



단층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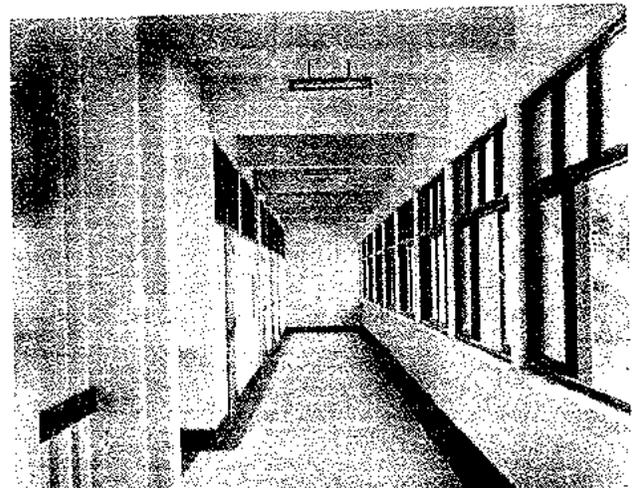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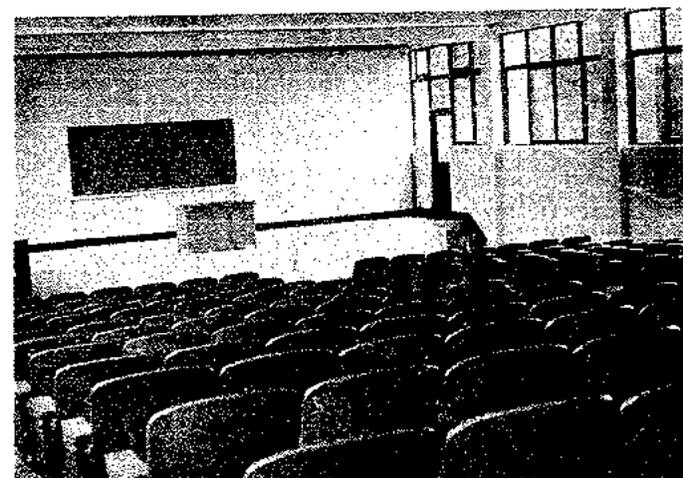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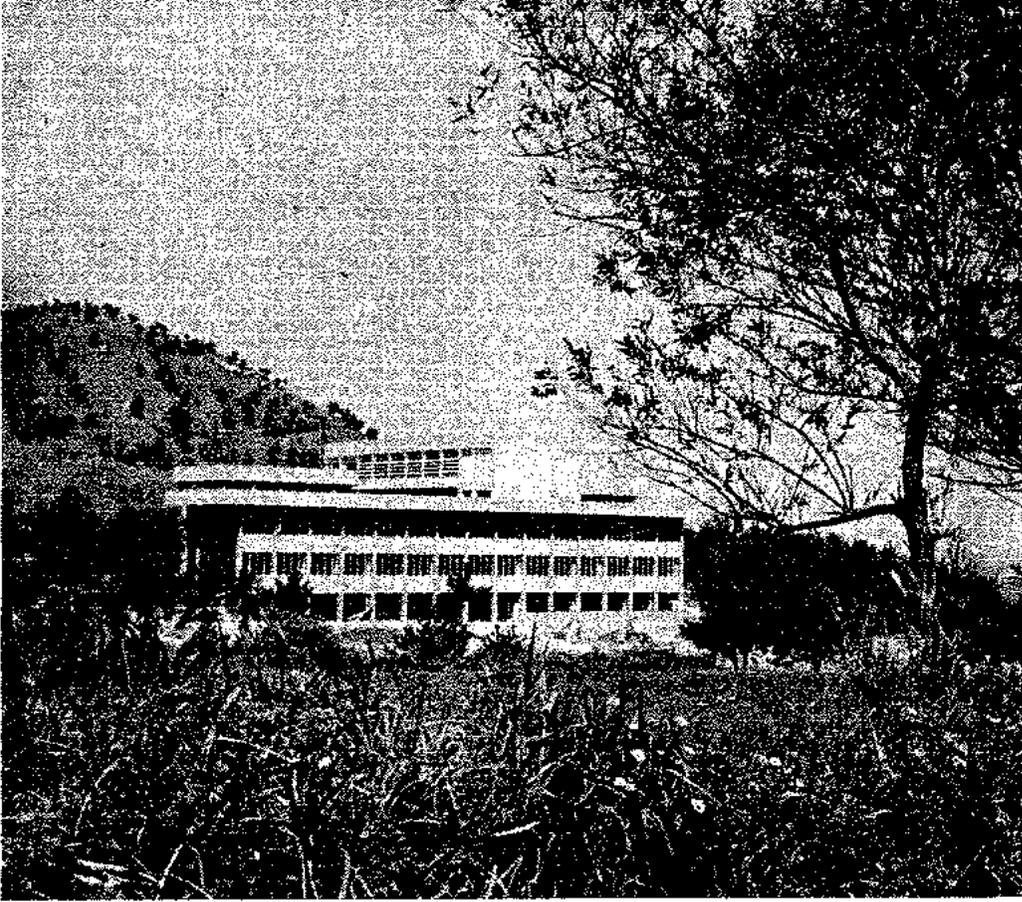


济州教育大学 本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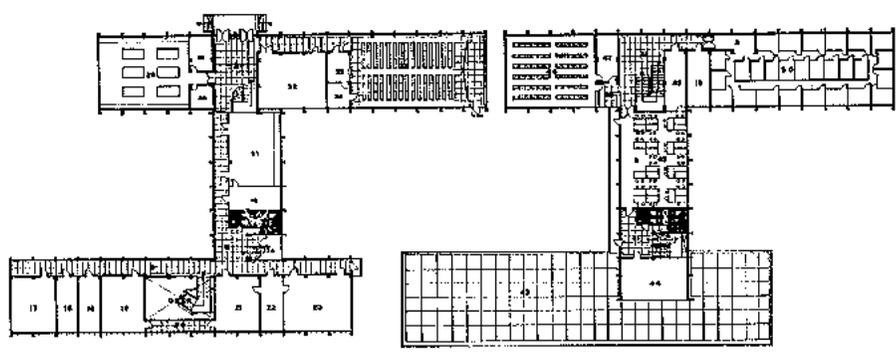
設計：株式会社 金星綜合設計公社
(代表 金漢涉)

위 치：제주시 화북1동
 연 건 면 적：4,248M²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공사기간：1971. 3~1972. 11
 설 계：① 계획-한종언·김석윤
 ② 건축-이관영·김홍식
 승 건-정투하
 김치덕
 설 비-이섭고
 전 기-이상호
 시 공：주식회사 대영토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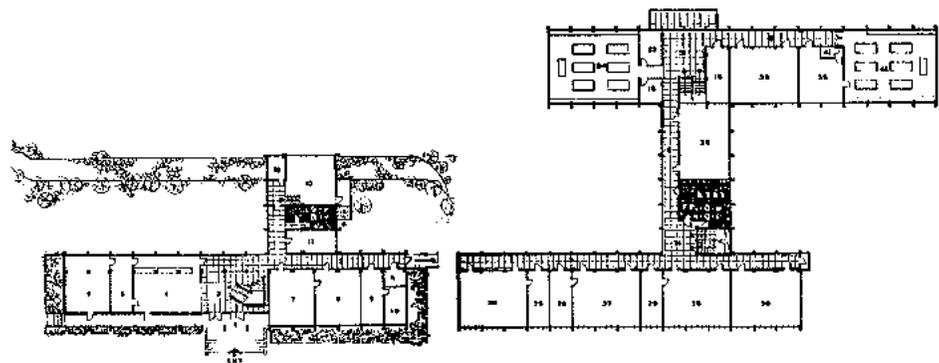


1. 현관
2. 「로비」
3. 복도
4. 서무과
5. 단장실
6. RNTC사무실
7. 교무과
8. 학생과
9. 양호실
10. 교환실
11. 수위대기실
12. 문서고
13. 사위실
14. 사무직원화장실
15. 보일러실
16. 등사실
17. 연수원실
18. 교수실
19. 교수 휴게실
20. 발코니
21. 회의실
22. 부속실
23. 확장실
24. 창고
25. 여학생화장실
26. 귀빈화장실
27. 조리실
28. 생활실
29. 준비실
30. 배양실
31. 출
32. 공작실
33. 영사실
34. 녹음실
35. 시청각실 (180석)
36. 미술실
37. 재봉실
38. 강의실
39. 교수화장실
40. 남학생화장실
41. 암실
42. 물리 실험실
43. 옥상
44. 교수 열람실
45. 도서 열람실
46. 서고
47. 도서 정리실
48. 대출실
49. 도서관리실
50. 개인 연습실 (종급)
51. 물탱크실
52. 열람실
53. 긴행복실
54. 화학실험실
55. 물리실험실



2층평면도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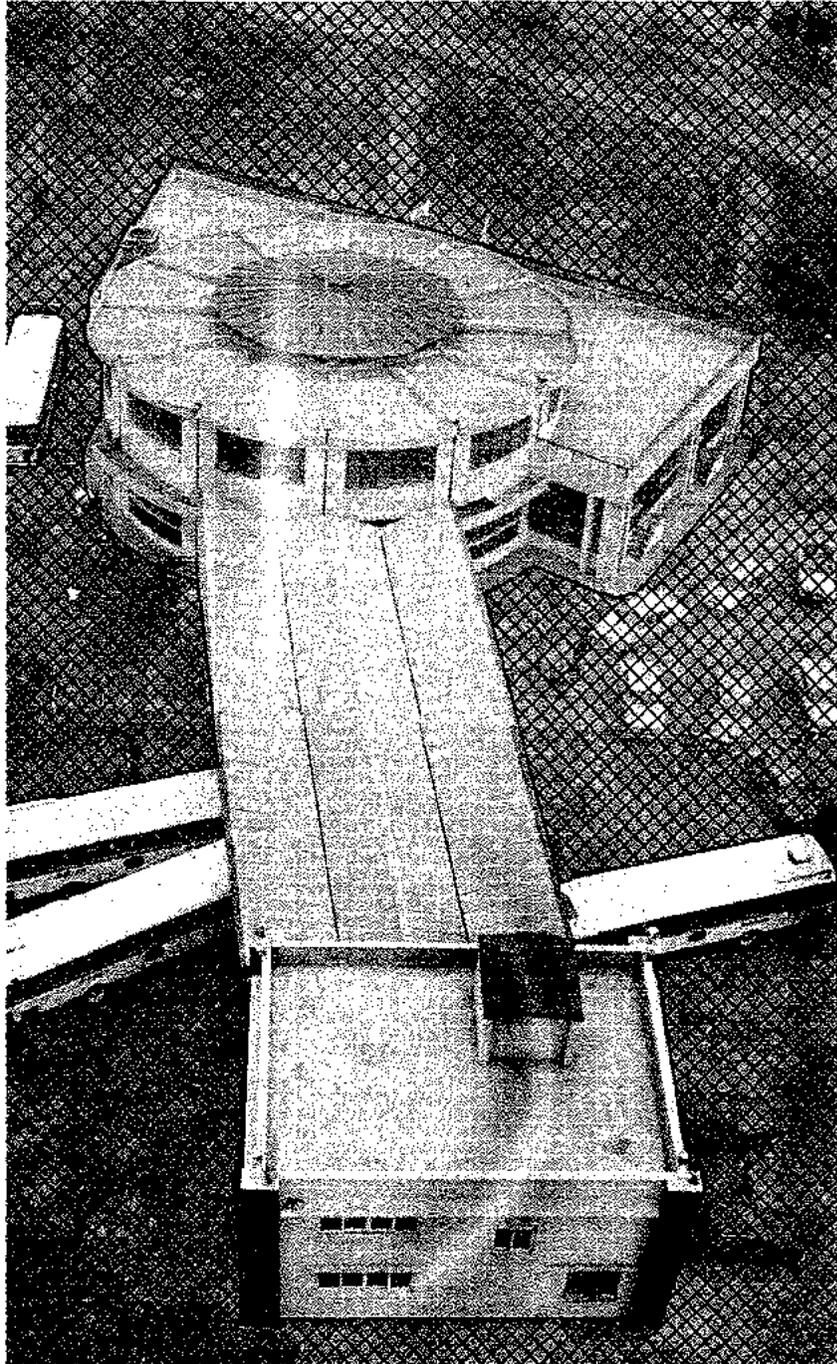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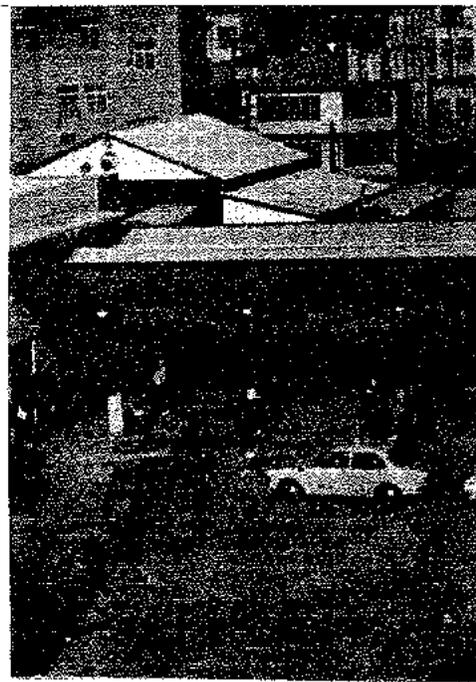


1층평면도

3층평면도

東洋高速버스터미널

設計：新新建築 研究所 (代表 金 奉 勳)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87

설 계 : 최 호 석 · 김 종 룡

감 리 : 권 상 운

시 공 : 김 덕 현

대지면적 : 3,200 평

면 적 : ① 터미널빌딩 1,254 M²

② 숙 소 313.5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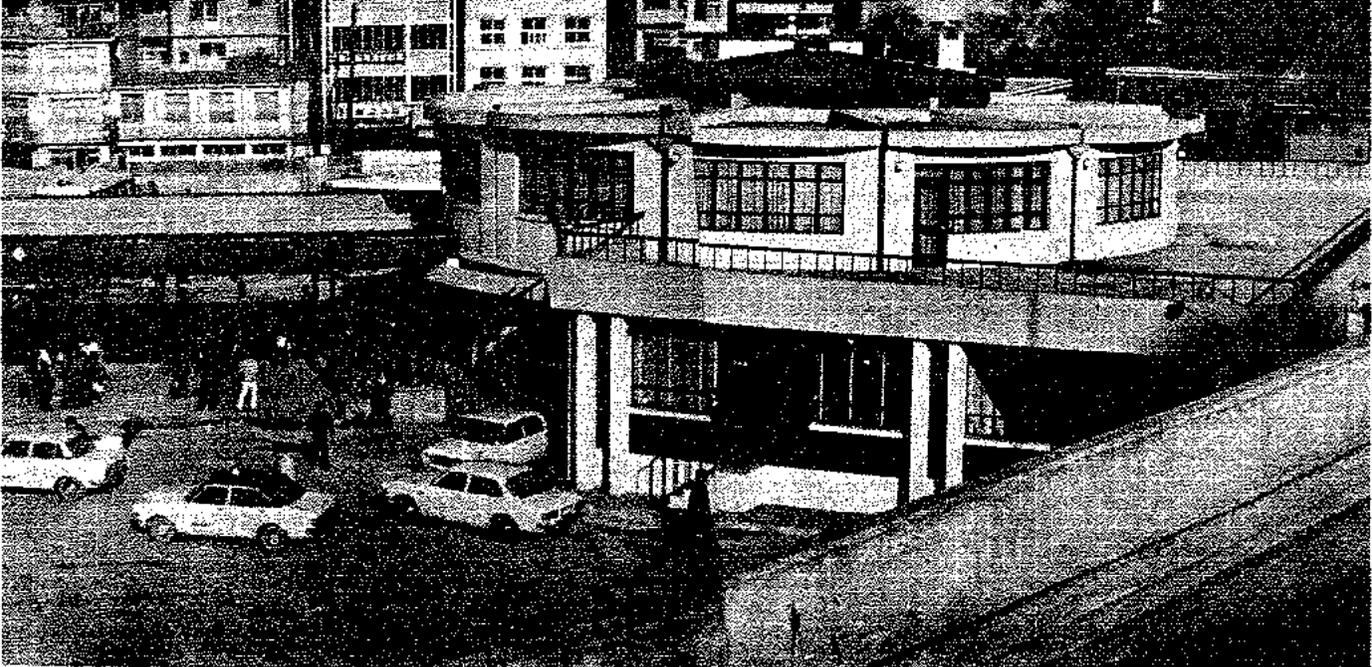
③ 정비고, 보이랄딩 283.8 M²

④ 콘 코 스 211.12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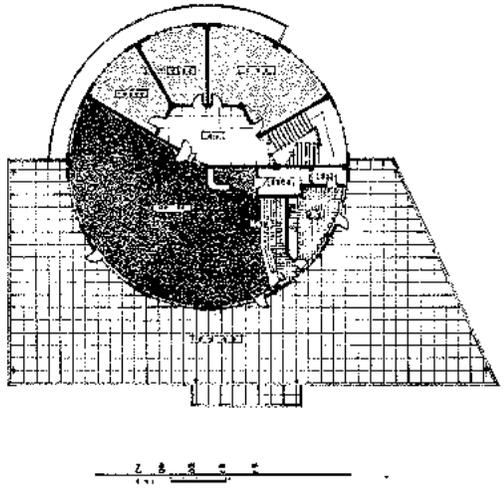
연 면 적 : 2,062.5 M²

공사기간 : 1972. 9. 15 ~ 1972.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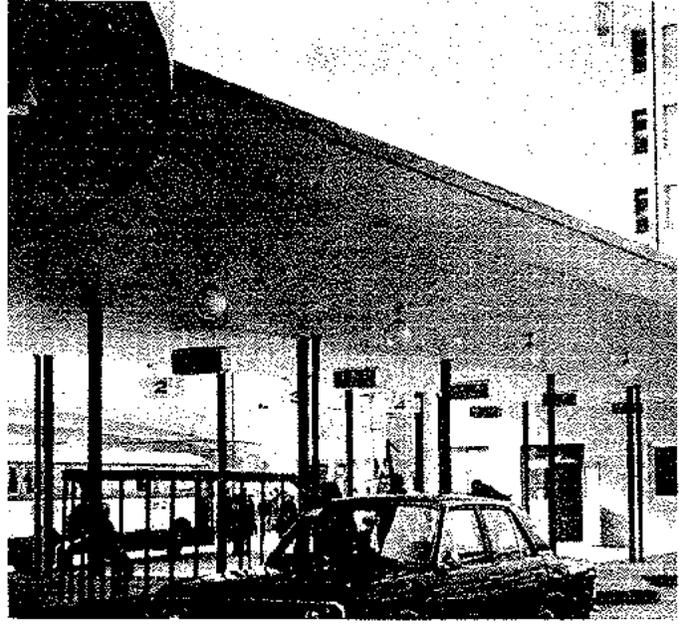
본 터미널은 서울 도심 상업지구 (旧 세브란스 병원)에 위치하며 대지는 3방면에서 드나들 수 있는 면적 3,200평 위에 세워진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여객대합실(약 16M × 25M), 스낵바, 매점, 약국, 매표소, 수하물실 및 업무관계 사무실이, 2층에는 경양식 식당, 노천휴게실이 있고, 그리고 버스 운영관계 사무실이 있는 2층 건물이 본 건물과 콘코스로 연결되었으며, 승무원과 운전사의 숙소, 종업원 식당 등이 있는 2층 건물과 정비공장이 별도로 있으며, (대합실에서 연결된 콘코스는 크기가 21M × 10M 모양 속에 연속식 45° 돌니형 흡이 있는 유개 승강장으로 여객이 눈, 비에 관계없이 승하차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10대의 버스가 동시에 발차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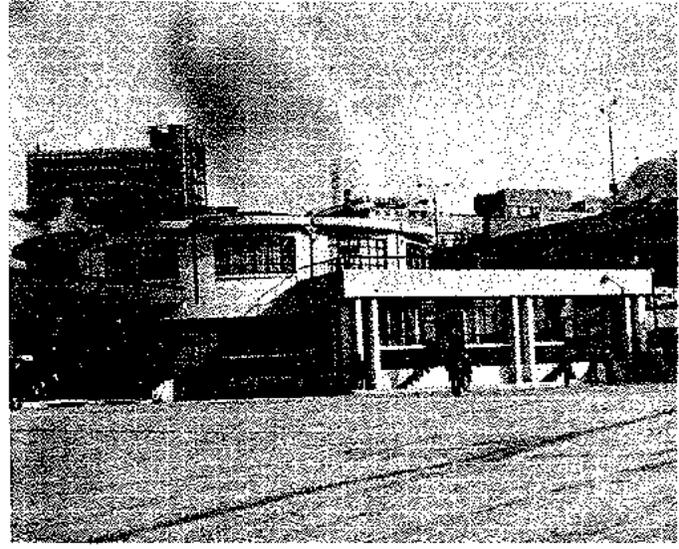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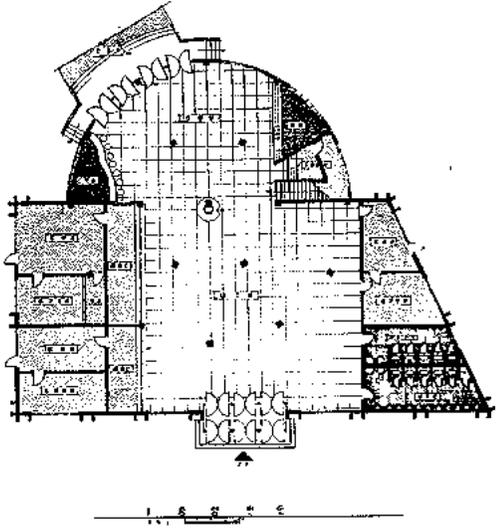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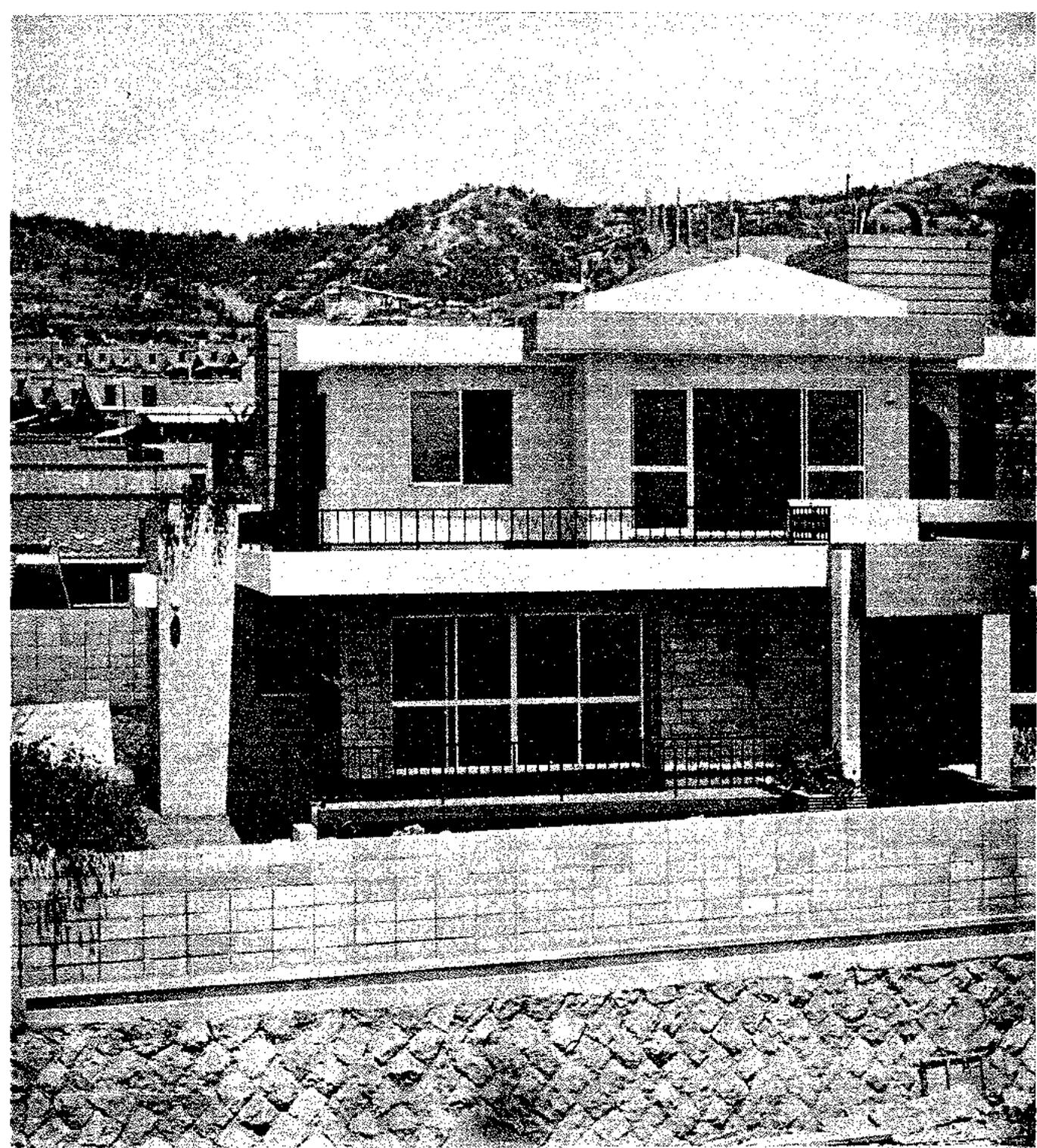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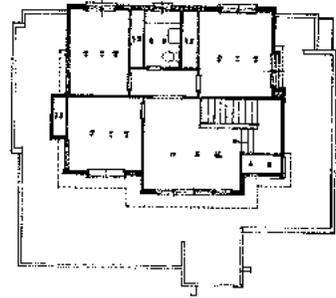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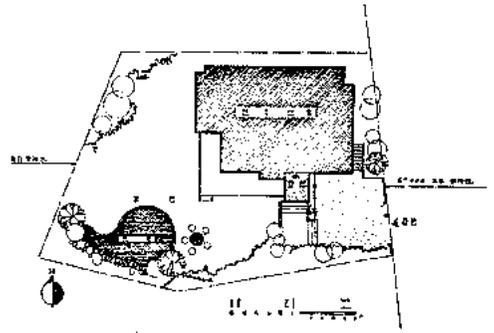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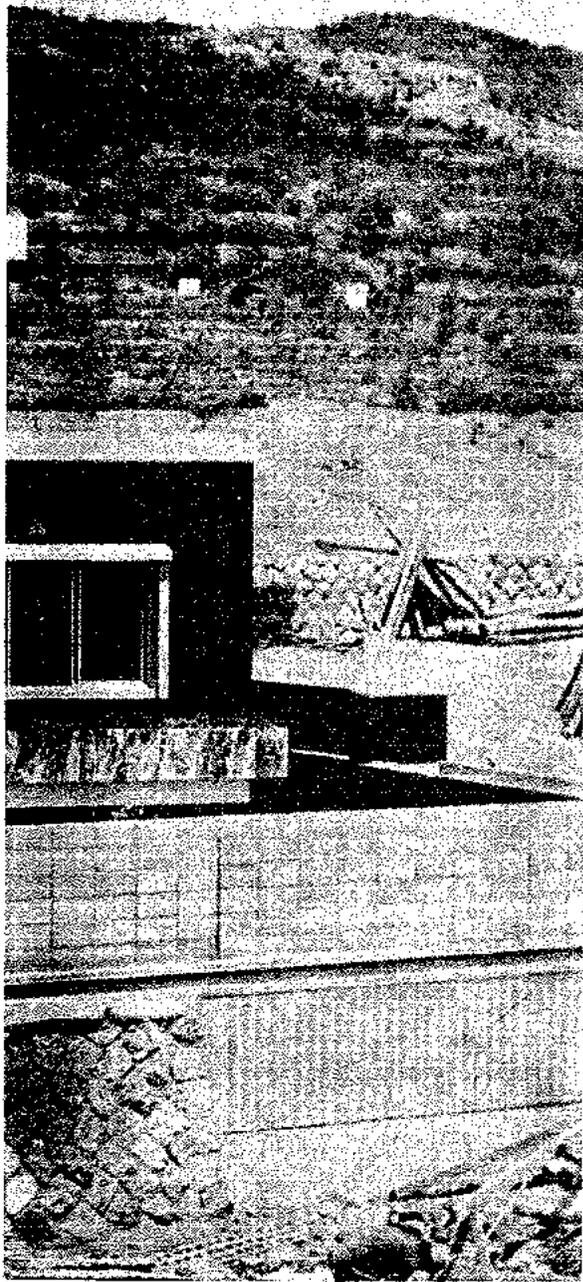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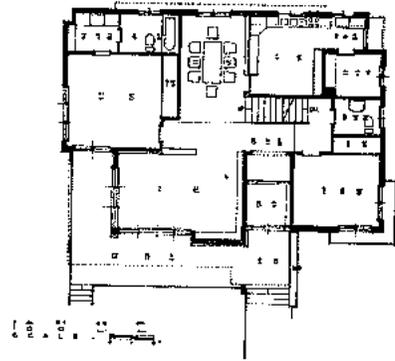
金氏住宅

設計：連合建築(代表 金萬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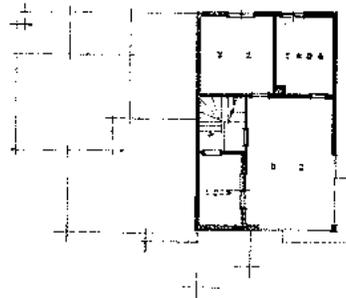
위 치	시내문구 갈현동 6의55호
건축면적	지층 16.9평
	1층 39.06평
	2층 22.38평
	옥층 1.46평
	계 79.8평



1:100



1:100



1:100

대지면적 : 170평

구조 : 벽돌 조적조 평 스투브 지붕 및
일부 콘크리트 스투브 위 천연 스
레이트 얹기

시공일 : 1972. 1.

준공일 : 1972. 12.

歐美紀行 (3)

崔昌奎

(韓國建築家協會長, 會員)

即 ceremony나 parade 등이 많은 것 같다.

거리의 巡警은 아주 柔順하고 觀光客들과 같이 写真도 찍곤 한다. London塔의 看守兵의 服裝은 守衛服裝으로선 아주 화려하다. 그옛날 王이나 王妃도 이 塔內에서 絞首刑을 받은 일이 있다. 斬首刑具(키로칭)가 恍惚한 王冠과 나란히 展示되어 있다. 幽閉室壁面엔 死刑을 기다리든 罪囚들의 哀切한 事緣이 落窻로 남아 있다고 한다.

原來 이 London塔은 “놀만디”사람들이 英國을 侵犯했을 때 建築된 것으로 城塞과 감옥을 兼한 것으로 煉瓦組積으로 이루어져 있고, 建築模樣이나 建物配置가 英國과 좀 다르다 했더니 亦是 “놀만디”style이었다. 이 塔 옆 테임스江에 걸쳐있는 塔橋는 옛모습이 아니고 1/2程度 헐려지고 있고, 바로 옆에 새로이 現代式橋樑이 建設中에 있다. 美國의 한 시골 富者가 이 塔橋를 英國政府에게서 사서 自己故鄉에 그대로 옮긴다는 것이다. London의 象徴이었던 이 塔橋를 英國은 왜 팔아야 했을까? 老大國도 別手없이 實利앞엔 무릎을 꿇히는 模樣이다. 正午가 되어 London市庁 앞 廣場에서 交響樂이 울려 퍼진다. 달려가 보았더니 市立交響樂團이 演奏를 하고 있다. 이것은 每日 正午에 1時間式하는 行事라고 한다. 市民도 觀光客도 다 모여서 “크라식”音樂을 듣는다. 빵과 coffee를 손에 들고 바로 樂師들 옆에 半누워서 듣는 이도 있고, 階段에 걸터앉아서 눈을 감고 感想하는 이도 있다. 한 曲이 끝나면 拍手를 보내고 다음이 始作되면 조용해진다. 우리도 종이컵의 coffee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땅바닥에 앉아 音樂을 들으면서 疲勞한 다



童話의 아버지 “안델센銅像과 개구쟁이들

리를 쉬었다. 이런 光景은 만곳에서 보기도문 光景이고, 果然 大英帝國답고나 생각했다.

映畵 “哀愁”에 나오는 “워털루”橋도 實物을 보니 그리 大端한 다리는 아니고, 너무도 많은 다리가 테임스江엔 걸쳐 있기에 그中에서 이 다리는 아름다운 다리에 屬할 뿐이다. 現代式 重厚한 아파트가 있기에 異常하다 했더니 陸軍兵營이라 한다. 우리의 常識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軍隊建物이다. 이렇게 훌륭한 兵營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外樣이며 部分 Design이 너무도 멋있고 完全한 藝術建物이라 하겠다.

London엔 숲이 우거진 公園이 到處에 있다. 特別히 “하이드 파크”는 周圍에 乘馬路가 있는 것이 有名하고 speech corner가 있어 各大學 政治科 學生이나 既成 政治人들의 雄辯練習場으로서 과거 유명한 政治人 中에서 學生時節 speech corner에서 大衆을 相對로 雄辯練習을 안한 사람이 없다 한다.

政治人과 學生뿐만 아니라, 社會人, 市民, 主婦들까지도 사과계좌에 올라서서 大獅子吼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곳에 갔을 때 한사람도 없고, 市民들이 日光浴에 熱中하고 있었다. 우리 서울의 그前 公園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된다.

London市內에선 피카데리街를 除外하곤 거의 閑散한 便이다.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고 Hotel 看板이 많이 보인다. 파리서나 London에서도 Hotel은 그 級數를 말하는 符號가 玄關門 앞에 붙어 있다. 卽 ☆票라든가 A字가 두개, 세개 그려져 있는데 그 數가 많은 것이 高級Hotel이 되고 없는 것은 最下級과 最高級이 된다. 우린 大概 별 두개나 세개 짜리에 들었다. 宿泊費도 比較的 싼 便이다. 英과 美貨는 美貨보다 單位價가 더 높다. 卽 1파운드는 美 2.618弗이 된다. 이번 旅行中 美貨보다 높은 것은 英貨뿐이었고 韓貨보다 싼것은 “그리스” 貨 뿐이었다. 市內의 觀光客은 東洋人이 많았다. 日本, 越南, 中國 等이고 特히 印度人이 더욱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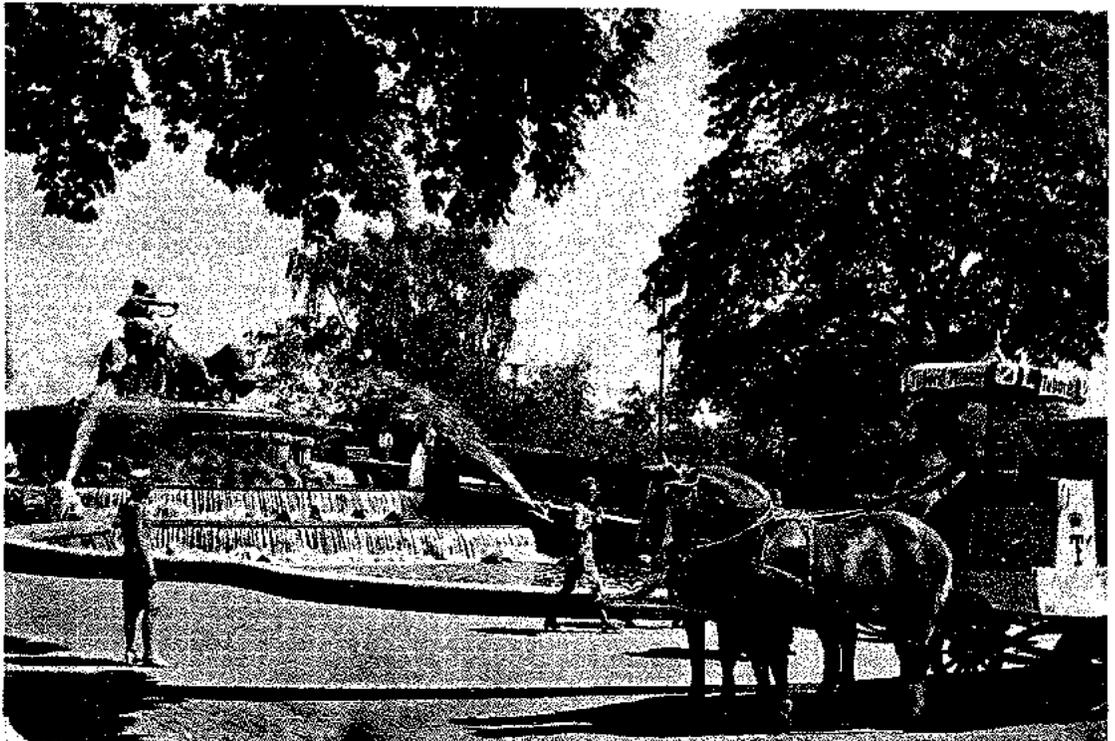
英國은 뭐니뭐니해도 “넬슨”이 最高의 英雄이다. 佛蘭西의 “나폴레옹”만큼은 못되어도 第一英雄視되고 있다. 名所의 名稱에도 “넬슨”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例를 들면 워터-루-브리 “넬슨廣場”

“드라팔갈廣場”等 “넬슨”에 關係되는 名稱들이라 하겠다.

市內의 全般的인 建物들은 新旧가 共存하고 있다는 感이 들고 現代建築이라 할지라도 大膽하고 漸新한 外樣은 別로 없고 年代가 올라갈 수록 煉瓦造가 圧倒的으로 많다. 煉瓦는 赤, 灰色으로 二種이 大部分인데 古代의 城에서부터 現代의 住宅에 이르기까지 煉瓦組積造이다. 建築施工 冊에도 英國積式이 있을 程度이니 알 수가 있다. 窓戶는 아주 堅固하게 보이고 氣候關係上 防水施工法이 發達했다고 하며 建築部門뿐만 아니라 雨衣, 雨傘等도 英國製라면 알아주는 것이다. 나도 兩面雨衣로 된 “코-트”를 바-바리코-트代身 샀다. 그것은 곧 北歐地方으로 出發해야겠기에 必要했다. 그 외에도 船具가 世界 第一이라니 門外漢인 우리에게 알 수가 없다. 船舶이나 船具는 英國과 和蘭을 차고 다음이 “노웨이”나 “덴마크” “피랑”을 꼽는다고 한다.

피카데리街 入口 廣場 噴水塔 階段에 판긋 못지 않게 “히피族”들이 도사리고 앉아서 “키타-”나 Happy Smok를 피우고 있다. 歐美各國의 頭痛거리인 이 히피族들은 London에도 亦是 많았다.

다우링街10番地는 有名한 英國首相官邸이다. 內



코펜하겐市 덴마크궁 옆 公園

部는 잘 모르겠으나 外樣이나 周圍環境이 그렇게 儉素할 줄은 몰랐다. 사람이 모여 서 있기에 가보았더니 허술한 아파-트 같은 建物인데 玄關 카노피도 없는 正門에 10자가 韓글씨로 써 있다. 守衛는 無關心하게 서 있을뿐 나는 大膽하게 가까이 가서 포-즈를 取하고 寫眞을 찍었더니 그제 서야 觀光客들이 몰려와서 寫眞을 찍기 始作했다. 이 首相官邸는 美國 白堊館이나 우리 靑瓦台보다도 더 儉素해 보였다. 大英帝國의 首相官邸가 이러해도 그들의 權威나 自尊心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英國人의 姿勢인 것이라고 生覺했다. 英國人의 이런 儉素와 勤勉이 鈍重과 強直이 바로 世界를 牛耳잡은 原動力이었구나하는 生覺을 하면서 Hotel로 돌아왔다.

9月22日 아침 London 히스로-國際空港”에서 S. A. S. 機로 “덴마-크” 首都 “코펜하-겐” 으로 떠났다. 오늘이 秋夕날이다. 72年度 秋夕 明月은 덴마-크에서 보게 되었다. 서울집에선 秋夕茶禮를 中學二年인 長男이 지낸 것이다. 午前 11時 正刻에 飛行機는 날씨가 몹시 차거운 “코펜하-겐 空港”에 着陸했다. London서 사입은 코-트가 도움이 된다. 港口가에 있는 有名한 人魚像을 보고 나니 碇泊中인 各國의 汽船들이 몹시 차워보인다. 바람도 거세다.

都市는 그리 크지 않아서 Taxi를 利用했지만 걸어서도 다녔다. 신나서 다니다 보니 Mr. 안이 보이지 않는다. 人波나 골목길에서 서로가 놓친 모양이다. 그러나 各自가 Hotel住所와 電話番房가 든 카-드를 다 가지고 다니므로 걱정할 것은 없다.

國民들의 얼굴型이 英佛伊와는 좀 다른 느낌이다. 그옛날 노르만디-族의 “바이킹”의 後裔들이다. 海事엔 能한 사람들이다. 徒手体操, 海運, 牧畜業, 協同組合 등이 發達된 나라이다. 現在 世界에서 G. N. P. 가 上位圈에 있지만, 그들의 祖上들은 무진 苦生을 했다고 한다. 國土의 大部分이 湖沼로서 또는 岩盤이여서 南歐에서 배로 흙을 運搬해서 岩盤위에 깔고 樹木을 심고 農作物을 심었다고 한다. 故로 自然의 惠沢은 그리 얻지 못하고 頭腦의 輸出이 國策으로 되어있고 祖上들의 傳統을 이어 勤勉하고 技術을 發展시켜서 外國에 進出시킨다고 한다. 建築部門에서도 Modul Cordination이나 組立式 建造法等이 있다. 우리 住宅公社에 와 있는 Mr. Bluck氏도 바로 “코펜하-겐”서 온 사람이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는 頭腦와 技術輸

出로도 모자라서 Sex까지 輸出한다고 빙정대는 사람들도 있다. 空港에서 Hotel 予約한 곳이 바로 怪常한 거리의 中心部이여서 周圍의 商店들이 거이 다가 Sex에 關한 店舖들이었다. 한 街路가 거이 다 그러한 商店들의 連綴이다. 後에 全市街를 돌아보고야 비로서 그 거리가 Sex Shop가 몰려있는 것을 알았다. 何必 잡노라고 잠은 Hotel이 그런 곳일줄이야!



코펜하겐港口에 있는 人魚像



코펜하겐 空港에서 우리民俗藝術園 謁



코펜하겐市内 SEX 店舖街

德분에 隨時로 그런 가게를 求景할 수가 있었다. 觀光客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政府는 Sex에 關한 印刷物이나 寫眞, 필름 등의 輸出을 獎勵한다고 들었다. 公娼은 아니지만 自然스럽게 公公然하게 Bar 등에서 買女の 交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Live Show(實演) 看板이 泰然하게 大路에도 걸려 있다. 하도 公開的인데는 놀라고 異常한 氣分까지 든다.

우리 一行은 天載一偶로 이런 나라에 온김이니 參考삼아 求景을 했고 Bar에서 各國人들과 어울려서 춤도 추어보았다. Bar에서 日本人 建築家 2名을 만나 이야기를 걸었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어색한 語調로 「우리 좀 늦게왔더니 다 팔리고 相對가 없군요 부럽습니다」 하며 웃는다. 그런데 이 親旧들 꼭 시골뜨기 같고, 머-O하니 보고만 서 있었다. 大路邊에 있는 Live Show를 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三流劇場으로 生覺하면 된다. 木椅子에 四五十名의 觀客이 앉아 있고 照明을 怪常하게 해서 옆사람의 얼굴이 꼭 白臂같이 보이고 鏡정웃도 희게 보인다. 舞台만은 잘 보이게 되어 있다. 7·8場의 Show인데 처음엔 女子만의 完全裸體 춤이고 音樂에 따라 怪常한 몸짓을 한다. 漸漸 順序가 進行됨에 따라 妙技?가 演出된다. 幕이 내릴때마다 觀客들은 殿齋하게(?) 拍手를 친다. 우리 一行은 拍手를 보낼 生覺은 없고 도리혀 속으로 쿡쿡 웃고만 있었다. 最終幕은 男女俳優들의(이것도 俳優라고 할는지 모르겠다) 妙技百出의 實演으로 끝난다. 아낌없는 拍手와 譁采가 보내지고 演技者들은 鄭重히 人事까지 하고 退場한다.

最終幕이 끝나면 休息時間이 있고 또 그 順序가 되풀이되는데 2, 3회를 繼續 보는 끈질긴 觀客도 있다고 한다. 우리 一行은 上氣되어 시원한 大路로 뛰어 나왔다. 밤하늘에 秋夕달이 구름사이에 들락 날락한다. 집에서 子息놈이 祖上의 祭祀를 드리는 데 罪스러운 生覺에 달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Sex 八耗 映画는 商店마다 뒷房에 映寫機가 設置되어 있어 “필름”을 必要로하는 손님에게 直接 上映해 보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式이다. 德분에 편순님에 기대어서 여러篇의 映画를 求景했다.

우리는 “코펜하-겐”市的 地理를 잘 몰랐지만 到着하자 곧 “코펜하-겐”市庁에 電話를 해서 金屋文氏를 찾았다. 巴里에서 金氏의 電話와 職場을 알고 왔기에 連絡했더니 金氏는 너무도 반가워서 執務도 계쳐놓고 달려와서 다음날 아침까지 案内



和蘭의 튜립花園과 和蘭이끼씨

해 주며 같이 나뒀다. 참말로 고맙다. 金氏는 서울工大 建築科出身으로 “넌마크”國籍을 가지고 있으며 家庭도 市内에 있고 市庁都市計劃課長職에 있다고 한다. (서울市課長보다 格이 높음). 그의 말에 依하면 이나라엔 韓國人이 그리오지 않았는데 이처럼 새분이나 오셨으니 무척 반갑다고 하며 어쩔줄 몰라했다. 우리도 반가웠다. 밤 2時頃に 金氏의 提唱으로 中國집에 가서 秋夕밤을 東洋的으로 지내자고해서 中國飲食店에 갔다. 月餅이 있는데 中國語로 했더니 主人이 月餅을 어떻게 아느냐면서 묻기에 산이 나서 北京이야기와 中國에서의 秋夕 이야기를 했더니 껍새 놀란 얼굴로 當身은 中國人이나? 韓國人이나? 면서 弄談까지 한다. 참말로 즐거운 秋夕날 밤이었다. 내 언제 또 北歐에서 秋夕을 지낼 수 있을까?

夜間通禁이 없으니 旅行者들에게 便利하다. 아침 4時에 거리에 나와보니 “돈관”Girl Hunter 둘이 아직도 거리에 서성거리고 있다.

이나라엔 저 有名한 童話의 巨匠 “안데센”의 故鄉이다. 거리名이나 商店名에서 “안데센” 이란개 있고 公園엔 인자한 “안데센”의 銅像이 서 있고

周圍에 개구쟁이들이 놀고 있었다. 이 개구쟁이들도 다 “안넬센”童話を 어머니에게서나 冊에서 읽었으리라. 幸福한 兒童들이다. 그의 生家が 記念館으로 되어있다가에 물었드니 市外 언곳이라기에 잘 수가 없었다. 異常한 것은 좀 教養이 있어보이는 市民에게 “안넬센”을 물었드니 거이 모른다는 것이다. 原來 “넌마-크”엔 “안넬센”이란 이름이 너무도 흔한 모양이고 韓國의 金氏나 李氏格인 것이다. 街名이나 商店名의 “안넬센”은 童話의 “안넬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燈下不明 格으로 自己나라보다 外國人이 더 잘 알고 있는 일이 많은 것 같다. 古跡의 由來나 年代며 人名까지도 말이다. 例를들면 아메네市民이 “오나시스”나 “재키-女史”를 물랐고, Rome의 Hotel主人이 나보다도 Rome歷史를 알지못했고, Paris市民이 有名한 画家 “로-드래”이나 “렘부란드,” “로댕”을 물랐고 Paris에 오래 산 사람이 Maxim이나 Lido를 모르고 있는 것같이 우리나라도 그러하리라고 生覺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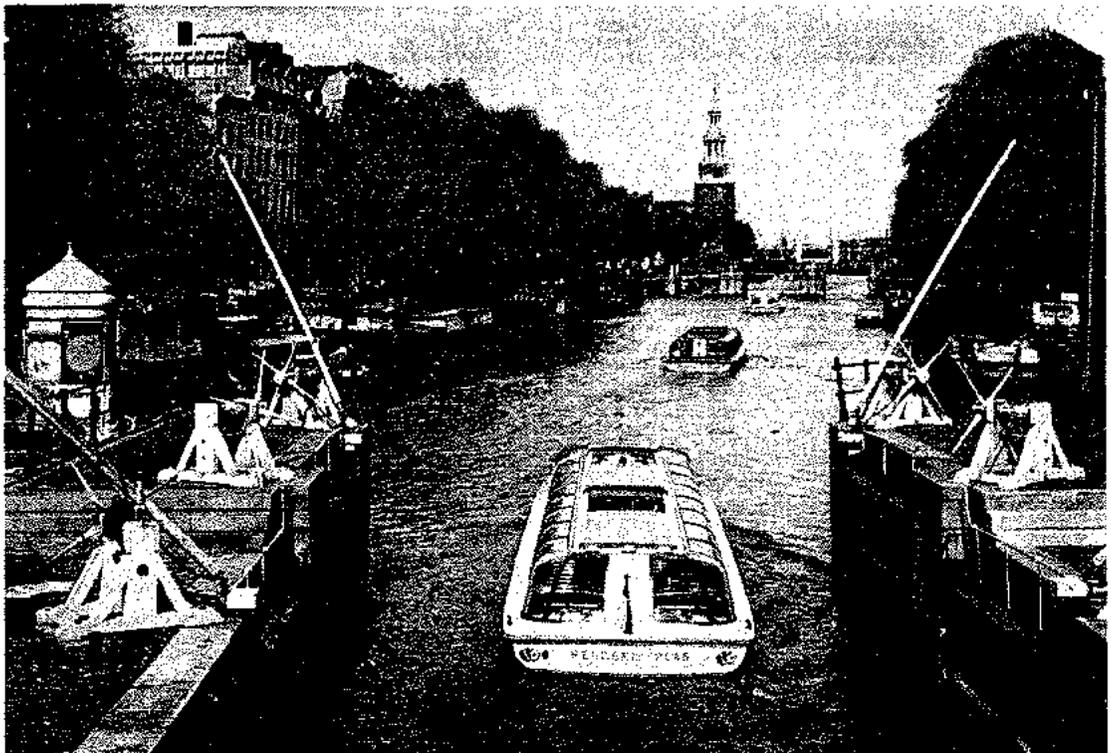
“넌마크”는 무엇보다도 國民健康이 優秀한 나라이다. 徒手体操(一名 넌마-크体操)는 有名하다. Olympic에서 入賞은 못해도 全國民의 水準이 높아 眞正한 体育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日政 時代의

라디오体操는 바로 이 넌마-크体操의 흥내라는 것이다. 우리 다음 旅程關係로 이 平和스러운 “넌마-크”를 다음날 9月23日 午前中에 떠나야만 했다. 더 머물고 싶은 아쉬움을 안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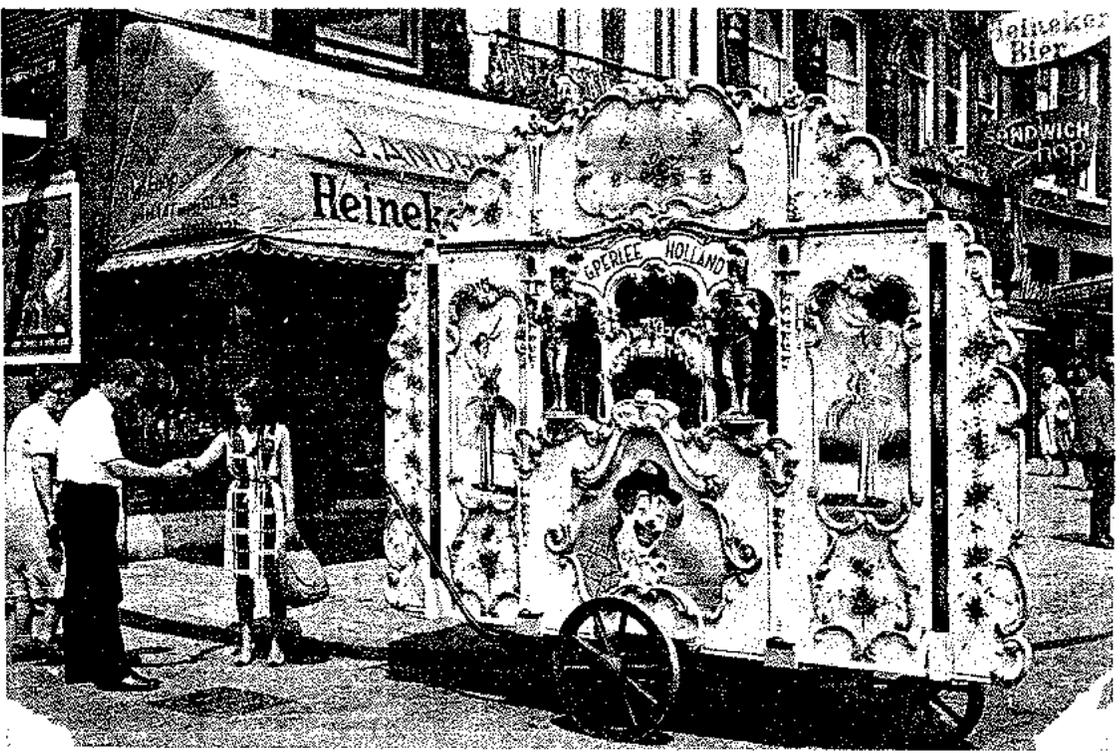
꼭게 개인 北歐의 아침 一行은 郊外의 아파트群을 휘돌아다보며 空港에 나가서 K. L. M. 機便으로 和蘭의 首都인 “암스텔담”으로 向했다. 可能하면 가까운 “뤼텔담”까지 가볼 생각이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암스텔담”空港에서 큰짐을 맡기고 총총히 市内로 Taxi를 잡아탔다. 空港에서 다음機便의 豫約을 確認하려고 하는데 空港職員이 異常한 눈초리로 우리一行을 훑어본다. 旅程에 韓國人인데 目的地가 共產國인 “불가리아”로 되어있으니 어찌된 일이나고 하기에 Meeting(國際會議)이란 것을 가르키며 入國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드니 安心하고 쉼을 건다. 처음엔 “게리라”인줄 알았다는것이 라면서 나를 가르키며 當身이 “게리라”라면 百名은 죽일것이라고 쉼을 걸기에 나는 꿈 「千名을 죽일 수 있다」라고 대꾸했드니 절절대고 웃는다. 우리 모두 소리내어 웃었다. 市内에 들어가선 于先點心食事を 하기로 했다.

和蘭은 本來 運河, 海運, 튜립꽃, 木靴, 女子



암스텔담市内 運河



암스텔담市內의 畜染車

服裝, 다이아몬드加工, 皮革加工, 船具, 堤防 등으로 유명한 나라이고 第二次大戰時엔 地下第二戰線의 根據地이기도 하다. 過去엔 海運國으로서 브르베오, 자바等地를 殖民地로도 가지고 있었다. 特히 Bauhaus運動 以前부터 유명한 建築家, 畫家가 많았다. 美術史나 文化史에선 重要な 位置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思想家와 詩人도 많이 排出시킨 나라이다. 나는 和蘭이 왜 藝術家나 思想家가 많이 나왔을까를 生覺해 보았다. 문득 오늘 아침 코펜하겐 空港에서 “스북호름”으로 떠나는 우리民俗藝術團을 만난 生覺을 되새기며 藝術이란그리 簡單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數많은 興件의 하나는 全國土의 아름다움이라고 느꼈다. 바다, 畝, 湖水, 運河, 氣候, 地理의 位置等인데 率直히 말해서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직접와서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都市임엔 정말 놀랐다. 이번 旅行中 가장 아름다웠던 都市를 말하라면 나는 서슴치 않고 “암스텔담”을 맨처음에 꼽겠고 “호노루루”와 “나포리” 맨 나중에 PARIS와 NEW YORK를 들겠다.

市內엔 運河가 四方八方으로 交叉되어 있다. 電車가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몹시 間暇해 보인다. 上下로 움직이는 다리가 到處에 있다. “고호”의그림이 联想되는 다리들이다. 風車가 있다. 이 風車는 “그리스”에도 “스페인”에도 있지만 和蘭의 風車는 大小 그 模樣이 純朴하고 아름답다. 港口엔 어마어마하게 큰 船舶들이 박 차있다. 世界第一의

SHELL石油會社의 本社가 埠頭에 서 있다. 조개 壳石油看板은 地球上 없는 곳이 없다. 보르네오油田, 사라와크油田과 쿠웨이트油田을 거이 独占하다시피하고 있는 이 會社建物は 우리나라 타워HOTEL같은 STYLE이다. 이런 光景은 果然 和蘭은 海運國이구나 라고 느껴진다.

술이 우거진 中央公園을 지날때 運轉手가 저 公園안에 世界各地에서 볼려온 히피族들이 二千名이나 있다고 한다. 한때는 五千名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海軍이 動員되어서 만나랴로 보였다고 하는데 왜 히피族들이 이 都市에 몰렸을까? 都市가 아름다워서인가? 陸海空의 交通이 便利해서인가? 그것은 和蘭國法에 乞人에게 食事を 提供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참말로 理解하기 어려운 法도 있는가보다. 乞人이 되면 놀고서도 먹고 살 수 있는 地球上의 唯一한 나라 和蘭! 仁慈한 나라여!

저 유명한 “안네의 日記”라는 小說의 舞台地 가 바로 和蘭이라고 나는 記憶하고 있다. 第2次大戰時의 地下戰線의 本據地임을 再認識하고 全國民의 抗戰意志를 알 수가 있었다. 「反逆者는 누구」라는 映畵의 이야기도 여기 和蘭이었다.

和蘭에서 빼 놓 수 없는 것이 튜립花園이고, 빵과 치즈이다. 치즈는 꼭 우리나라의 메주만큼씩한 것도 있는데 그 種類도 多樣하고 外皮를 벗겨서 먹게된 것도 있다. 튜립花는 너무도 유명한 그 나라 輸出高의 半을 차지한다고 들었다. 和蘭木靴는 우리나라의 옛날 나막신이다. 完全 통나무로작

은 신발인데 앞이 우리 버선과 같이 보죽하다. 現在는 實用은 시골에서나 많이 신고 있고 都市에선 거이가 觀光客의 記念品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거리의 大路엔 音樂車란게 있다. 옛날 씨-커스의 宜傳車 같은 것인데 꽃紋樣의 裝飾을 한 손수레에 各種樂器가 裝置되어있어 핸들을 돌리면 樂師없이 音樂이 흘러나온다. 繁華街엔 반드시 이런 車들이 있어 帽子를 벗어 들고 돈을 건는다. 現代都市에선 보기드문 光景이었으나 他意로나마 音樂을 들었으니 나도 銀錢을 던져주었다.

點心食事に 나온 빵은 評判대로 구수하고 맛이 있었다. 카이젤 수염에 셋빨간 비로-드 쪼끼를 입은 웨이타가 銀쟁반에 食事を 갖다주곤 鄭重히 절을 하고 간다. 우린 마치 貴族이나 된 氣分으로 으시매고 點心을 먹었다.

空港으로 가는길에 TAXI를 탔는데 運傳手가 아주 案内를 잘 해 주었다. 이親舊의 車가 寫眞찍기엔 安城맞춤으로 되어있어(天井에 開閉式 큰 窓이 있는)MR安은 아주 半身을 TAXI지붕위에 내놓고 서서 攝影機를 돌렸다. 무슨 映画移動攝影같다. 行人들이 새사람의 東洋人들이 히히덕거리며 車안에서 떠드는 것을 奇異하게 돌아보며 지나간다. 運傳手는 寫眞을 찍으면 徐行해주고 名所나 建物等을 旅行社 案内員보다 더 詳說明해주고 어떤 곳에선 停車해서 五分이나 十分程度 걸으면서 求景하라고하고 自己는 徐行으로 따라온다.



和蘭의 風車

埠頭가는 바람이 거세었고 景致도 훌륭했고 시원해서 下車해서 오래 걸어보았다. taxi는 빈車로 따라온다. 和蘭은 물의 나라이다. “암스텔담”이나 “룻델담”의 담의 意味는 堤坊의 뜻이다. 우린 空中에서 海岸의 긴 防波堤나 平野의 堤防을 많이 보았다. 風車나 運河, 긴 橋梁等 다 물에 關係되는 것들이다. 물은 이나라의 生活과 直結되어 있다. 따라서 海運이나 漁業이 發達되어있다. Olympic에서 勳트競技의 金메달은 和蘭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遠洋漁業의 始祖國이고 漁具나 船具는 和蘭製라면 다 알아주는 모양이다.



암스텔담 港口의 부두

세계에서 가장 긴 橋樑과 堤防은 和蘭에 있다고 한다. 造船業은 이 나라의 工業의 中軸을 이루고 있다 한다. 바다와 꽃과 구름이 아름다운 나라, 맛있는 빵과 치즈가 있는 나라. 純朴하고 아름다운 女人이 많은 나라. 思想家와 藝術家가 많은 나라인 和蘭! 나는 언젠가 다시 和蘭에 가보아야겠다고 生覺했다. 이날 午後 6 時에 出發, “벨기에”의 首都 “부뤼셀”에 K. L. M. 機便으로 到着한 것은 7 時였다. 空港에서 Air Terminal까지 汽車가 連結되어 있는 것도 色다른 것이었다. 마치 電車같은 汽車로 20分程度가서 Terminal에 달았다. 여기서 Hotel 予約을 하고 街路燈이 켜진 밤 거리를 Taxi로 갔더니 “조-지5世”란 特異한 이름의 Hotel이다. Hotel 이름치곤 어마어마한 이름이다. 主人이 또 傑作이었다. 오랫동안 “아푸리카”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Lobby서부터 食堂壁에까지 “아푸리카”土人들의 防牌며 櫥이며 假面, 土器 등으로 裝飾되어 있고 婦人도 土人이고 兒孩들도 半土人이다. 言語는 完全佛語인데 20才程度된 長男이 英語를 한다. “부뤼셀”市는 飲食이며, 言語며, 建物들이 完全히 佛蘭西 巴里의 一區域같은 印象이다. “벨기에”(白耳伊)는 佛蘭西의 連續이요 一部라고 하는 것이 適當할 것 같다.

1次大戰時는 “스위스”와 같이 永世中立國 이었다. 이웃 獨逸과 佛蘭西에겐 많은 구박을 받은 나라이다. 巴里의 張領事와의 電話連絡關係로 一行中 나만 Hotel에 남고 밤거리로 나가 버렸다. 나는 巴里大使館은 退勤했겠고해서 張領事집에 電話를 걸어서 明24日 午前中에 巴里에 가겠다고 連絡하고 疲倦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 우린 來日 아침 汽車로 巴里에 가기로 決定했다. 이것은 우리들의 一周飛行機票에 巴里를 떠났다가 다시 들리면 追加金이 約 100弗程度인데다가 出發時에 “부뤼셀”에 돌아와서 出發해야 한다는 까타로움이 있었고 이런 機會에 歐羅巴의 農村도 求景하고 國際列車의 經驗도 얻어볼 겸 汽車로 가기로 한 것이다.

나는 이 汽車旅行은 참 잘한 일이라고 至今도 生覺하고 있다. 人類文化의 中心地인 이 歐羅巴大平原을 汽車로 달린다는 것만으로도 興奮할만한 것이고 于先 여기선 國際列車가 “모스코바”도 “스페

인”, “스위스”도 갈 수 있는 票을 판다. 國境이 되는 駅에선 簡略한 調査가 있을 뿐이고 타고 있는 列車가 그냥 아무나라에나 通過해서 달린다. Monse라는 佛蘭西와 “벨기에”의 國境駅에서 警官 2名이 客室에 들어와서 旅券과 車票를 檢査보고 고맙다고하고 나가버린다. 이런式으로 國境을 通過하는 것이다. 汽車는 그駅에 5分도 停車 않고 普通駅에 着陸하듯이 하는 것뿐이다. “벨기에”의 시골風景은 참말 아름다웠다. 큰산이 없고 若干의 丘陵이 가끔있을뿐 그頂上에 農家가 모여서 마을을 形成하고 있다. 우리農村은 平野나 或은 山기슭에 散在해 있지만 歐羅巴의 모-든 農村은 언덕 위나 山의 頂上에 있다. 平野엔 숲과 耕作地로 利用하고 기슭과 中턱은 果樹園으로 利用하고 建物들은 거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덴마-크”나 “네델란드”, “西獨”의 農村들도 다 아름다웠지만 여기 “벨기에”의 農村은 우리들의 生覺치도 많은 곳이었고 그런 先入感도 없고 해서인지 부드러웠고 安定感을 주는 平和스러운 農村들이었다. 鐵道沿邊의 農家의 어린아이들이 손을 흔들어주었고, 繁朴한 늙은 農夫와 純朴한 中年農婦가 汽車를 向해 微笑를 보내주는 것도 氣分이 좋았다. 나는 精神없이 汽車타람에 걸터 서서 限 없이 展開되는 이 平和스런 風景에 넋을 잃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農村住宅에서의 作業空間



池 淳
(一洋綜合技術團)

目次

- I. 序論
- II. 學術的 理論
- III. 方法論
- IV. 分析과 解決
- V. 結論

I. 序論

지금까지 農村住宅과 都市住宅은 經濟性과 生活手段方法에서 상당한 距離를 갖고 왔으나 고속도로에 의한 交通時間의 단축과 現在 進行中인 새마을事業의 일환으로 인하여 점차 그 간격은 좁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農村住宅에 關한 많은 改善方案이 제시되어 조사, 분석, 검토, 종합되어 왔지만 確固한 方向이나 結論을 갖지 못한 채 계속 研究中인 것 같다.

이와같이 그동안 研究되어 온 農村住宅의 여러 통계 자료를 參考로 하여 農村住宅의 전반적인 問題點에 對한 合理的인 改良이 必要하나 여기에는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겠다. 또는 農村住宅의 주위환경의 改善은 농민의 經濟力의 향상과 그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겠다. 이러한 여러 問題點들이 解決되려면 많은 勞力과 오랜 時日이 要하므로 곧 실효를 거두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數次에 걸친 農村實態調査等을 通하여 資料를 取集하고 彙展시켜 再分析檢討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現生活空間內에서 개선이 可能하다고 생각되는 要素만을 선택해 보았다.

農村生活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作業空間中에서 부엌空間을 重點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즉 農村住宅의 余般的인 여러 問題를 다루기에 앞서 과도기적인 개선방안의 첫 시도로서 現生活환경의 研究와 모순점을 發見, 시정해 나가는 方向으로서 根本的인 問題는 많은 時日을 要하므로 우선 在來의 空間에서 다소 변형시켜 우리 농촌 여성들의 活動 비중이 가장 큰 부

엃의 개선에 主案을 가진 것이다.

또한 動線이 비능률적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해서 생기는 時間낭비와 이에 따르는 노동력의 과대소모를 조사하고 위생적인 면에서 住宅을 평가하여 現生活조건에 맞고 合理的이고 위생적인 農村부엌으로 개선해 보려고 한다.

II. 學術的 理論

주장공간과 작업공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動作의 범위와 에너지소모를 줄이므로써 이에 따라 時間의 절약도 된다고 본다. 能率的인 作業을 할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原理를 참고로 한다.

MORROW 씨의 動作經濟와 時間소모의 原理, MIZE 박사의 에너지 지수 計算公式(1, 2, 6) 및 여러 家庭學者들에 의해 研究되어 온 일대의 三角形原理 등이 그것들이다. MORROW 씨의 說을 요약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든 材料와 器具는 일하는 사람의 정규점유 구역내에 있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앞에 가능하면 가까이 놓여져야 한다.』함을 얘기하고 이 原理를 利用하여 선반, 찬장처리등을 하였을때 우리들의 팔을 무리없이 들어 수납할 수 있는 場所에 물건을 비치하면 그 한계를 벗어난 곳에 두고 使用할 때 보다 時間소모도 적고 에너지 소모량도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즉 바닥에서 145cm 정도의 높이를 基準으로 항상 사용하는 물건을 정리하면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處理할 수 있다는 얘기다.

MIZE 박사의 에너지지수 공식계산에 의하면 (1963年) 작업대위에 찬장이나 선반을 달아서 물건을 수납할 때 몸을 굽히지 않고 선채로 한 팔이나 두 팔을 올려 동작했을 때의 距離와 에너지 소모지수를 식으로 표시하였는데 이 때의 소모지수 $Y=57+1.5X$ 에 의해 거리에 따른 에너지소모 정도를 알 수 있다. Y는 에너지 소모지수이고 X는 바닥에서 부터의 거리 (inch)를 나타낸다. 몸을 굽히고 두 팔을 動作했을 때의 경우 즉 부뚜막이나 조리대에서 作業할 때의 그 작업대의 높이에 따른 에너지 소모지수는 $Y=141-38X$ 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업대의 三角形原理란 준비대, 조리대, 배선대등 작업대를 나열했을 경우 이들의 거리를 합하여 3m60cm는 넘어야 하고 6m이하이어야 한다는 原理이다. 위의 수치는 그동안 가정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수치이다.

III. 方法論

作業空間을 둘로 나누어 屋內 作業空間과 屋外 作業空間으로 하였다. 농촌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도시주택과 달라 그 어느 空間도 무시됨이 없이 서로 연결성이 있어야겠다.

즉 주거공간내에서만의 生活動線을 생각하여 작업공간을 형성한다면 농촌주택에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른다. 현 農村住居 環境이 너무나 원시적인 상태이므로 농촌주택을 급변시켜 現代化하면 오히려 생활적용 및 經濟的인 부담이 생겨 이에 따른 부작용이 유발될지도 모른다. 수 천년을 이어 내려온 생활습성을 改善하는 분지는 점차적인 제동과 개선방안 이해가 차츰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南部, 中部地方의 현실태를 재조사 검토한 후 중점적으로 부엌내의 作業動線關係, 식기 처리문제, 부엌내의 급수 배수문제, 환기 채광문제, 식품 연료처리 등을 다루었다.

實態調査는 1971년7월18일부터 7 일동안 全羅北道 옥주군 개정면 통사리에서 1971년8월5일 부터 4 일간 京畿道 화성군 팔탄면 서근리에서 각각 重農 40가구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주부와의 면담과 설문(양케이트)과 직접 우리가 實測

하는 등 그 내용으로서는

- ① 농촌주택의 평면도 및 배치도
- ② 각실의 배치 및 동선관계 측정
- ③ 농기구의 종류, 수량, 크기 실측
- ④ 농번기, 농한기의 주부들의 하루일과
- ⑤ 부엌그릇의 크기, 종류, 갯수측정 등 이었다.

IV. 分析과 그 解決

먼저 양케이트 實態調査에서 우리는 농촌주부들의 하루 일과를 알 수 있고 우리들이 實測한 결과 부엌의 그릇크기, 갯수, 종류와 부엌과의 屋內, 屋外 動線關係를 알 수 있다.

농촌주부들의 하루일과 分析에서 우리는 하루24 시간중 1/4이상인 6 시간 이상을 부엌내에서 作業을 해야 함에도 그 空間이 改善되지 않은채로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촌부엌의 식기조사라고 했지만 부엌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에 많이 저장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일상 쓰는 식기만이 질서없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아 그릇의 재정리 내지는 그릇의 집합 정리 공간이 필요해 진다. 부엌과의 動線關係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농촌주택의 動線關係가 능률적인 생활공간에 맞게끔 되어 있지가 않아 어느 한 空間에서 作業을 할 때에 소비되는 動線이며 에너지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 중 부엌내에서 시급히 改善되어져야 할 문제들을 나열해 본다.

부엌 空間

80家口를 중심으로 한 양케이트 실태조사로 부엌의 狀況을 대표할 수 있는 치수들은 다음과 같다.

- a) 갯수 (1개)
- b) 부엌일을 가끔 밖에서 한다. (30~40%)
- c) 평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 (농번기-2인 이상, 농한기-1인)
- d) 그릇의 배치 (찬장·광·선반) 무질서함.
- e) 부엌의 밝기 (어둡다)
- f) 식사 장소 (농번기-마루, 뜰, 방)
(농한기-마루, 방)

- g) 부엌외의 저장고 갯수(15개 : 광등)
- h) 식품고(현재의 광·수장공간)의 불편한 점 : 동선의 낭비, 쥐의 피해, 환기 불충분
- i) 부엌의 평균 평수(4.2평)
- j) 하루 24시간 중 부엌에서 소비하는 시간(6시간 이상)
- k) 부엌바닥(흙)
- l) 조리대(부뚜막 45-48cm)
- m) 부엌내에서의 동선관계

부뚜막↔찬장	2m	부뚜막↔부엌내연료광	3m
조리공간↔작사공간(마루)	3.5m	↔부엌외연료광	7m
조리공간↔배수공간	5~8m	조리대↔부엌내곡식고	8m

n) 부엌과의 動線關係

부엌↔우물	8.5m	부엌↔마루	3m
부엌↔안방	7m	↔대문	9m
↔전너방	8m	↔연료방	5m
↔장독	5m	↔화장실	22m
↔사랑방	9m	↔말래줄	10m
↔돼지우리	18m	↔곡식고	10m
↔외양간	16m	↔밭	20-500m

① 부뚜막, 다락

농촌부엌의 대부분이 안방의 난방(온돌) 문제로 作業하기에 불편한 부뚜막을 높일 수는 없다. 또한 부뚜막을 높임으로써 해서 다락과의 관계와 구들의 높이와 아궁이의 높이 관계도 생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부뚜막의 문제는 전체 構造的인 문제가 되어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부뚜막 대신 다른 부엌공간내에 작업대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② 부엌 바닥

우선 바닥材料로서 지금 대부분의 바닥이 흙으로 되어있어 매우 비위생적이다. 또한 부엌과 外部空間과의 隔高가 다르므로(높이 25~30cm) 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물론 동작경계의 손실과 시간소모를 줄여야겠다.

③ 給水, 排水

우물이나 펌프장이 약 8.5m나 떨어져 있어 급수, 배수가 모두 연구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 더우기 排水의 경우는 사용후 물을 앞마당에 버리거나 8m이상의 거리에 있는 형식적인 도랑으로 이어지는 곳에 버리게 되어 衛生上, 美觀上, 動線上에 매우 나쁘다고 생각된다.

④ 食品庫, 燃料庫

재래의 경우 食品과 燃料는 광이나 헛간에 무질서하게 처리되어있어 총해로부터 손실뿐만 아니라 비나 눈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 더우기 燃料는 부엌 바닥 한구석에 그냥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과 비위생적이며 항상 지저분하다.

⑤ 換氣, 採光

조사한 결과 농촌부엌의 採光, 換氣는 오로지 앞 出入門과 한쪽면의 루바창(발형대의 창)에만 의존해 있었다. 이는 환기 채광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겨울의 熱損失의 문제등도 있다.

⑥ 찬장, 선반

農作物 수확후 생기는 질마위로 연료의 개선은 어렵지만 燃料의 改善이 없는한 더우기 음식관리·그릇관리가 필요하다. 즉 취사시 난방시 그을음, 연기로부터의 위생적인 관리가 있어야겠고 쥐와 파리로부터의 침해문제도 생각되어야 한다.

그밖에 협소한 마루 공간의 기능적 처리며 수장공간, 작업공간등을 능률적으로 해결하여 보다 손쉽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처리를 해주며 각 방을 혹은 나이별로 구분하여 개인의 생활을 중요시 하여층이 시급히 요구된다.

V. 결론

앞의 調査한 자료의 分析에서 개선되어야 할 곳과 科學的 제시는 다음과 같다.

① 부뚜막·다락

재래의 부뚜막과 다락의 形態를 그대로 두고 부뚜막 옆공간을 이용하여 안방으로의 배선관계를 해결할 수 있겠다.

② 부엌 바닥

부뚜막의 아궁이 사용을 위한 공간만 그대로 두고 다른 평면은 집 마당의 평면과 같은 높이로 들구어 부엌밖에서 안으로 드나들 때의 불편함(층계받이)을 없애 에너지 소모를 절약한다.

③ 給水·排水

a) 電氣가 들어오는 地方

우물이나 펌프에 전동모터를 설치하여 수도꼭지를 부엌내에 설치하여 給水문제를 해결하고 배수는 옥내에서 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집밖 도랑까지도 배수관을 묻어준다.

b) 電氣가 들어오지 않는 地方

개수대옆에 큰독이나 플라스틱통을 묻어두고 물을 항상 저장하여 쓸데없는 동선의 낭비를 없앤다. 그후 전기가 들어오면 모터 설비를 하고 독이나 통은 곡식통(쌀통)으로 사용한다.

④ 食品庫, 燃料庫

設備에 비해 넓은 부엌을 가지고 있는 농촌부엌은 그 空間이 넓음으로 해서 더 저저분하고 動線의 낭비 내지는 에너지 낭비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조리대옆의 일정 空間을 食品庫(광과 다름)와 燃料庫으로 보다 능률적인 동선처리를 할 수 있겠다.

⑤ 換氣, 採光

개수대 위에 큰 창을 두어 (150×80cm) 전체의 採光·換氣를 해결하고 부뚜막 옆과 食品庫내에 高窓을 두어 (80×45cm) 換氣의 해결을 해보고 또한 안방과 부엌사이에 준비대를 유리로 칸막이를 하여 보다 밝은 부엌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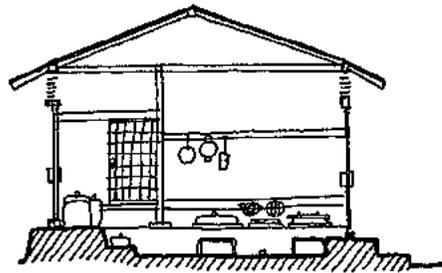
⑥ 선반·찬장

앞에서 전개한 바 있는 여러 原理를 이용하여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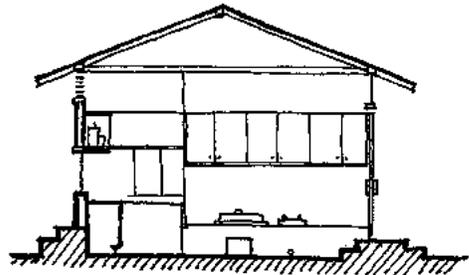
生的이고 편리한 作業空間이 되게 해 보았다.

調査한 바 있는 부엌그릇의 크기, 종류, 수량에 따른 찬장, 선반의 구조적인 면보다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선반의 위치·크기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여러 모순점을 하나하나 다루어 능률적이고 改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음의 配置를 構成해 보았다.



改造前



간단한 改造後

■ 참고 문헌

- 1) Sara Faulkner, Ray Faulkner, Inside Today's Hom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ton (1960, p. 583)
- 2) 농촌 주거공간의 실태조사 보고 : 부록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학술지, 1971, p. 90)

電氣溫突의 設計와 工事(2)

朴 錫 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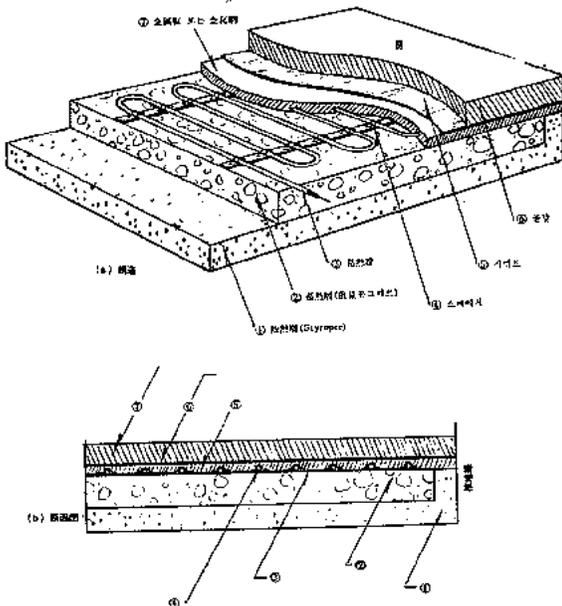
(韓國電力·技術開發担当)

5. 電氣溫突의 工事

5-1. 基礎 및 防濕層

電氣溫突을 施工함에 있어 우선 地面에서 地下 75cm程度의 깊이에 接地銅板이나 銅棒을 埋設하고 그림 5 와 같이 金屬板이나 金屬網에 接續할 수 있도록 屋側으로 1m程度 取하고 基礎콘크리트작업을 하여 평탄하게 한 다음 습기가 위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防水劑를 도포하고 斷熱層을 設置한다. (但, 습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을 경우는 防濕層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림 5) 電氣溫突의 構造



5-2 斷熱層

斷熱材로서 요즘 많이 使用하고 있는 발포 스티로폼이 工事하기 容易하고 斷熱効果도 좋아 電氣溫突工事에도 斷熱材로 使用하고 있다. 電氣溫突用으로 適合한 발포 스티로폼은 硬質이고 使用溫度가 80℃는 되어야 한다. 한편 熱效率 90%以上 維持하려면 5cm以上の 두께로 시설하고 相互接續部分에 틈이 없도록 밀착시키고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蓄熱層

蓄熱層의 設置目的은 電力料금이 싼 時間 (深夜料金)에 많은 熱을 蓄積해 두었다가 電力料금이 비쌀 때 (晝間) 使用하므로서 經濟적인 暖房을 하기 위한 것이다. 蓄熱層은 그림 5 와 같이 斷熱層 위에 重量콘크리트를 약 10~20cm程度로 한 다음 바닥을 평탄하게 하고 發熱線을 布設하게 된다(蓄熱層에 別도로 發熱線을 布設하는 二重配線方式은 그림-2 를 参照) 한편 蓄熱層이 必要 없을 경우는 斷熱層 위에 바로 發熱線을 布設하는가 또는 房이 急하게 식는 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斷熱層 위에 3~5cm 程度의 시멘트몰탈을 한 다음 發熱線을 布設하는 경우도 있다.

5-4 發熱層

發熱線을 布設하고 시멘트몰탈을 하는 과정에 金屬板이나 金屬網을 깔고 溫度調節器의 感溫部를 埋設하여야 한다. 約 3~5cm 두께의 시멘트몰탈을 하고 완전히 發熱層工事가 끝난 후 特別히 重要한 것은 시멘트몰탈이 36時間 程度 自然乾燥한 후에 通電하여야 한다. 만일 빨리 乾燥하기 爲하여 工

事後 즉시 通電하면 發熱線의 진동으로 發熱線이 完全히 密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어져 차후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發熱線을 布設함에 있어 韓國電力株式會社의 電氣溫突施設基準을 參考로 한 重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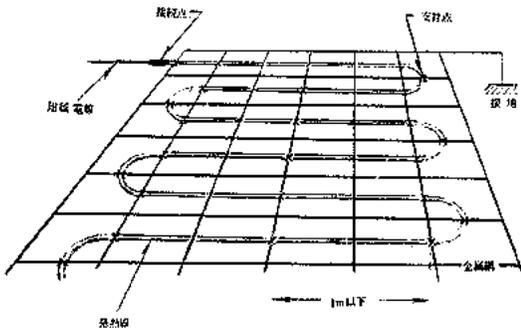
〈發熱線의 布設〉

(1) 發熱線은 형식승인을 얻은 것을 使用해야 하나 현재 關係法令이 制定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韓國電力의 低溫發熱線仕樣에 適合한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

(2) 發熱線의 相互 間격은 6cm以上이고 조영재와 의 距離는 5cm以上이어야 한다.

(3) 發熱線은 스페이서(Spacer) 또는 絶緣스테이플로 支持하고 支持點間의 距離는 1m以下로 한다. 한편 그림-6 과 같이 金屬網을 使用하여 支持할 수도 있다.

〈그림 6〉 金屬網을 利用한 發熱線 支持



(4) 다른 電氣工作物, 弱電流線, 水道管, 가스管 등과 接近 혹은 交叉하는 경우는 電氣的, 磁氣的, 熱的 障害를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發熱線의 上部에 金屬板이나 金屬網을 덮고 接地한다(接地抵抗 500Ω以下)

〈溫度調節器〉

(1) 溫度調節器의 感溫部는 房表面下 1.5cm 壁에서 50cm以上 떨어진 위치에 埋設한다. (溫度調節範圍 0~50℃)

(2) 溫度調節器의 리이드線은 金屬管 후락시블론 주이트 또는 경질 비닐관等に 넣어 施設한다.

(3) 溫度過昇防止器를 設置할 경우는 發熱線과 同一位置에 埋設하고 設定溫度는 50~70℃로 한다.

5-5 主要工程과 主資材

〈表6〉 電氣溫突施設 主要工程

속열식 단열배선	속열식 2중배선	비속열식
접지공(판) 시설	접지공(판) 시설	접지공(판) 시설
↓	↓	↓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	↓	↓
방습층 설치	방습층 설치	방습층 설치
↓	↓	↓
단열층 설치	단열층 설치	단열층 설치
↓	↓	↓
	시멘트 몰탈	
	↓	
	발열선 포설	
	↓	
	최로검사	
	↓	
	속열층 온도조절기 설치	
↓	↓	↓
속열층 설치	속열층 설치	시멘트 몰탈
↓	↓	↓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	발열선 포설
↓	↓	↓
발열선 포설	발열선	최로검사
↓	↓	↓
최로동작 검사	최로동작 확인	발열판 또는 철망설치
↓	↓	↓
발열판 또는 철망설치	발열판 또는 철망설치	발열판 또는 철망설치
↓	↓	↓
온도조절기 설치	온도조절기 설치	온도조절기 설치
↓	↓	↓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
↓	↓	↓
온도조절기 및 조작개폐기 결선	온도조절기 및 조작개폐기 결선	온도조절기 및 조작개폐기 결선
↓	↓	↓
준공 검사	준공 검사	준공 검사

電氣溫突을 施工할 때의 主要工程은 表 6 과 같고 電氣溫突用 主資材는 表 7과 같다.

(表7) 電氣溫突用 主要資材

資材名	設置位置	使用目的	規格	備考
漏電流保護器	配電盤	合線事故防止	200V 급	配電用遮斷器 카마나이프스위치
漏電遮斷器	"	漏電事故防止	200V 급動作電流 30mA ~動作時間 30mS	E. L. B
電磁開閉器	配電線 또는 室內壁 매전합	電氣回路的 自動開閉	200 V 급	溫度調節器와 병용
溫度調節器	感溫部는 房表面下 1.5 cm位置에 埋設調節器는 室內壁	房表面溫度調節回 路自動開閉	200V 급 溫度調節範圍 0~50℃	開閉容量이 不足할 때는 電磁開閉器와 병용
溫度過昇防止器	發熱線의 位置	過熱防止	設定溫度: 50~70℃	
發熱線	房表面下 3~5 cm (發熱層)	暖房(電熱利用)	200V 1.1kw(대한전선) 200V 1.5kw(금성전선)	耐熱性 絶緣被覆
金屬板 또는 網	發熱線上部	均一한 放熱 板의 경우 磁力線차폐	1 mm 정도의 두께	接地할 것
스티로폼(Styropor)	斷熱層	斷熱로 暖房效率向上	압축강도 3kg/cm ² 가열병형 온도 80℃	約 5 cm 두께

6. 經濟性 檢討

6-1 暖房燃料費 比較

暖房負荷가 坪當 500W인 3坪房의 경우 室溫 18℃를 維持하는데 있어 冬節期 各種燃料에 대한 月 平均 暖房費를 比較하면 表 8 과 같다.

6-2 斷熱材의 效果와 經濟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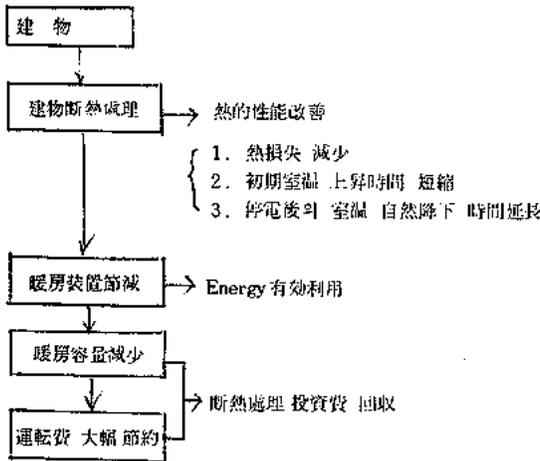
暖房容量은 建物の 構造에 따라 다르며 斷熱材의 使用에 따른 經濟性은 다음과 같다.

(表8) 月間 燃料費 比較

(정당 500W로 한 3명방 2개의 경우)

구분 연료명	단위열량	연료단가	중합 난방효율 (%)	연료단가 (원/100 kcal)	효율감안한 연료단가 (원/kcal 100)	등열기 난방열량 (kcal/원)	월간 난방비(원)		합계	비교	
							안방(하루 24시간사용시)	학생방(하루 12시간사용)			
연탄	20,250 kcal/개	20원/개	25	1.00	4.00	659,432	2,637 (0.52)	1,648 (0.52)	4,285 (0.52)		
경유	9,800 kcal/ℓ	20원/ℓ	35	2.65	7.57		4,991 (1)	3,119 (1)	3,110 (1)	보일러	
석유	8,030 kcal/ℓ	30.50원/ℓ	35	3.80	11.14	"	7,346 (1.47)	4,591 (1.27)	11,937 (1.47)	"	
LP Gas	11,500 kcal/kg	80원/kg	41	6.95	16.95	"	11,177 (2.24)	6,985 (2.24)	18,162 (2.24)	"	
전기	심야	860 kcal/kWh	5.75원/KWH	95	6.68	7.03	"	4,635 (0.92)	2,317 (0.74)	6,952 (0.85)	
	심야 주간	"	8.10 "	95	9.41	9.90	"	6,528 (1.30)	3,264 (1.04)	9,792 (1.20)	
	일반전력 (집)	"	10.45 "	95	12.15	12.75	"	8,407 (1.68)	4,203 (1.34)	12,610 (1.55)	
	세가정 (술)	"	7.47 "	95	8.68	9.13	"	6,020 (1.20)	3,010 (0.96)	9,030 (1.11)	
	세가정 (병)	"	6.90 "	95	8.02	8.44	"	5,565 (1.11)	2,782 (0.89)	8,347 (1.02)	"

(1) 断熱材(熱絶縁材)의 效果



(2) 經濟性

住宅을 断熱構造로 施設할시 非断熱構造보다 月間燃料費가 5,400원이나 節減되며 施設投資費 26,700원 정도는 節減되는 燃料費로 5個月이면 補償되어 實질 經濟的으로 有利하다. (表9 参照)

(表9) 經濟性 比較 (3坪房)

内 容	住宅構造	
	断 熱	非 断 熱
天 井	合板+断熱材+合板	合板+석고보드
壁	二重壁+断熱材+合板	二重壁
窓	二重窓(完全密閉)	
바 닥	断 熱 層	非 断 熱 層
暖 房 負 荷 (kcal/h)	上 向 熱	1,107
	下 向 熱	152
計	1,259	2,441
消費電力(KW)	1.46	2.83
月電氣使用量(KWH)	778	1,509
月間電氣料金(원)	5,811	11,267
断熱構造를 1로올때對比	1.00	1.93
断熱材施設費(원)		26,700

* 1. 冬季室溫 18℃ 維持 基準
2. 電氣料은 새가정(을) 적용(세금 포함)

7. 參考事項

(1) 電氣溫突(Floor Heating)은 一般住宅의 房 뿐만 아니라 사무실, 교회당, 강당, 학교교실, 식당, 병원등의 난방에도 적합하다.

(2) 電氣溫突에 適合한 住宅은 表-2의 A, B, C 級 程度의 断熱構造이어야 한다.

(3) 電氣溫突은 생리학적으로 봄 때 밤을 따뜻하게 하여 주기 때문에 평균 실온이 17~18℃程度가 되어도 라디에타방식때의 20℃室溫과 同等한 기분을 느낀다.

(4) 電氣溫突은 一般電力料金보다 훨씬 廉 電力料金(새家庭電力料金 “을” 또는 “병”)의 惠狀을 받는다. <끝>

새家庭電力料金の 種類와 料金

種類 區分	가정용 甲 (多消費家庭)	가정용 乙 (電氣은들)	가정용 丙 (全電化家庭)	
適用對象	한달에 150kwh以上 電氣를 쓰시는 家庭	電氣은들을 專 用으로 使用하 는 家庭用과 그 밖에 需用(例: 旅館, 病院等)	電氣은들, 電氣 調理器, 電氣溫 水器를 갖추고 한달에 400kwh 以上 電氣를 쓰 시는 가정	
電 氣 料 金	最低料金	150kwh까지 2,100원	① 여름철(5~10月) 없음 ② 겨울철(11~4月) 200kwh까지 2,400원	400kwh까지 4,400원
	電力量料金	150kwh초과분 kwh當 750원	① 여름철 kwh當 800원 ② 겨울철 200kwh초과분 kwh當 650원	400kwh초과분 kwh當 600원

1972年度 第九回 建築士資格試験問題

建設部 建築課 提供

〈二級〉

建築構造

고르기 문제

1. 콘크리트 블록(Block)을 쌓을 때 보강 와이어(Wire mesh)가 쓰이는 곳은?

- A. 수평줄눈
- B. 수직줄눈
- M. 8°U-블록(Block)
- G. 16°U-블록(Block)

2. 목구조에 관한 다음 중 잘못 된 것은?

- A. 2층 건축물의 요소에는 통채기둥을 설치한다.
- B. 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수평가새를 설치한다.
- M. 양식 지붕틀 보다 한식 지붕틀 쪽이 역학적 합리적이다.
- G. 토매는 기초에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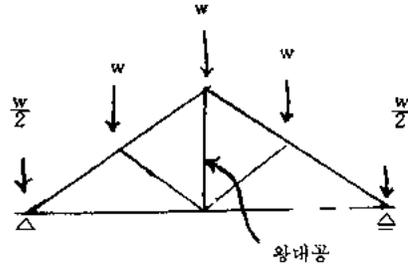
3. 다음 목조건물 부재중 1층 건물에 쓰이지 않는 부재는 어느 것인가?

- A. 밑둥잡이
- B. 갈도리
- M. 층도리
- G. 멍에

4.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기둥근처에 늑근(Stirrup)을 특히 많이 넣는 이유는?

- A.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 B. 보에 일어나는 휨 모우먼트에 저항하기 위하여
- M.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 G. 보에 일어나는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5. 다음 트러스에 있어서 왕대공의 성질은 다음 기술 중 어느 것에 해당 되는가?



- A. 인장재
- B. 압축재
- M. 전단재
- G. 응목재(應曲材)

6. 다음의 오물정화조에 대한 기술중 잘못 된 것은?

- A. 제 1 탱크는 클수목 좋다.
- B. 제 1 탱크에서 가장 많이 산화 된다.
- M. 오수 출구의 수위는 제 1 탱크 밑바닥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
- G. 벽체는 반드시 방수벽체라야 한다.

7.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구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A. 슬래브(SLAB)의 주근은 단변(短辺)에 배근한다.
- B. 보의 단부에는 주근을 하부에 많이 배근한다.
- M. 일체식 구조임으로 내진내풍적(耐震耐風的)이다.
- G. 철근과 콘크리트의 팽창계수는 거의 같다.

8. 왕대공 지붕틀에 대하여 다음 중에서 틀린것은 어느 것인가?
- A. 양식 지붕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 B. 지붕틀 간사이(Span)는 보통 10m 정도이다.
 - M. 평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인장 응력만을 받는다.
 - G. 평보를 이어 쓸때는 왕대공 부근에서 이어야 한다.
9. 사무소 건물에서 풀로어 힌지(Floor Hinge)와 가장 적절한 사용 개소는?
- A. 변소 출입구
 - B. 사무실 출입구
 - M. 현관 출입구
 - G. 차고 출입구
10. 생목(生木)이 건조하여 함수율이 적게되면 압축강도가 커진다. 강도가 커지기 시작하는 함수율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10%
 - B. 30%
 - M. 50%
 - G. 60%

11. 건축물의 외장도료(塗料)로서 가장 적당치 않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유성 페인트(oil paint)
 - B. 그레오소오트(Creosote oil)
 - M. 락카(Lacquer)
 - G. 니스(Varnish)
12.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한 다음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A. 골재의 성질에 의하여 수축량이 달라진다.
 - B. 시멘트(CEMENT)량의 다소에 의하여 수축량이 달라진다.
 - M. 알칼리(ALKALI)성 이므로 철근이 썩지 않는다.
 - G. 압축 강도의 증가에 따라 영계수(YOUNGS MODULUS)는 감소한다.
13. 석회 물과 혼합하여 공기중에서 경화하는데 다음 중에서 어느 작용을 받기 때문인가?
- A. 공기중의 탄산가스(GAS)
 - B. 공기 중의 산소
 - M. 공기중의 질소
 - G. 수증의 산소

14. 보통 포르트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의 제조원료로 쓰이지 않는 것은?
- A. 포조리스(Pozzolith)
 - B. 석고
 - M. 점토
 - G. 석회석
15. 아스팔트 방수층에 쓰이지 않는 것은?
- A. 펠트(Felt)
 - B. 루우핑(Roofing)
 - M. 마포(麻布)
 - G. 암면(岩綿)

주관식 문제

1. 목재의 방향에 따른 건조변형의 배소를 설명하라.
2. 건축의 기초를 기초판의 형식과 지정의 형식에 의하여 분류하고 간단히 설명하라.

施工

고르기 문제

1. 다음 입찰 순서중 맞는 것은?
 - a) 입찰봉지 d) 계약
 - b) 입찰 e) 현장설명
 - c) 낙찰 f) 개찰
 - A. a-b-c-d-e-f
 - B. a-b-e-f-c-d
 - M. a-e-b-f-c-d
 - G. a-e-c-b-f-d
2. 다음 시공 기계의 용법중에서 가장 적당치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A. 컴프레셔(Compressor)는 착암 또는 뽕칠등에 이용한다.
 - B. 스크레이퍼(Scraper)는 연질지반 정지용으로 쓴다.
 - M. 바차플랜트(Batcher plant)는 콘크리트 기초 탈목을 박는 것이다.
 - G. 슈미트 햄머(Schmidt hammer)는 굳은 콘크리트면의 강도측정용으로 쓰인다.

3. 벽돌쌓기 공사에 관한 사항중에서 맞지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A. 보통벽돌은 쌓기전에 반드시 물씻기를 하여 쓴다.
- B. 내화벽돌은 불축임을 하지 않고 쌓는다.
- M. 보통벽돌은 1 : 3 의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다.
- G. 내화벽돌은 1 : 5 의 회(灰) 모르타르로 쌓는다.

4. 속빈 콘크리트블록 쌓기에서 잘못된 기사는 어느 것인가?

- A. 블록은 살두께가 두꺼운 편을 밑으로 쌓는다.
- B. 쌓기 모르타르는 1 : 3 배합으로 한다.
- M. 1일 쌓기 높이는 1.2M~1.5M 정도로 한다.
- G. 철근 보강 쌓기는 통줄눈으로 할 수 있다.

5. 지붕공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A. 기와지붕의 물매가 지나치게 적을 때는 역풍으로 누수되기 쉽다.
- B. 기와지붕 물매가 $\frac{5}{10}$ 이상 급한 것은 기와가 밀려내리기 쉽다.
- M. 합석지붕은 무연탄 케이스에 칠해되기 쉽다.
- G. 해변에 있는 지붕에는 알루미늄판이 내구상(耐久上) 좋다.

6. 철근 조립순서중 맞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바닥철근-기둥철근-벽철근-보철근
- B. 기둥철근-벽철근-보철근-바닥철근
- M. 벽철근-기둥철근-바닥철근-보철근
- G. 기둥철근-벽철근-바닥철근-보철근

7. 다음 물질 중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시공시에 유해하지 않은 것은?

- A. 유산(硫酸)
- B. 식물성 기름
- M. 설탕
- G. 알칼리성 물질

8.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A. 철근 콘크리트보의 콘크리트 이어 붓기의 위치는 보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한다.
- B. 철근 콘크리트에 바브레이터(Vibrator) 를 사용할 때 철근에 진동을 주면 잘 다져지므로 효과적이다.
- M. 나무말뚝은 상수면 이하까지 박아야 한다.

G.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간격은 75cm 이상이어야 한다.

9. 목재 450 재(才)는 대략 몇 m^3 에 해당하는가?

- A. $1 m^3$
- B. $1.5 m^3$
- M. $2 m^3$
- G. $2.5 m^3$

10. 벽두께 0.5B 벽돌벽 $1m^2$ 를 쌓는데 소요되는 벽돌 장수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85장
- B. 80장
- M. 75장
- G. 65장

11. 철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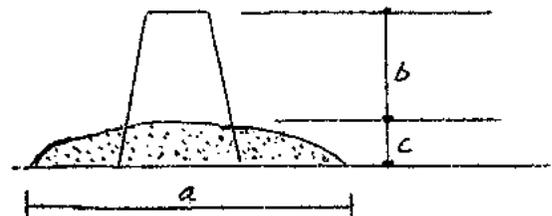
- A. 압축근 이음은 철근지름의 25배가 원칙이다.
- B. 이음 위치는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한다.
- M. 인장근 이음은 응력이 큰 곳에 두는것이 원칙이다.
- G. 인장근 이음은 철근지름의 50배가 원칙이다.

12.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양, 부(良, 否)를판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

- A. 침도(針度)
- B. 연화점(軟化點)
- M. 신도(伸度)
- G. 마모도(磨耗度)

13. 콘크리트 시험의 슬럼프 값(Slump 値)이란 다음 그림 중 어느 부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가?

- A. a 부분
- B. b 부분
- M. c 부분
- G. $\frac{a}{c}$



14. 시이트·파일(Sheet pile)이 쓰이는 공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A. 목공사
- B. 철근 콘크리트 공사

M. 토 공사

G. 창호공사

15. 표준형 콘크리트 블록(Concrete block) 조벽면 1m²에 소요되는 블록의 장수는 대략 몇 장 인가 ?

A. 9 장

B. 13장

M. 16장

G. 18장

주관식 문제

1. 레디 믹스트(ready-mixed) 콘크리트의 장단점을 설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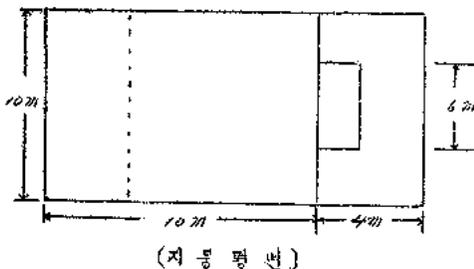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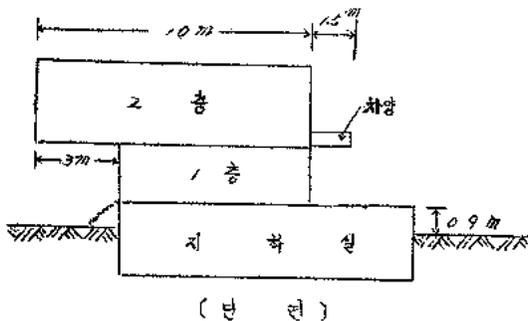
2. 미장공사에서 화 반쪽 바르기를 할 때 벽면에 잔금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공방법을 말하라.

建築法規

1. 다음 건축물의 건축면적 중 맞는 것은 다음 수치 중 어느 것인가?

A. 70 m² M. 100 m²

B. 73 m² G. 103m²



2. 바닥면적이 50m² 이상인 학교교실의 바닥높이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2.1m 이상

B. 2.7m 이상

M. 3.0m 이상

G. 3.5m 이상

3. 다음 공작물(工作物) 중 건축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높이 6m 를 넘는 골뚝

B. 높이 2m 를 넘는 옹벽 및 담

M. 높이 4m 를 넘는 기념탑

G. 높이 15m 를 넘는 깃(旗)대

4. 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코저 할 때 진북(眞北)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의 거리가 1M일 경우 그 건축물의 최고 높이의 한도는 어느 것인가?

A. 8 M

B. 9.5M

M. 10M

G. 11.5M

5. 녹지지역(綠地地域)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택

B. 운동장 시설에 부수되는 공중변소

M.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

G. 생산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장

6. 목구조 규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최하층 기둥밑에는 토대를 설치한다.

B. 2층 이상의 건축물의 모서리 기둥은 통채 기둥으로 한다.

M. 보의 중앙부근 하치에는 결손을 만들지 않는다.

G. 가새끝은 기둥보다는 췌가재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7. 조적조 규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조적조의 재료인 콘크리트 블록은 물로 씻어 쌓는다.

B. 쌓기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최소한 1:3 이상으로 한다.

M. 조적조벽 기초의 푸우팅(Footing)은 반드시 철근콘크리트의 1체식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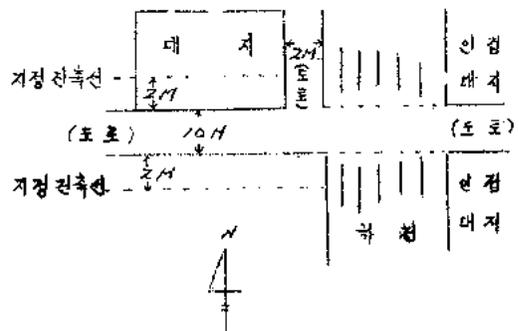
- G. 개구부와 개구부셋벽의 폭은 그 벽 두께의 2배 이상이다.
8. 벽의 높이와 길이가 각각 9m 인 벽돌조 3층 건물의 경우 각층의 벽의 두께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 A. 1층 30cm, 2층 20cm, 3층 20cm
 B. 1층 30cm, 2층 30cm, 3층 20cm
 M. 1층 40cm, 2층 30cm, 3층 20cm
 G. 1층 40cm, 2층 40cm, 3층 30cm
9. 다음에 기술한 것 중 건축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 A.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B.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M.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0. 다음에 기술한 것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A.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50c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B.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M. 노면(路面)으로부터 높이 3m 이상에 설치하는 창문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G. 노면으로부터 높이 3m 이하에 설치하는 창문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없다.
11. 공원 경역(境域) 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공원목 적에 맞지 않는 것은 다음 기술 중 어느 것인가?
- A. 공중변소
 B. 식물원
 M. 영화관
 G. 과학관
12. 건축법상 계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A. 국민학교의 아동용 계단의 단높이는 16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B. 옥의 계단의 폭은 5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M. 주택의 계단의 단높이는 2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G. 주택의 계단의 디딤바닥나비는 1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다음은 거실의 채광 면적이 크게 요구되는 것 부터 순서로 나열한 것인데 건축법상 적합한 것은?
- A. 국민학교 교실 → 중학교 교실 → 주택 거실
 B. 주택 거실 → 국민학교 교실 → 일반사무실
 M. 병원, 병실 → 여관숙박실 → 공장 작업실
 G. 고등학교 교실 → 기사차량실 → 일반사무실
14. 철근 콘크리트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 A. 원칙적으로 보 밑의 지주는 6주간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제거할 수 없다.
 B.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적어도 9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M.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동안은 물론부어넣은 후 5일간은 콘크리트의 온도가 0°C 보다 내려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G. 기둥의 소경(小徑)은 구조상 주요한 지점(支點)간의 거리의 $\frac{1}{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 다음 기술 중 건축법상 적합한 것은?
- A. 특수 건축물에는 수세식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재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M.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오물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다.
 G. 오물정화조는 만수(滿水)하여 24시간이상 누수 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식 문제

1. 방화구조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라.
 2. 다음과 같은 건축물 외벽의 각 도로측의 위치를 산출 표시하라.



建築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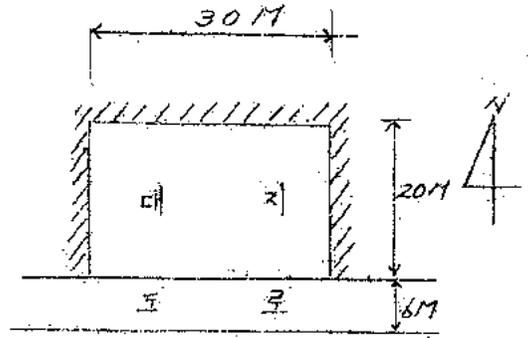
과제: 다음 조건에 의하여 새마을회관을 설계하라

- 가. 위치: 중부지방
- 나. 건물용도: 농어촌부락의 공공시설
- 다. 대지: 그림과 같은 평지
- 라. 건물면적: 130m²미만
- 마. 소요실 및 면적:

1. 집회실 (집회인원60명) - 40m²
2. 도서실 - 30m²
3. 관리실 - 임의
4. 변소 - 임의
5. 기타 필요한 시설 - 임의

※ 단, 소요실의 면적은 10%정도 증감할 수 있다.

- 바. 구조: 조적식 단층에 목조 트러스 슬레이트 지붕



사. 요구도면

1. 배치도: 축척 1/500
2. 평면도: 축척 1/500
3. 입면도: 축척 1/500 (2면)
4. 주단면 상세도: 축척 1/50
5. 실내마감표
6. 구조개요 설명서

※ 주의: 용어는 한글로 쓰고 치수는 mm단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協會記事

이사회

제27회 이사회

일시: 1972. 12. 20. 14:00

장소: 회의실

출석: 회장 강대웅, 이사 구윤회, 김지태, 안영배

보고사항

- 3 단계 설계 경기 운영위원 추천(송판식, 안영배, 한창진 회원)을 위원 위촉하고 가협회에 통보(12.8)
2. 각 위원회(5개위원회)위원 결정
(위원 명단은 26회 이사회 참조)
3. 제 2 회 사무장 회의 개최
(12. 11. 협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 현안 처리 문제 월조 요청과 기타 지시사항 전달)
4. 공사감리 요율 인상(안) 및 보수요율표 일 부 개정안 작성
(오용석, 안영배 이사와 건설부 건축과 실무진 과 심의중)
5. 국무총리 및 행정개혁 조사 위원회 방문
(건축행정에 관한 현안문제 현의차 회장 12. 13 국무 총리실 방문 요담)
6. 건축용어 우리말 쓰기 각시도지부에 공문 시 달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괄호 안에 영문이나 한 자를 써 넣도록 12, 14 각시도지부에 지시)
7. 임원취임 및 지부사무소 이전등기 변경완료
(12. 16)

부의사항

1. 지부 및 분소 간판 통일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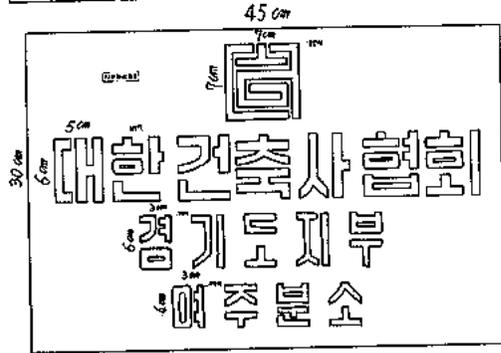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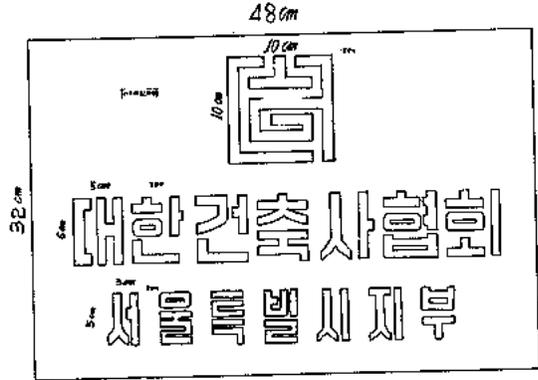
(규격: 지부 가로-48cm

세로-32cm

분소 가로-45cm

세로-30cm

색: 라왕 원색에 니스칠 해서 검은 글씨



2. 충북지부 영동 분소 폐쇄 및 옥천분소 승인신청의 건
(폐쇄와 동시에 승인할 것을 결의)
3. 경기지부 여주분소 승인 신청의 건
(승인할 것을 결의)
4. 3 단계 건축 설계 경기 운영위원회의 분담금 지출의 건
(법연구비로서 지불기로 결의)
5. 지부장 회의 일자 결정
(73년도에 개최할 것을 결의)
6. 기타사항
 - ① 3 단계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회장 이사 구윤회, 김지태 3 인을 선정)
 - ② 73년도 이사회 개최 일자
(매월 두번째 수요일 개최기로 결의)

제 1 회이사회

일시: 1973. 1. 10. 14:00

장소: 회의실

출석: 회장 강대웅, 이사 구윤회, 김지태, 안영배,

송판식, 오용석

참석: 감사 김원만

보고사항

1. 각 위원회 위원 위촉 공문 발송(72. 12. 27)
2. 각시도지부에 행정서식 배부(72. 12. 29)
3. 충북 영동 분소 폐쇄 및 옥천분소 설치 승인 공문 발송(72. 12. 30)
4. 경기도 여주분소 설치 승인 공문 발송(72. 12. 30)
5. 건축법 개정 공포(72. 12. 30)
(내용은 건축사 1월호 참조)
6. 국립건설 연구소로부터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 및 보완 소록 접수(1.8)
7. 개정 건축법 각시도 지부에 발송(1.9)
8. 72년도 12월호 회지 건축사 문화공보부 납본(72. 12. 30)
9. 72년도 12월호 회지 건축사 각시도지부 발송(1.4)

부의안건

1. 공사감리 규정 시안 심의
(담당야사가 수정 보완토록 결의)

事務所 移轉

- 安興東** (창일기술공사)
구의동 444-3 TEL. 55-1550
- 鄭德安** (대방건축)
울지로 3가 259 TEL. 27-5690
- 趙南守** (한국건설기술공사 조남수 연구실)
충구 다동113 (순창빌딩 301호) TEL. ...
- 林道生** (林建社)
鍾路 3가31 TEL. 75-2213
- 趙誠重** (주식회사 한도기술공사)
忠武路一街24-31 TEL. 28-2502
- 金正雄** (삼용건축설계사무소)
신문로 1가30 TEL. 72-8805
- 崔鼎錫** (원창건축연구소)
화곡동342~54 TEL. 62-9011
교 144
- 姜顯述** (동진 건축종합연구소)
구의동 101-12 TEL. 55-5220
- 이동환** (주식회사 한성기술개발공사)
당주동 167-1 TEL. 74-9343
- 金光漢** (대한건축설계공사)
신설동 96-15 TEL. 52-1269
- 鄭采龍** (풍진건축)
의주로 1가 138-1 TEL. 75-7987

會員動靜

서울市支部

新人會員

- 康應權** (서울 建築綜合研究所)
鍾路區 鍾路 2가9 TEL. 74-5571
- 裴紳鎬** (한영 건축공사)
中区茶洞 131 TEL. 22-6453

轉入會員

- 鄭得明** (有新建築設計事務所)
東大門區 新設洞 101의 7 TEL. 93-4181
(72. 12. 6. 釜山支部에서 轉入)(동화빌딩)
- 崔承國** (三政建築設備公社)
鍾路區 堅志洞 110-39 TEL. 75-4370

休業會員

- 金東杓** (광진건축연구소)
영등포구 노량진동 45-13 TEL. 68-0523
- 孫一鎬** (태명건축연구소)
서대문구 녹번동 144-65 TEL. 38-0808
- 金鎮成** (삼광건축연구소)
영등포동 2가 332 TEL. 62-3114



1월 4일 始務式 光景

協會動靜

本協會 始務式 舉行

癸丑年 새해 1월 4日 午前 10時 本協會 會議室에서 本部 任職員과 支部 任職員 合同始務式을 舉行了다. 이날 姜大雄 會長은 「...우리들의 職責과 使命이 얼마나 重大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自省해 보자」고 하면서 「...各自가 모두 維新의 主体意識을 돈독히 하며, 協會의 發展을 위해 더욱 團結하여 各自 맡은 義務에 創意力을 발휘하자」고 말했다.

새해 첫번 도서등록에 날인하는 姜大雄 會長



서울市支部

수신: 각회원

제목: 건축허가 사무이양 조정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사무이양에 대한 통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업무처리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및 건축허가 사무이양 시행중인 4층까지의 건축허가 및 2,000 m² 미만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위임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2. 금번 당시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영동지구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조성과 통일성 있는건축규제로 해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져 영동지구에 한하여 일체의 건축허가 사항은본청(건축과)에서 처리케 되었으니 업무 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3. 영동지구내 건축허가 사항은 일체 본청에서처리키로 되었으나, 기허 허가되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동건 준공까지 허가청에서 처리할 것.

本協會 서울市支部 西大門區 會員 一同 10月 維新 團合大會 開催 西大門區庁 會議室에서

本協會 서울市支部 西大門區 會員一同은 지난 1월 5日 (14:00~18:00) 西大門區庁 會議室에서 同支部 李圭福 支部長, 西大門區庁長 및 建築課 職員一同과 함께 10月 維新의 적극적인 지지 및 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各會員은 維新의 主体로서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 선서식을 거행한 후, 회원 친목회를 갖었다.

사진설명: 선서식의 光景





美國 第三世代的 建築家

벤자민 톰프슨 (Benjamin Thompson) 과 그의 作品

톰프슨은 1966年 自身の事務所를 開設 할때까지 20年間 TAC의 멤버로서 활약했다.

TAC는 The Architects Collaborative (建築家協同設計體)의 略字이며 윌터 그로피우스가 1946年 노만 후렛차(Norman Fletcher), 존 하이크네스(John Harkness), 로버트 맥미란(Robert McMillan), 루이스 맥미란(Louis McMillan), 벤자민 톰프슨(Benjamin Thompson) 등 8人의 팀워크로 구성했다. 이것은 그로피우스가 언제나 말하는 現代建築에 個性을 살린 팀워크가 重要하다고 하는 그의 概念을 實現시킨 것이다.

그로피우스는 建物の 規格化, 프리체브화의 다른 應用을 強調하고 팀워크로 建築을 만들어내는 것을 理想으로 하고 그 멤버는 全體的 設計와 자기가 참가한 역할과의 關係를 充分히 認識한 것으로서 이것을 社會의 知的總合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로피

우스는 建築家로서 偉大했지만 教育者 및 指導者로서도 그의 役割은 大端했으며 同時에 TAC에 있어서의 그의 위치는 굉장히 重要했다.

톰프슨의 建築論, 方法論은 그로피우스의 影響을 많이 받았으며 單純 明瞭한 古典의 均齊가 그의 特性이다. 그의 誠實性은 그의 作品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TAC에서 그가 담당했던 作品中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체이스·맨하탄銀行이나 브렌다이스大學 등은 1960年代에 完成한 것으로서 溫和하고 着實한 그의 設計方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톰프슨은 그의 建築哲學을 人間과의 選別性, 그 空間에 미치는 위치를 엔바이로넬탈(環境計劃)에 置重하고 個個의 建築에서부터 都市의 여러가지問題에 걸쳐서 環境에 關한 問題點을 究明하고 있다.

그는 그로피우스의 建築論을 發展시켜 鉄,

콘크리트, 유리 등의 대담한 使用과 同時에 이들 素材를 더욱 技巧의이고 主觀的考察方法으로 取扱하여 그의 認識을 明確히 하고 있다. 그의 建築物은 톰프슨의 人間性이나 情緒的인 心理에 많이 作用되어 知的이고 密度 높은 作品으로 創造되어 간다.

“윌리엄즈·칼리지”의 “그레이록”寄宿舍, “마운트 안보니 유니온” 高等學校, 그리고 “클리 칼리지” 등 톰프슨의 方向性과 建築概念은 明確히 浮어났고 그의 思考方法도 알아 볼 수 있다. 어우기 “에자인 리사치”에 의하여 明快한 그의 概念들을 前進시켜 現代의 外觀과 開放의 플랜닝의 手法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嚴格한 古典的 均齊는 잃지 않고 있다.

藝術은 我們을 生活의 一部이며 建築家는 現實世界가 그를 必要한 것처럼 이 現實世界를 必要로 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톰프슨의 態度와 一致한다.

우리들을 둘러싼 世界

喜悅과 人間的 感性에 充溢된 建築을 指向하면서

우리들은 오늘날 가장 (冷淡)한 時代에 살고 있다. 이 말은 個人的感情의 吐露라는 行為에 대해서 거의 國民全體的 規模로 蔓延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恐怖의 確證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저 (美)라고 불려오는 남아빠진 特質에 대해 품고있는 感情의 吐露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전까지 만해도 그렇진 않았다. 사람들은 강변과 민들레 풀날리는 들판을 거니는 것이 좋다가, 女子의 미칠듯한 사랑이 좋다고 인정하는데 어떠한 주저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感情의 吐露는 우리들의 영영이를 간지럽게 하는 일들처럼 되어버렸다. 우리들은 여름날 쾌청한 하늘을 보는 즐거움을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을까? 理論이란 생엄한 疇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不感의 世界에 밀쳐버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모든 지식은 (自己認識)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그 때문에 모든 感覺에 통하는 길이 열리고, 또 밝게 비추어 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노래하는 것도, 글씨를 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체, 이 점이 단려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복한 環境을 설계한다는 것이 可能하겠는가? 나는 오늘날 제일 먼저 묻지 않으면 안되는 質問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우리들에게 LSD없이 自由로워 질수 있을까?)

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可能하다고 믿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자신의 立脚點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출한다. (現在 보여지는 主觀과 客觀이란 정말 充溢한 것인가?)

(그것은 소위 內集團 때 group을 構成하고 있는 (우리들) 以上의 人間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問題를 일으킨 原因은 무엇인가? 그 惡化를 阻止하는 것은 우리들 책임이 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醜惡함)이 아주 중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모든 感覺經驗은 우리들에게 깊은 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推測만은 아니다. 科學者들은 최근에 이르러 藝術家들이 이미 以前부터 알고 있던 知識의 精確함을 立證했다. 그 知識이란 즉 (人間은 適應能力은 갖고있는 生物이며 그 適應의 方法의 하나는 自身을 無感覺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人生의 각종 痛楚적 사건에 있어 肉體와 感情에 관계되는 諸條件이 엄격한 것일 때, 그의 生存은 한가지로 그가 自身의 (感覺回路)의 部分閉鎖를 할 수 있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閉鎖가 된다면 有窮한 넷세지는 그의 感覺시스템을 切斷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와같은 閉鎖를 행한다면 同時に 自身의 潛在能力에도 단려져 버릴 것이다. 이와같은 狀態에 있는 人間은 말하자면 반쯤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은 狀態에 빠져 있다. 그들은 역시 自己周圍에 있는 主觀함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봄날 풀잎들이 솟아나는 것도 발견치 못하고 만다.

글을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먼저 諸感覺을 知性的 파트너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人生과 랜드스케이프를 스포일하는 諸禁制를 타파하고 그리고 8氣筒의 엔진을 全開해서 反應하는 것같이 사람들을 鼓舞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프로이트以來, 心理學이 크게 發展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生物學과 物理學과 教育의 分野에 있어서도 같은 大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大發展에 있어서 얻어지는 새로운 知識은 모두 하나의 事實을 보여준다. 즉 (人

間이란 諸事物의 中心에 위치하는 아주 複雜한 有機體다)라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関心の 중심은 外的世界의 인식에서 内的世界의 인식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옮김의 이동은 繪畵의 세계에 있어서 반세기 앞 부터 제창되었지만 오늘날 건축의 세계에서도 서서히 실행되어가고 있다.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人間的인 尺度》이다.

나의 定義에 따르면 《人間的인 尺度》란 우리들이 自身の 레벨에서 事物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關係된다. 슈파마켈의 가운데와, 고층빌딩 아래서, 우리들은 먼저 地上에서 — 즉 눈의 높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관계를 지닌다(나는 이와같은 關係가 最良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밟고 있는 大地의 感觸과 운과, 樹木, 花草, 窓, 표식판……. 우리들의 視覺이 即座해서 미치는 범위에 존재하는 것은 이와같은 事物이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視覺을 外側과 上方에 향하게 넓히고 자기들의 物理的인 解像力을 초월한 범위에 있는 사물에 관계지워진다. 人間的인 尺度라는 것은 일정한 寸法도, 永遠한 비율도, 整然한 보들도 아니다. 우리들은 疾走하는 車에 타서 地上을 달린다. 우리들은 에레베타와 비행기에 편승해서 上昇한다. 우리들은 變化하는 速度와 퍼스펙티브를 갖고 본다.

그러면서 宇宙時代에 이르렀다고 해도 人間的인 尺度 또는 단순한 尺度에 대한 考察이 必要하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활발하게 숨쉬는 都市街路는 空間과 形態, 데스우어, 色채, 素材 등에 관해서 人間的인 知覺作用에 합당한 尺度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可能性, 瞬間의 커뮤니케이션, 전보한 테크노로지, 平等的 權利, 중대된 레저, 人口爆發, 그리고 都市의 危機—이 들 많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提出한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建築의 세계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設計家들은 현재 多種多樣한 숫자와 복잡한 시스템과 新旧여러가지 素材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결은 建物이란 것의 意味에 대한 전혀 새로운 思考態度와 같이 올 수 있을 것이다.

建築家は 종이 위에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는 거기에서 숲과 벽돌과 鋼鉄, 새로운 建物과 낡은 建物, 바람과 太陽, 그리고 —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이 要素를 잊어버릴 수 없다—《사람들》과 직접 관계를 갖는다. 建築家의 設計는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공포, 고독감과 소속감, 혼란과 광휘, 타 과 결단 등에 의해 여러가지 調整을 받는다. 그는 그가 創造해내는 環境 가운데서 그 自身과 그의 知識을 투입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젊은 建築家は 기쁨이 물론 計算자와 뚫어지지 않는 中道精神을 갖고 學校의 제도실에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로 나아간다. 이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境으로 行動하기도 하고 反応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世界이다. 이들 사람들은 많은 迷宮과 欠點을 갖는다. 그 가운데서 특히 나쁜 것은, 그들은 設計審査官과 批評家가 神聖視 하는 《푸르포션》이라든가 《形態美》등 抽象的인 價値에 대해서도 그가 질려 걸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大都市를 건설할 때 뿐 아니라 가령 적은 一區區만을 建設한다할 때도 우리들은 먼저 設計에 임하기 전에 무언가 우리들의 人生에 있어서 價値를 反映시키는 것을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들 작업에 있어서 價値體系를 決定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建築家は 그의 건물에 아침 낮의 사이에 들어가는 陽光을 쫓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樹木과 변모해가는 季節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價値思考는 반드시 우리들의 設計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 때문에, 建築家は 한 사람의 藝術家—知覺力과 精神의 寬大함과 完全한 洞察力을 갖춘 人間—이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파인·아티스트》(畫家, 彫刻家같은)로서 활동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파인·아티스트》들은 이 세계를 自己의 個人的인 空想을 그리기 위한 백지의 캔버스로서 이용한다. 한편 建築이라는 것은 個人的인 스타일먼트임과 동시에 他人과의 協働이라는 行爲를 포함한 一種의 서비스業務이다. 建築이 갖는 두개의 양상

은 어느것이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들은 서로 배척한다. 그러면서도 相互 交流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 交流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

우리들은 현재 綜合大學이라든가 大企業과 같은 巨大한 公共組織을 갖인 時代에 살고 있다. 人口爆発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해서 <크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란 것이 성립될 수 있는가.

세실·B·테일과 P. T. 바남과 같은 사람들은 이 <크다는 것은 곧 좋은 것이다>란 思想을 신봉했다. 그래서 카테락은 지금도 그렇다. 자코메티와 같은 사람 이외에 도대체 누가 이 거대 수의 자들에 대해 反論을 제창할 수 있었는가? 자코메티는 空虛한 都市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表現하는 彫刻을 만들었다. 또 스스로 超大規模한 것을 創造해낸 사람들 외에 도대체 누가 이 새로운 超大規模의 帝國主義를 억제하는 힘을 갖었는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와같은 過度로 팽창된 社會에 있어서는 個個의 人間은 <휴머니티>의 觀念을 잃어버렸다. 그 때문에 建築家は 지금이야말로 <個人>의 觀念에 第一의 重要性을 주어 개개의 사람들을 단순한 統計上的 숫자 이외의 것으로 보고 <人間>을 그의 計劃의 中心에 끌어넣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들의 事務所는 어떤 빌딩의 90층에 있다.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우리들의 푸라이버서는 電話聲 소리에 비해서 침해된다. 過度의 커뮤니케이션, 過度의 可動性, 過度의 進歩는 우리들을 압도해 버린다. 우리들은 巨大한 시스템 가운데 휘말려 들어간다. 이 狀況을 도피해 보아도 다른 갈 곳이 없다. 우리들은 이와같은 狀況에서 우리 自身들 가운데 人間의 本性을 관기시킬 수 있을까? 이 같은 불음을 내는 것은 결코 過去로 향해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지금까지 가까이 왔던 우리들의 새로운 課題, 다음의 참다운 大課題— 즉 우리 自身의 가운데 있는 根源의 實力の 承認— 을 향해 前進하는 것이다. 최근 성행되는 腦의 研究는 많은 指導的인 教育家들이 學習에 있어서 感覺의 重要性에 대해 直觀的으로 얻은 知識의 精確함을 증명했다. 幼兒

들은 모두 物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과 입과 손과 코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作業學習이다. 이 학습에 있어서는 腦와 筋肉과 神經과 感覺器가— 正當하게도— 하나의 綜合시스템으로서 使用된다. 感覺은 腦의 進識의 元천이자 그 成長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知覺作用, 概念思考, 想像力, 이 둘 3개는 우리들이 視覺映像과 音과 향기와의 접촉을 잃은 때에는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나는 지금 <自然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을 옹호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擬案하는 것은 <自然으로 向해 나아가자— 우리들 內的인 自然의 理解와 우리들의 建築家로서 행하는 작업의 對象인 <사람들>의 內的인 自然의 實體에 向해 前進하자>는 것이다.

自然과의 接觸을 끊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內的인 實력과 力의 집중을 잃어버린, 그들의 本質的인 人間性을 상실할 위험에 빠져있다.

우리들의 外部에 있는 自然環境은 단 순히 우리들의 内部에 있어서 自己規定— 즉 거기에서 모든 知識이 생기는 어떤 自己認識— 을 상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自己認識을 상취하기 위해서 최초의 단계로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오직 보는 것— 증류된 抽象的인 言語情報 以外の 것에 대해서 눈을 使用하는 것을 배울 것— 이다. 그러나 그것만 으론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感覺으로서의 비전(즉 視覺)은 그것만을 시리 해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現狀으로는— 不幸히도— 이것은 單獨으로 훈련되어진다. <보는 것은 전문가>는 <知성과 言語의 전문가>와 같이 不完全하면서 有害한 존재로 변해 버렸다. 때문에 우리들이 다음 단계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必然的으로— 오직 選擇의이라고 민감하게 볼 수만은 없는— 共感的인 知를 증분히 보는 方法을 배워야하는 것이다.

끄레는 이러한 사고가 가능한 눈을 <생각하는 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불렀던 의미가 실체는 <知覺하는 눈>이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다. 이 《知覺하는 눈》은 하나의 情緒의 人 價值體系의 테두리 안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우리들이 諸感覺의 상호연락을 승인하고 우리들의 着想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그 때에는 우리들 教育은 다시 全的인 것이 될 것이다. 또 우리들은 보다 自由롭고 보다 熱烈에 찬 세계가 心底에서의 이해를 통해 事物을 보는 方法을 터득한 《사람들》에 의해 創造될 것이라고 期待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야말로 建築家에 의해서의 밝은 來來의 予想圖이다.

여기에서 《더 자이더와 建築家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論爭點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醜惡함이란 無感覺을 만들고 無感覺은 보다 一層의 추악함을 갖어오는 것인가? 現在의 退化傾向은 우리들의 直接의 역제력의 미치는 限界를 초월한 것일까? 우리들은 惡循環에 빠져 점차로 感受性을 감소시켜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여기서 再檢討해 볼 수는 없을까? 역시 무어라고 해도 คอมพิวเตอร์와 方法論과 새로운 테크노로지등의 客觀性에도 불구하고 제사물이 요하는 것은 지금도 역시 《人間》이기 때문에. 人間이야말로 建物이 계획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前提이다. 보다 좋은 세계를 위하여 어떠한 공헌을 하는 것이 좋을 까한다면 사람들은 단순한 統計集團으로서 보기도하고 서큐레이션의 圖式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만으론 불충분하다. 거기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 충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이 答을 探求하기 위해서 《마스타·플랜》의 종류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겨우 2,3의 《道路標識》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먼저 自己自身과 批評家를 위해서 설계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들이 세우는 建物에서 人生을 보내는 人間의 희열과 공포를 共感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理解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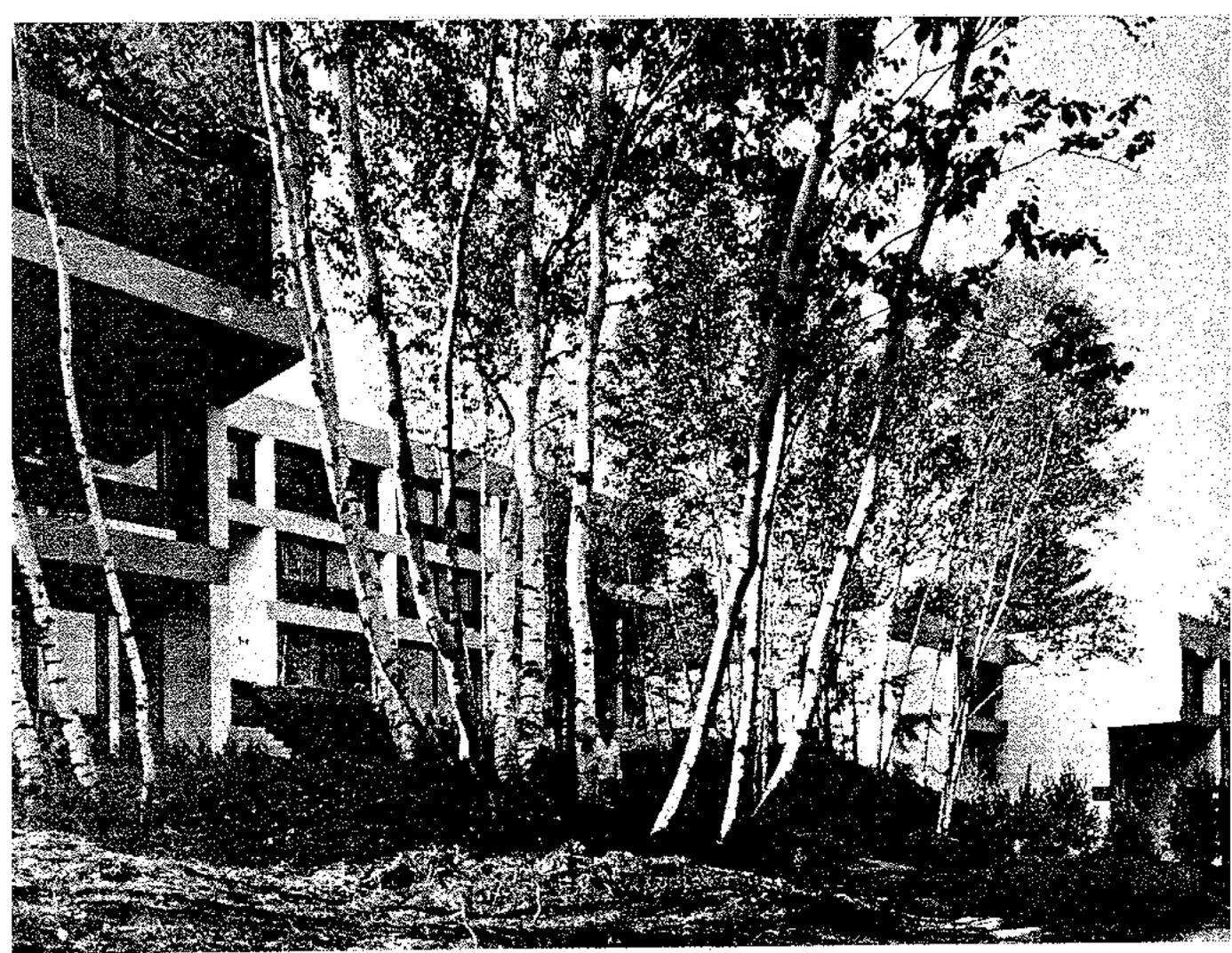
感情移入의 프로세스는 自己 인식의 프로세스와 같은 모양으로 本能的으로 수행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事物의 中心에 몸을 두고 発言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오는 새시대를 위하여 建築家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 크게 평가되어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 책임을 우리들 年輩한 시대가 아닌 活力에 찬 새로운 세계에 어울리는 정신으로서 짊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카리큘럼과 명명한 教育論과 教育 전문가의 偏見등에 의하지 않는 革新的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教育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알고있지 않은 것의 予測을 필요로 한다. 우리들은 또 未開의 文明을 연구하는 人類學에서도 여러가지를 배울 것이다. 이들의 未開文明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의 本質的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區別하는 方法을 가르쳐준다. 이와같은 研究는 建築家에게는 절대로 必要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안전한 既知의 의견을 초월해서 未來를 예측해서 설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자기들의 依頼人과 協力者들 尺度의 문제에 해결을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方法을 가진 작업으로 끌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전제 만들어지고 있는 설계도와 프로그램에 建物의 실제의 實現形態를 이해하는 것이 애매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三次元의 空間에서 살아가는 生活를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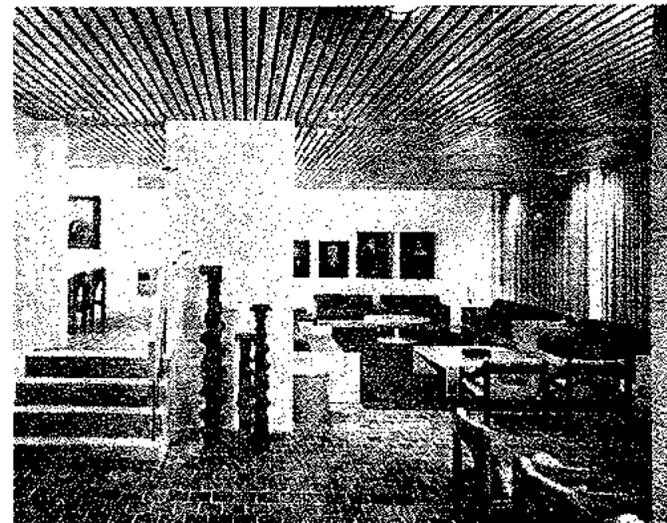
나는 《프로그램서브·워킹·모델》이란 것을 사용한다. 이것은 작은 사이즈의 것에서 커다란 사이즈의 것으로 점차 변해져간다. 이것을 보면 建築家도 콘실탄트도 실제 세워지는 建物을 선명하게 마음에 그린다. 진실은 새로운 작업 프로세스 가운데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 人間을 위해서만 아닌 — 종이人形을 위해서 종이 위의 프랜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依頼人과 設計者는 프로젝트의 發展에 끊임 없이 관계 지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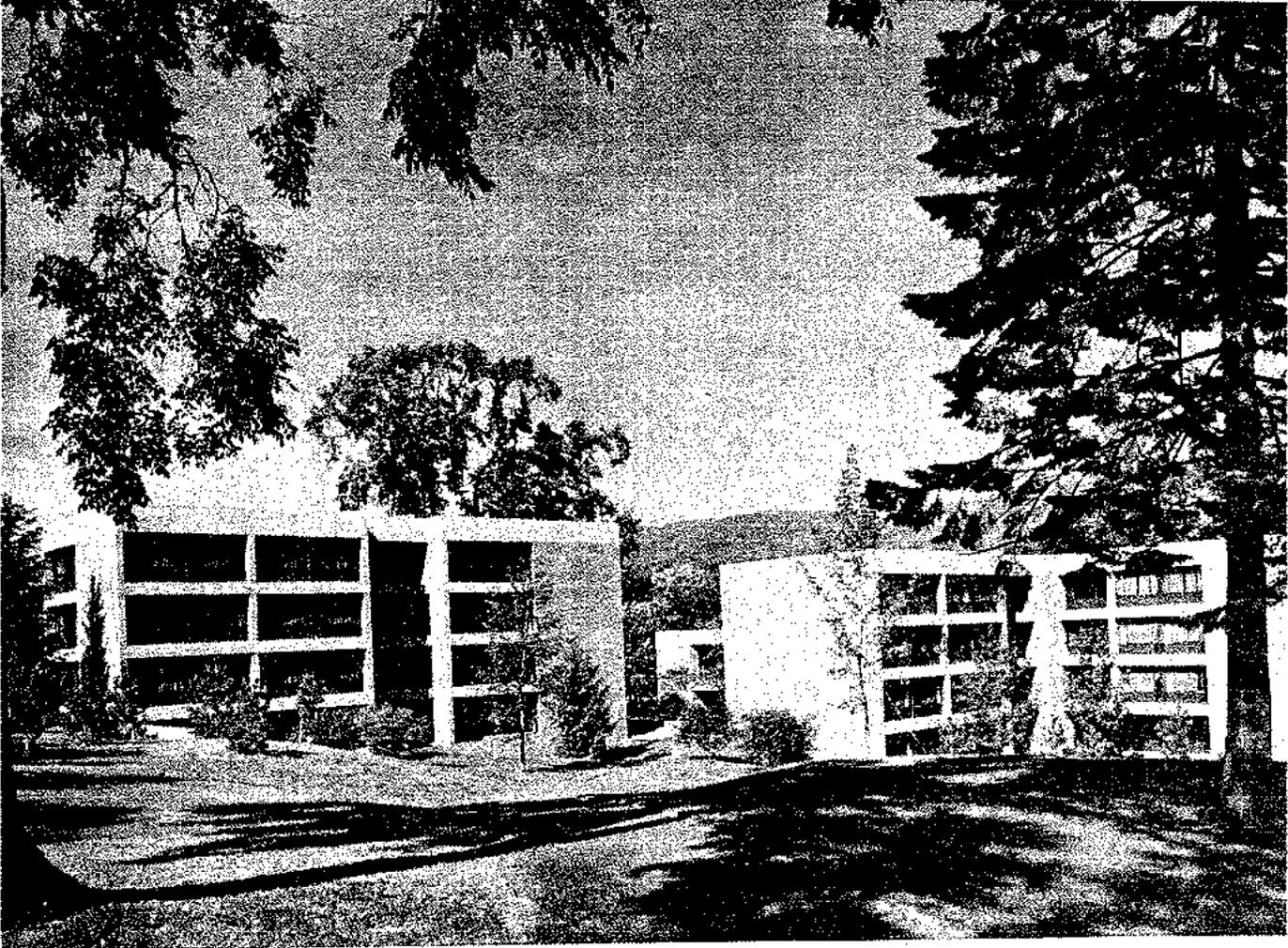
Benjamin Thompson
(吳光添 譯)



콜비 대학의 寄宿舎와 學生클럽
(COLBY COLLEGE, DORMITORIES
AND FRATERNITY)

建築家 벤자민 윌프슨





윌리엄大學의 그레이록 寄宿舍
(THE GREYLOCK RESIDENTIAL
HOUSES AT WILLIAM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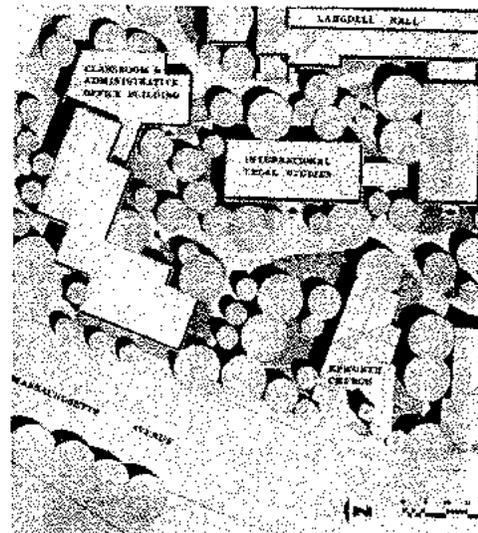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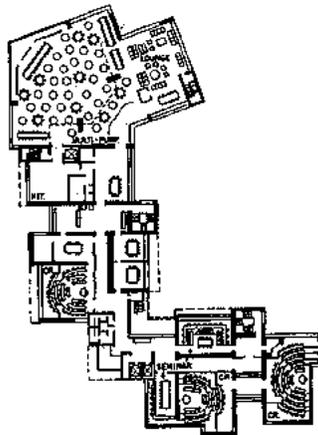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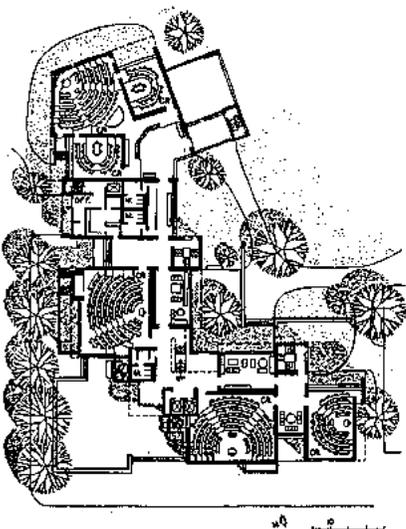
建築家 벤자민 토프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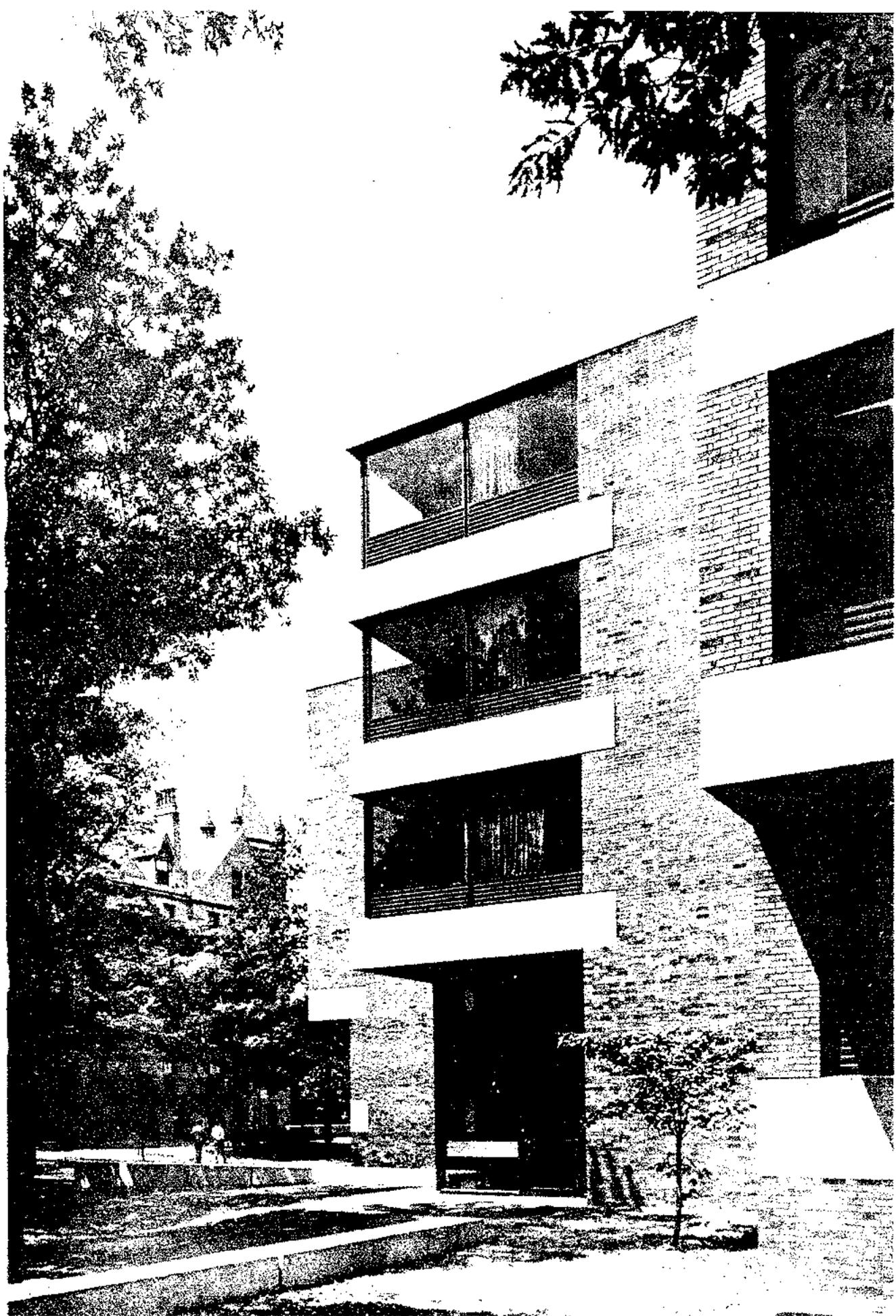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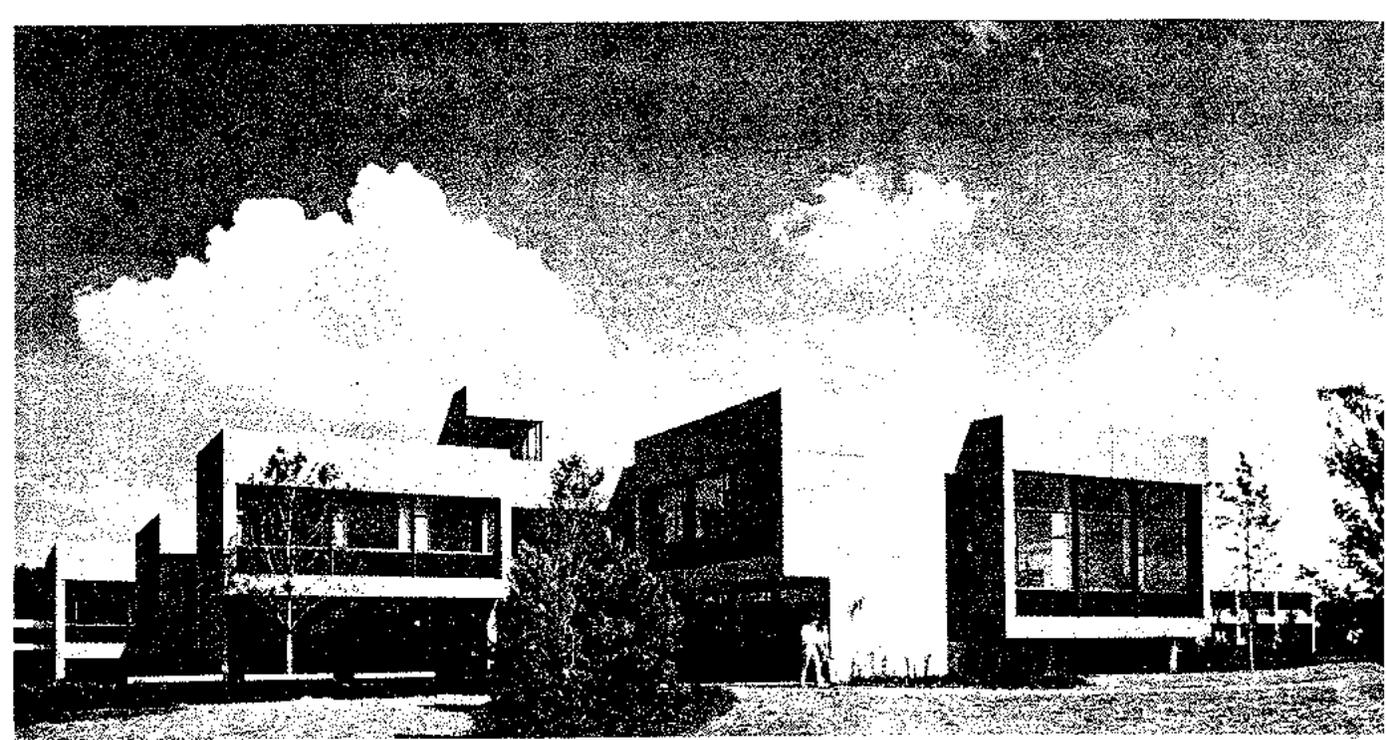


하바드大学 法学部—講義室과 研究室
 (HARVARD LAW SCHOOL,
 FAWLTY BUILDING AND CLASSROOM BUILDING)

建築家 벤자민 롬프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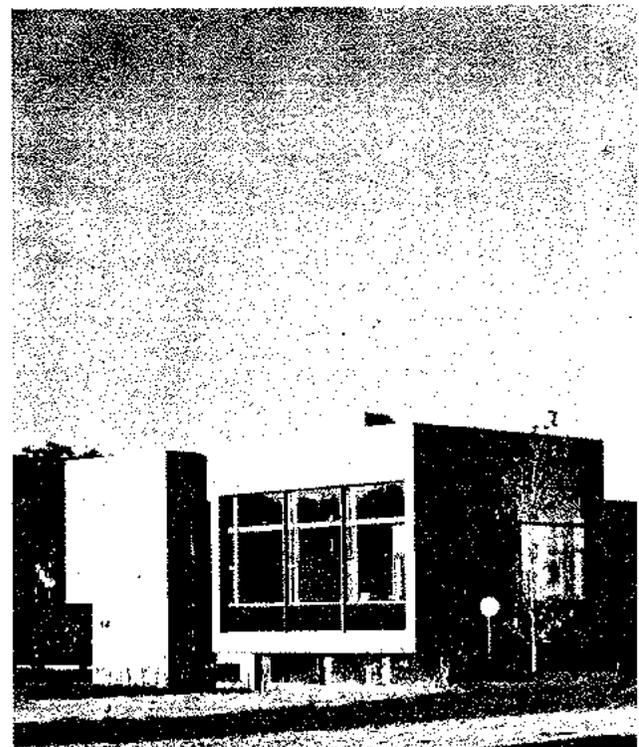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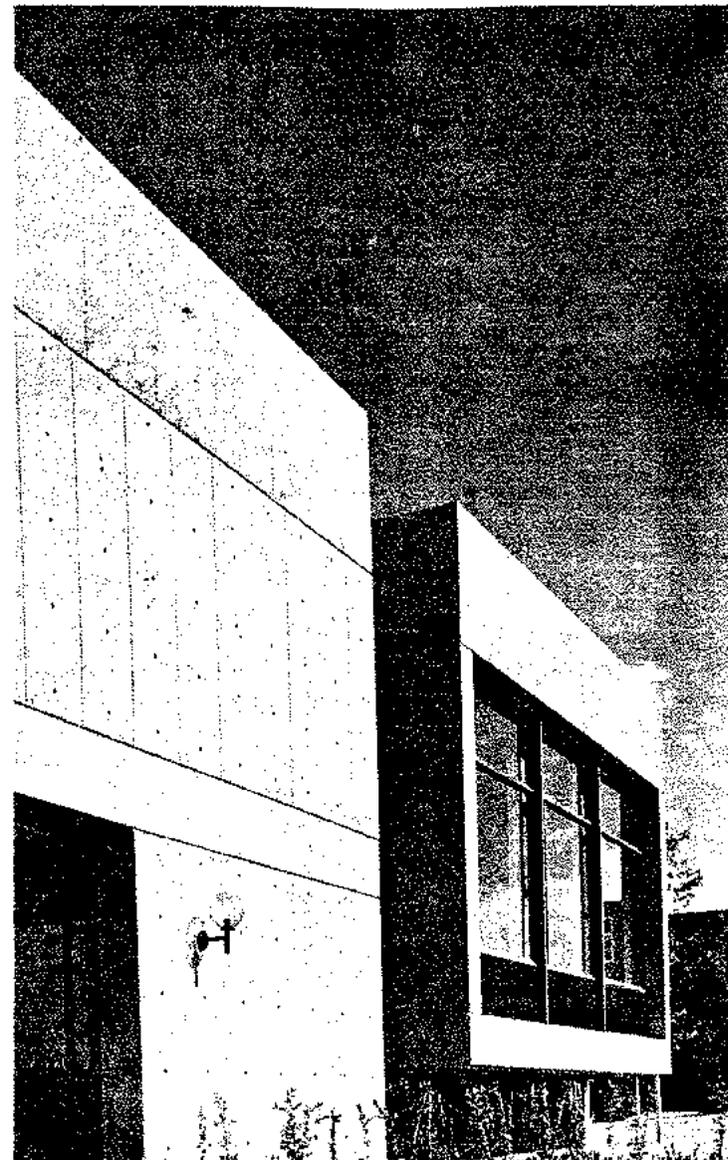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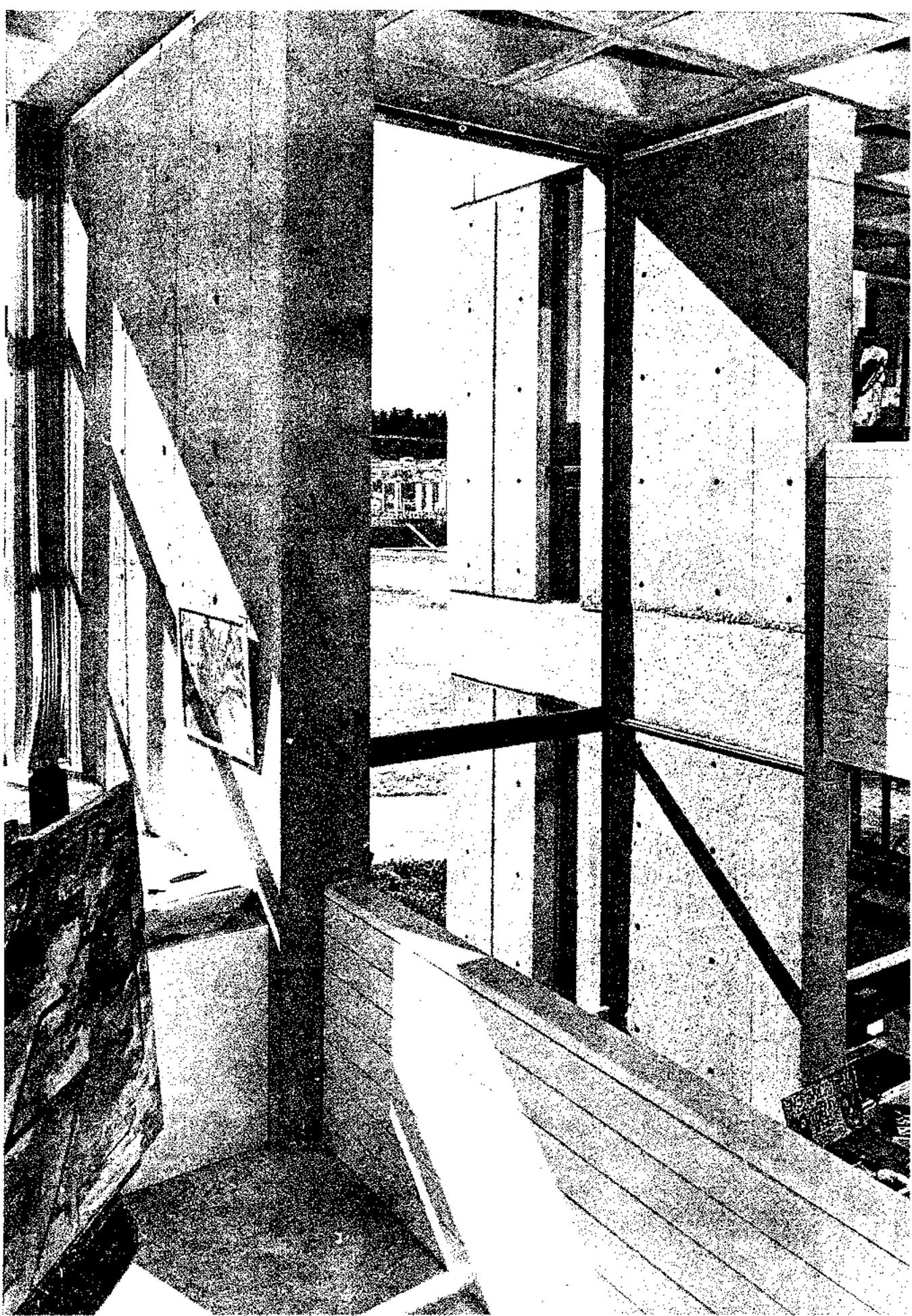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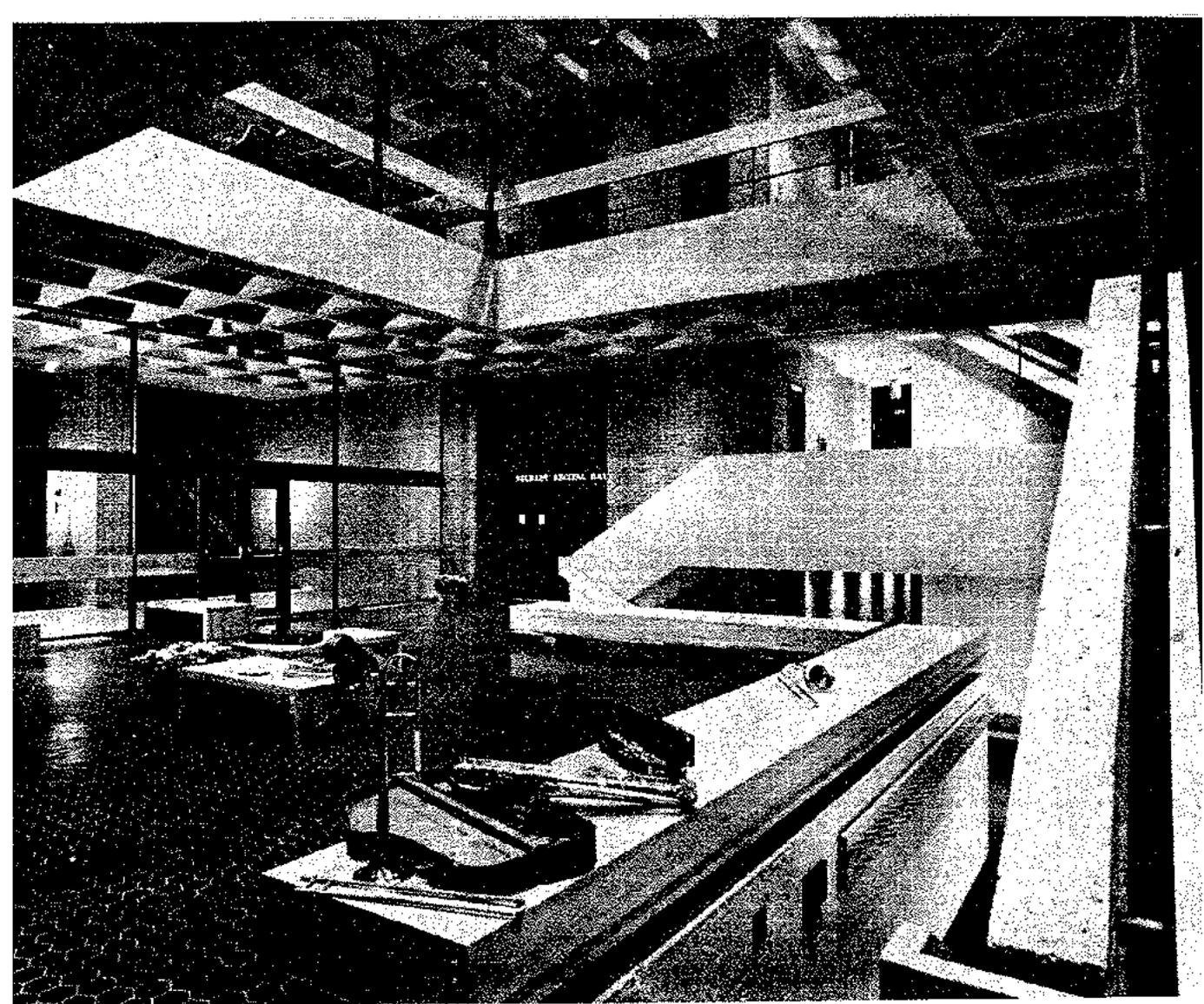


키크랜드大學
(KIRKLAND COLLEGE,
CLINTON, N. Y.)

建築家 벤자민 톰프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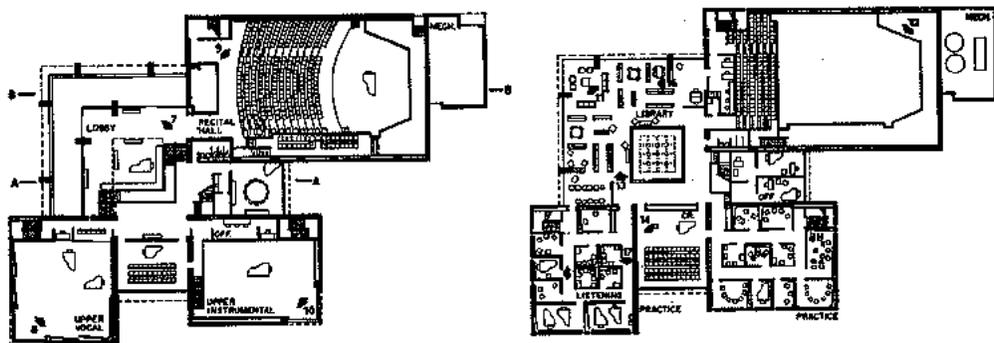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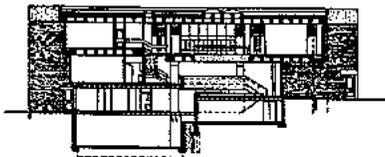




암허스트大學의 音樂教室
 (AMHERST COLLEGE'S MUSIC
 BUILDING MASSACHUSETTS)

建築家 벤자민 폼프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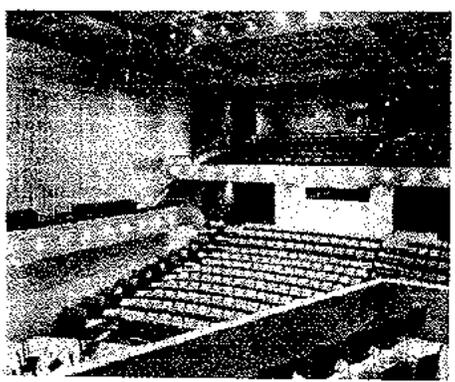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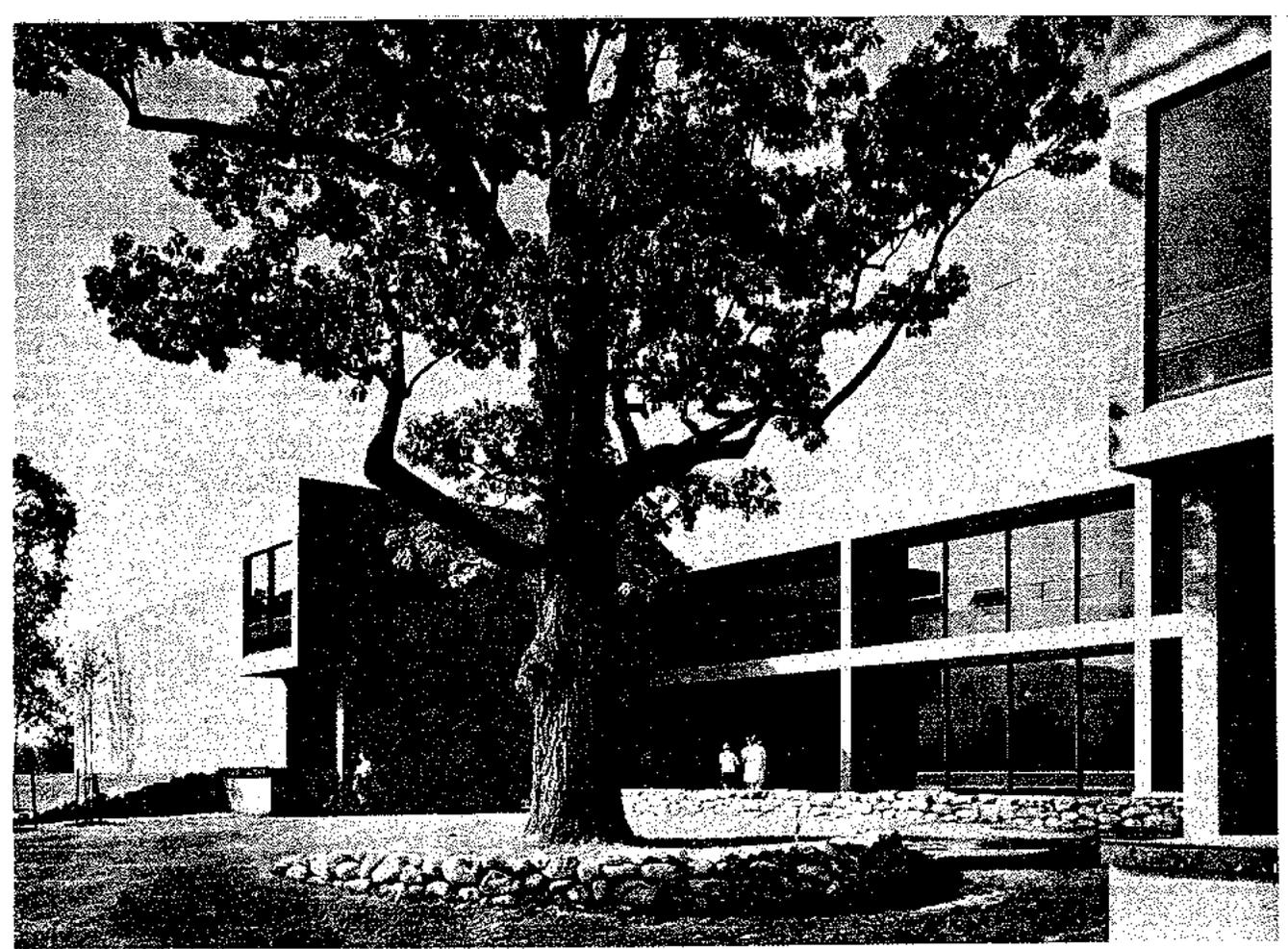


SECTION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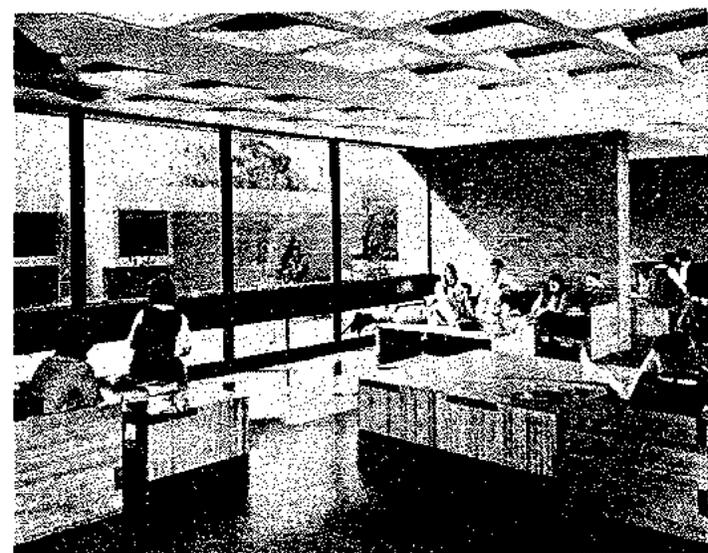
SECTION 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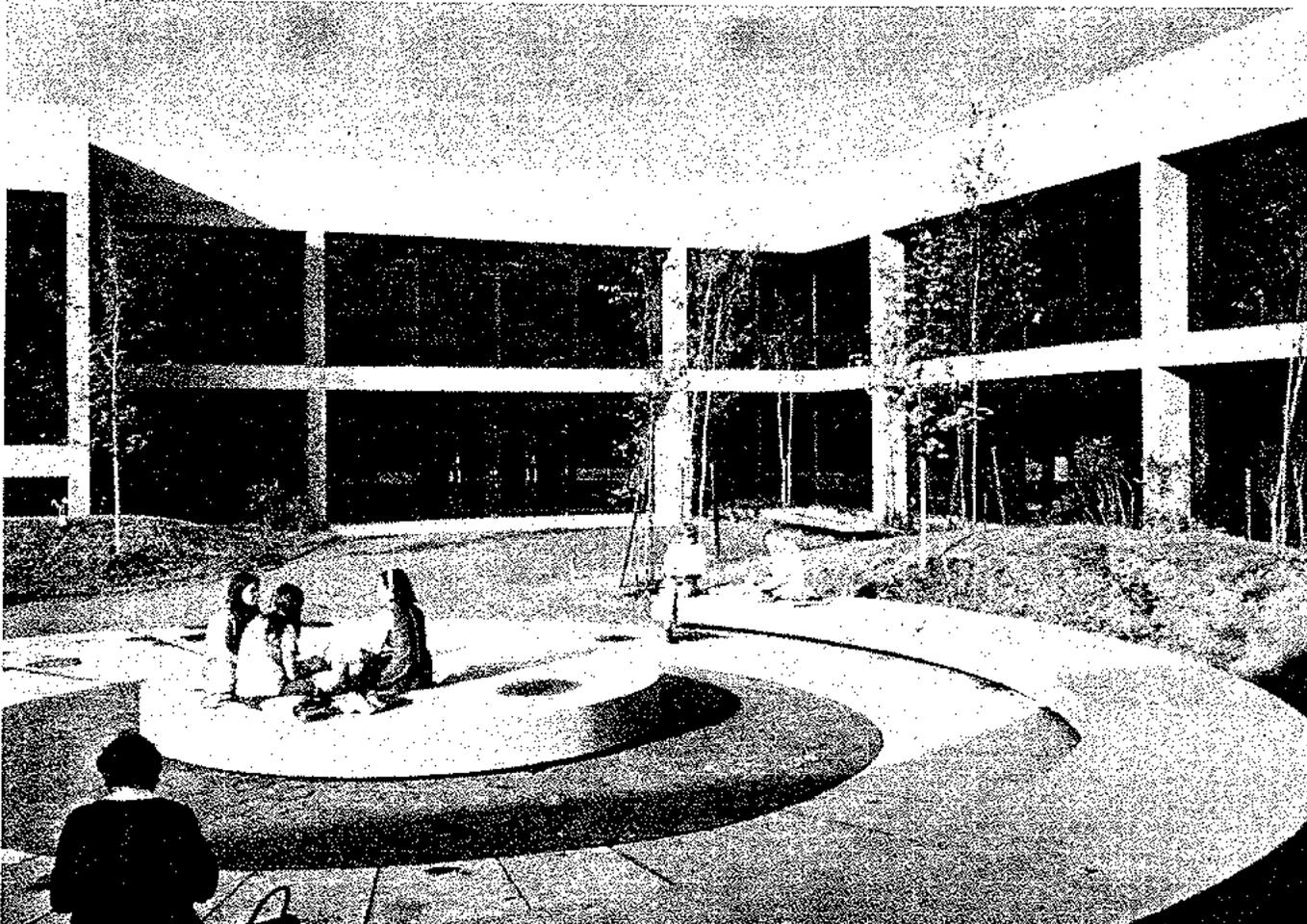




마운트·안토니·유니온 高等学校
(Mt. ANTHONY UNION HIGH SCHOOL,
BENNINGTON, VERMONT)

建築家 벤자민 톰프슨





建築界動靜

中央放送局 庁舎懸賞設計 入選作 発表

中央放送局에서 실시한 放送綜合庁舎 懸賞設計 公募에서 그 入選작이 지난 1月17日 아래와 같이 発表되었다.

아 래

1. 당선작: (없음)
2. 가작 1석: 2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7-3
홍도빌딩 202호
성명: 박 춘 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93
성명: 송 기 덕
3. 가작 2석: 1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72
성명: 장 증 울
4. 심사위원: 김근덕, 김태식, 김효경,
김희춘, 윤상욱, 홍봉희.
5. 작품전시: 1973년 1월 18~19일 10시~17시까지
동 방 송 국 스카이라운지

建築法 中 改正法律 公布

政府는 違法建築物의 發生을 없애고 高層建築物에 對한 防災對策과 都市美觀의 確保 및 市街地의 過密化現狀을 防止하는 것 등을 骨子로 한 建築法中 改正 法律을 非常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法律 第 2434號로 72年 12月 30日자로 公布했다.

이번 改正된 重要骨子는 違法建築物의 止陽, 高層建築物의 防災對策, 都市美觀確保, 工事中間 檢査制 신설, 監理者에 對한 報告責任, 違法建築에 對한 施工者와 設計者에 對한 雙罰制, 特殊建築物의 範圍擴大, 無免許者의 施工은 建築主도 處罰, 31m 超過建築物에는 非常用 乘降機 設置와 不燃材使用 義務化 등이 骨子로 되어 있다.

小公洞, 南大門路, 乙支路入口 等 8個地區에 建築制限 緩和

서울市는 지난 1月6日 第一種 美觀地區로 指定되었던 小公洞全城, 南大門路, 乙支路入口 等 8個地區에 第二種 美觀地區로 變更코, 지금까지 5層以上 建物만 지을 수 있게 制限했던 것을 3層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高度를 緩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第二種 美觀地區에는 3層以上, 道路에 接한 1間의 길이 12m, 너비 6m이면 建築할 수 있게 되었다.

大韓土木學會 創立 20週年 紀念式 南山 드라마센터에서 開催

大韓土木學會에서는 지난 1月27日 同學會의 創立 20週年을 맞아, 南山 드라마센터에서 紀念式과 아울러 同學會 發展에 有功한 人士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는 한편 下午엔 KAL 호텔 26층에서 自祝宴도 베풀었다.

輸出指定業체에 限해

그린벨트內 工場增築 許用

政府는 80年代 輸出 1백억달러 달성을 위한 輸出産業의 지원책의 하나로 그린벨트內의 建築制限을 완화하여, 輸出指定業체의 工場增築을 許用키로 했는데 工場增築은 그린벨트 指定 당시 商工部 等 關係當局이 認定한 수출지정산업의 기존공장 增築만을 許用하고 新規建築은 계속 금지한다 고 한다.

各種 建築 1年前보다 10.8% 減少

建設部가 1月16日 集計한 各種 建築面積은 작년 11月末 現在 작년 同期에 비해서 10.8%나 減少되었다.

(9백 7만 4천㎡ → 8백 9만 5천㎡)

用途別	(71.11月末現在)	(72.11月末現在)	%
工業用	1백 1만 9천㎡	1백 32만㎡	29.5(+)
住居用	5백 34만 7천㎡	4백 37만 2천㎡	18.2(-)
商業用	1백 68만 2천㎡	1백 40만 2천㎡	16.7(-)
文教·社會·其他	1백 2만 6천㎡	1백 1만 1천㎡	2.4(-)

서울市民會館 地下2 地上10層으로 8월에 着工

서울市는 작년 12月 2日 火災로 잃은 市民會館 再建計劃을 確定했다.

이 計劃에 依하면 총부지 2,856坪, 地上面積 2,400坪, 延建坪 1萬坪의 地下 2層, 地上 8~10層 鐵筋, 鐵骨콘크리트組 建物로서 오는 8月경에 着工해서 75年 7월에 完工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市는 이를 위해 이달안에 基本設計를 懸賞金 6百萬원을 걸고 公募하며 채택된 것에 設計用役費로 5千萬원을 들인다고 한다.

住居地域을 二種으로 統制

서울市는 市街地 全域을 機能別로 순화 시키기 위해 기존 市街地 住居地域을 住居專用地域과 準住居地域으로 区分, 指定할 計劃이다.

이 計劃이 施行되면 住居專用地域에는 순수한 住宅만 들어설 수 있고 다방, 식당, 여관, 목욕탕, 교회 등을 建築할 수 없게되어있다.

또 準住居地域에는 住居專用地區와 같은 엄격한 建築制限은 하지 않으나 住居環境에 害로운 극장, 업무상업용, 高層建物の 建築을 통제한다.

한편 市當局은 區·洞別로 住居專用地域과 準住居地域을 区分하는 作業을 2月부터 시작한다고한다.

建設部, 올해 住宅 18萬余戶 建設. 特定地區 民間 建築許可 大폭 簡素化

建設部는 올해 住宅建設事業으로 1千2百73億9千6百萬원을 들여 18萬一千戶의 住宅을 建設한다고 發表했다.

住宅建設 10年計劃인 2백50만戶 建設計劃의 一次年度事業으로 政府 및 公共機關의 投資가 2백48억4천만원으로 6만8천2백戶를, 그리고 民間投資가 9백25억5천6백만원으로 11萬2千8百戶를 建設한다고 한다.

한편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해 政府가 推定한 特定地區 住宅建設에는 諸稅를 免除해 주며, 民間이 担当하는 住宅建設에는 建築許可를 大폭 簡素化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 20坪以上 建坪에 水洗式변소 義務化

서울市는 앞으로 上下水 施設이 갖춰진 地域의 20坪以上 新築되는 建物에는 水洗式변소施設을 義務化할 方針이라고 한다.

이것은 市民의 保健衛生과 청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전속조례”를 제정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1962 1. 20일
법률 제984호)

개 정 1963. 6. 8 법1356호
1967. 3. 30 법1942호
1970. 1. 1 법2188호
1972. 12. 30 법2434호

제1 장 총 칙

제1 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탕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집표,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 내에 있는 운전안보시설·과선교·프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탕·급유 시설은 제외한다. (1970. 1. 1. 본호 개정)
3. 특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체육관·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 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 또는 오물 처리의 설비나 굴착·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우편물 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6. 거실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 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을 이루는 벽·기둥·바닥·틀보·지붕·주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 층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물탄바르기·외반축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963. 6. 8. 본호 개정)
11.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석면판·철강·안마늄·유리·불탄회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를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중 1층 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 이상의 수선을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14.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층 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 이상의 변경을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계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서울 특별·시장, 부산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 나. 건축허가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1967. 3. 30. 본호 개정)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천동기·증기기관·증기터빈·가스기관·석유기관·기타 내연기관과 수차를 말한다. (1967. 3. 30. 본호 신설)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 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신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또는 중요변경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측도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 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신설)
22.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 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잡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972. 12. 30. 본조 신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3 조 (직용에서의 제외)

- ① 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가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 ② 제3 장 내지 제5 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63. 6. 8. 본항 개정)

제4 조 (직권의 위임)

- ①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70. 1. 1. 본항 개정)
- ②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다. (1967. 3. 30. 본항 개정)

제5 조 (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1 호 내지 제3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할때에 그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 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 1.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1963. 6. 8. 본조 개정)
-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
- 4. 기타 도시계획구역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19

63. 6. 8 본조 개정)

제6 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 ① 건축사법 제4 조 및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는 건축사법 제4 조 및 제5 조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1970. 1. 1. 본조 신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 ④ 건축주는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 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 ⑥ 건축주는 건설법 제4 조 제2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7 조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 승인)

- ①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 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 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료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 ④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7 조의2 (중기검사)

제2 조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상장·진에 및 소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 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7 조의3 (건축물의 유지관리)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 ②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 층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8 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2 장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축설비

제9 조 (대지의 안전등)

①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관천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 조의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 건축주는 대지조성 기타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정리 상태가 불비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10 조 (구조 내력)

① 건축물은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토압·수압·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5 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제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967. 3. 30. 본항 개정)

제11 조 (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① 높이 13미터 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을 제외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높이 13미터 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바닥·지붕 및 계단은 제외한다)를 석조·연화조·콘크리트부목조·무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제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 조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 시장·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지정 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개정)

제13 조 식재 (1970. 1. 1)

제14 조 식재 (1970. 1. 1)

제15 조 (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목조건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로 하여야 한다.

제16 조 (방화벽)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되되 각 구획의 연면적은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 조 (목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단층인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목의 판막석이 있어서는 1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1972. 12. 30 본조 개정)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공동주택·기숙사·여관·호텔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1972. 12. 30 본조 개정)
3.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을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집회장·공동주택·기숙사·여관·호텔·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1972. 12. 30 본조 개정)
4.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을 전립회장·무도장·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1972. 12. 30 본조 개정)
5.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

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 이상인 것. (1963. 6. 8 본조 개정)

제18 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 거실에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에 대하여, 주택에 있어서는 7분의 1 이상 학교·병원·진료소·기숙사 또는 여관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비율이상, 기타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화관·극장이나 지하와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점포·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성된 2개의 거실은 전 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19 조 (주택의 거실설치의 금지)

주택의 거실을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 조 (변소)

①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1970. 1. 1. 본항 개정)

② 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전항의 하수도 이외의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물 정화조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21 조 (피뢰설비)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2 조 (승강기)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변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22 조의2 (주차장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일부의 개축을 제외한다)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기전향에 규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주차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개정)

제22조의3 (지하층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계획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신설)

제23조 (피난 시설 및 소화설비 등의 기준)

제7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의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배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23조의2 (특수 건축물등의 내장)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한다)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 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23조의3 (은들의 구조등)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은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시장 군수는 은들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와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24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기실의 개광면적·천정 및 바닥의 높이·바닥의 방습방법·계단 및 변소의 구조·방화벽·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개정)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주요 구조부·기타 안전상·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제·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26조 (재해 위험구역)

① 시장·군수는 해일·고조·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③ 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3장 도로 및 건축선

제27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완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도로내의 건축제한)

건축물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0. 1. 1 본조 개정)

제29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도로(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 3. 30 본조 개정)

제30조 (건축선의 지정)

① 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2미터 미만에 경사지·하천·선로부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물의 도로측의 경계에서 수평거리 4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시장·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963. 6. 8 본조 개정)

제31조의2 (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장과 벽면의 위치·구조·색채 및 지붕의 구조 색채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삭제 (1972. 12. 30)

③ 삭제 (1972. 12. 30)

제4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제32조 (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전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③ 공원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33조 (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33조의2 (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③ 시장·군수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33조의3 (절차등)

① 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 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면적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③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로

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부산시·경기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④ 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항의 재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 제24조 내지 제28조·제33조 내지 제53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34조 식재 (1972. 12. 30)

제35조 (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 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체로 된 것.
 3. 높이 2미터 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체로 된 것.
 4. 높이 2미터 미만의 문 또는 담
- ② 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광고탑·장식남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체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방화지구내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체로 하여야 한다.

②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방화지구 내외에 결철대의 조치)

1 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외의 구역에 공한 때에는 그 건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 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 외의 부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식재 (1972. 12. 30)

제5장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제39조 (건폐율)

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것은 10분의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매지 및 이에 준하는 매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8)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매지 및 이에 준하는 매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②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39조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건축물이 있는 매지는 제2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40조 (용적률)

①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②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고 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4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측의 경제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1972. 12. 30 단서 삭제)

② 삭제 (1967. 3. 30)

③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970. 12. 30 본항 개정)

④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 경제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⑤ 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1조의2 삭제 (1967. 3. 30)

제6 장 갑 득

제42조 (위반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경지하며 또는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건축물의 현거·개축·충족·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였을 때 (1967. 3. 30 본호 개정)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3. 기존 건축물로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의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967. 3. 30 본호신설)

②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파·전기·수도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 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⑤ 누구든지 전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2조의2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조치)

① 시장·군수는 전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공사관리자·공사 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신설)

② 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설계자·공사관리자·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3 (보고 및 검사등)

①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

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개정)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4 (감독)

①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구방·경제·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4의2 (건축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5조 승인 및 허가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1.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2.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 제26조 제3항·제31조의2· 제33조·제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7 장 잡칙

제46 조 (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시장·군수는 재해가 있는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이상 재해가 있는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 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는 도시 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계획부구 총행·진람회·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준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 일 전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8 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제49 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구조·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50 조 (묘지의 설치등)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963. 6. 8. 본조 개정)

제51 조 (공사 현장의 위해의 방지)

건축 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낙탄 또는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 조 (건축물의 대지가 구역·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결할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지역 또는 지구(방화 지구를 제외한다)의 내외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 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신장)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 면적 및 높이·건축물의 처마·천경 및 바다높이 이나 건축물의 층수의 신장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 2 (다른 법령의 배제)

①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67. 3. 30 본조 신설)

②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폐물 정화조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폐물 정화조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53조의 3 (동선)

제 5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 9 조의 2 또는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 53조의 4 식체(1972. 12. 30)

제 53조의 5 (공해방지)

시장·군수는 공장에 관한 건축 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53조의 6 (표준설계도의 활용)

① 건설부장관은 서민주택의 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 5 조 및 제 22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신설)

제53조의 7 (저층의 특례)

시장·군수는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22조의 3 제 30조, 제39조 또는 제

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8 장 별 칙

제54 조 (벌칙)

제 5 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 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 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55 조(동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9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제 10 조, 제 11 조, 제 15 조 내지 제 17 조,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제 19 조 내지 제 22 조 제 1 항, 제 25 조·제 27 조 제 1 항·제 28 조·제 31 조·제 33 조의 2 제 1 항·제 35 조·제 36 조 제 1 항·제 39 조 제 1 항·제 41 조 제 1 항 및 제 5 항 또는 제 53 조의 2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관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 시공자.
2. 제 9 조 제 4 항·제 12 조 제 2 항·제 22 조 제 2 항·제 23 조·제 23 조의 2·제 23 조의 3 제 1 항·제 24 조·제 26 조 제 3 항·제 27 조 제 2 항·제 31 조의 2·제 32 조의 제 1 항 및 제 3 항·제 33 조·제 36 조 제 2 항·제 39 조 제 2 항·제 39 조의 2 제 1 항·제 40 조 또는 제 41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관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 시공자.
3. 제 6 조 제 2 항 및 제 6 항·제 7 조 제 3 항·제 7 조의 2·제 9 조의 2 제 1 항 또

는 제39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4. 제32조 제 1 항 및 제 3 항·제33조 또는 제39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주.
5. 제 6 조 제 5 항·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공사 시공자 또는 제42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건축주 등
6.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 5 조·제 39조·제40조·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1972. 12. 30. 본조 개정)

제56조 (동전)

제 6 조 제 3 항 또는 제 7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제53조의 2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또는 제 7 조 제 4 항· 제 7 조의 3 제 1 항·제29조·제42조 제 5 항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72. 12. 30 본조개정)

제56조의 2 (동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 조 제 4 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자(1972. 12. 30 본조 개정)
2. 제 5 조 제 1 항단서· 제 7 조 제 1 항 또는 제4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972. 12. 30. 본조 개정)
3.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하지 않은자(1972. 12. 30. 본조 개정)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3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자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벌칙 규정의 위입)

제26조 제 2 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제에는 벌칙으로서 2 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9조 식제 (1967. 3. 30)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制令 第 18 號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동전) 이 법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동전) 이 법 시행 당시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63. 6. 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 칙 (1967. 3. 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12. 3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건축부문 정리에 관한 경과 조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도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내장재에 관한 경과 조처)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 용도에 대한 경과 조처)

이 법 시행 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는 그 용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 (기존마달 대지에 대한 경과 조처)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는 신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編輯後記

☆謹賀新年

癸丑年 한해에도 會員 諸位의 家庭과 業体에 豊성한 祝福이 있으시기 眞心으로 祈願하나이다.

☆ 73年 新年号부터 編纂委員會의 決議로서 「건축사」誌의 表紙가 달라졌습니다.

새 옷을 입은 듯, 산뜻하고, 경쾌한 氣分이라면...
어폐가 되겠조만 올해에도 變함없는 愛讀을 바라기 위해 더욱 勞力하겠습니다.

☆ 본 「建築士」誌는 一般商業誌와 달라 會員 全員の 參與로서 이루어 지는 協力的인 總算입니다.
通卷 51号의 誌令이 새삼 대견케 느껴집니다.

☆ 一部の 編輯担当者나 關係委員의 偏向的인 裁는 許用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建築士」誌의 權威와 會員諸位의 바라는 會誌가 될 것인지.....

全國 會員의 協力과 指導를 바랍니다.

☆ 釜山支部 李鍾壽 會員의 12月号 送年 앙케트에 대한 회답은 앞으로의 편집상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많은 지방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編輯者 一同〉

月刊 建築士 1月號

通卷 第51號 1973年 1月31日 發行

發行人兼 姜 大 雄
編輯人

登錄番號：第 라-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 23日

登錄變更：1972年 4月 12日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1街60-17
(太星빌딩 5층)

☎ 73 9491, 9492, 74 1045

印刷所：高星文化印刷株式會社
〈非賣品〉

建築(新刊)書籍 案内

建築工事標準示方書(上)(下) 46倍版 高級洋裝 各卷 1,200원	建築テキスト북 (增補版) 建築士・建設技術者 試験指針書 값 1,800원
現代建築事典 民音社 4.6倍版 아아트 값 7,000원	응용역학문제집 권농진, 백영식 공저 국판 340p 값 1,500원
토목구조물의 설계 구봉근 著 4.6倍版 492p 값 3,500원	건축구조도해(건축용어 구조마무리) 건설연구회 편 국판 344p 값 2,500원
建設大法典 건설매법전 편찬위원회 2,550p 값 4,800원	建設機械化施工 전인식 著 4.6倍版 408p 값 5,000원
建設大法典(Ⅱ) 건설매법전 편찬위원회 2,550p 값 2,500원	건설기술강좌 1~9 1권 800 2권 800원
건축적산학 장기인 著 4.6倍版 469p 값 3,000원	공사의 검사 전인식 著 국판 594p 값 2,800원
건설재료실험 장동인, 구봉근 共著 4.6倍版 값 1,800원	건축구조계산편람 건설연구회 편 국판 110p 값 800원
建築施工學 장기인 著 4.6版 492p 값 3,000원	건축구조설계법 金炫山 著 4.6版 407p 값 2,500원
建築構造學 장기인 著 4.6版 314p 값 2,400원	건축설비 김우석 著 4.6倍版 331p 값 2,000원
建築材料學 홍봉희 著 4.6倍版 263p 값 1,800원	건축계획원론 朴胤成 著 국판 333p 값 2,100원
建築法規 홍봉희 著 국판 238p 값 1,300원	건축, 토목 용어 사전 新 4.6版 299p 값 1,200원
配管工學 (부록기능검정예상문제 및 해답) 배관협회 發行 4.6倍版 662p 값 2,000원	아스팔트鋪裝道の設計 및 施工法 李은택 著 4.6倍版 225p 값 2,300원
材料力學 임상전 譯 4.6倍版 389p 값 3,300원	現代建築論 鄭寅國 著 高級洋裝 351p 값 1,600원
河川工學 원태상 著 4.6倍版 232p 값 2,000원	建築의 아무림(上下) 民音社 값 2,500원
都市計劃 윤정섭, 이용구 共著 4.6倍版 395p 값 2,800원	(新版) 新建築法規概說 李文輔 著 값 1,800원
土木施工法 권진동 著 국판 301p 索引6p 값 1,600원	建築用語辭典 金平卓 著 값 1,200원
건설재료학 구봉근 著 국판 284p 값 1,500원	韓國現代建築 1, 2 韓國建築家協會 刊 값 (各) 600
構造力學 (上下合) 구조역학교재편찬회 편 국판 683p 값 2,000원	韓國建築用語事典(1, 2, 3, 4) 韓國建築家協會 刊 값 (各) 250
道路工學 박상조 著 국판 195p 값 1,400원	

※ 저희 중문서점에서는 건축에 관한 서적 외에도 전기 및 기계, 자동차등 일체의 공학도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책을 주문하실 때는 소액환을 등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전화 62-5591으로) 10원 우표 동봉하시면 자세한 도서목록을 보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 **중문서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
 TEL. (62) 5591(영등포구청 앞)

便利하고 合理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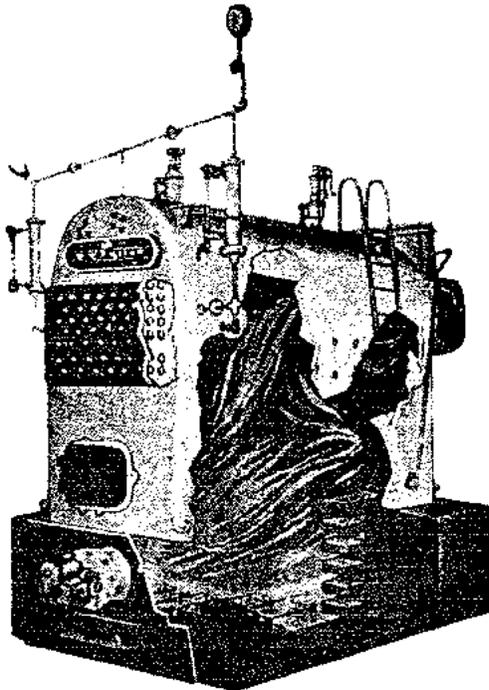
—實用新案 特許 第9497號—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低壓 暖房用으로는 더욱 效率이
좋고 燃料가 현저히 절약됨.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
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
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 國會議長의 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 大法院長의 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 및 科學技術賞 受賞
- 原動機 技術賞 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 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三岡産業 Co.	大韓染織 Co.	호수호텔	京畿農産 Co.
시온제과 Co.	仁川園藝組合	同和藥品 Co.	韓獨商社 Co.	廣日洋行
自由선 타	國防部建設本部	柳韓洋行 Co.	聖바오루病院	韓國國光호텔
産業銀行	春川聖心大學	韓國유리 Co.	大興성유 Co.	麗水觀光호텔
大田皮革 Co.	美八軍洗濯所	韓國나일론 Co.	聖心綜合病院	第一病院
서울여자學院	大韓體育會	大韓골크 Co.	大韓生命保險	自動車保險
韓一染色 Co.	大韓重石 Co.	清溪商街아파트	公務院訓練院	새한빌딩
世宗호텔	宇盛化學 Co.	大韓造船公社	林業試驗場	江原道庁
中央産業 Co.	東洋紡織 Co.	울림포스호텔	南大門警察署	韓國獨産業
釜山鐵道廳	首都醫附屬病院	웅당산호텔	大韓産業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4의 1

電話 ④ 1673 ④ 9775-6
(용산구청앞)

工場：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